

특혜관세제도 확대와 경제적 효과 연구

2005. 12

정 재 호
이 명 현

 한국조세연구원

서 언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 논의는 1960년대 초부터 여러 국제기구들에서 제기되었다. 특히, 1964년에 개최된 UNCTAD(UN 무역 개발회의) 총회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일반적이고 무차별적이며 또한 비상호주의적인 특혜관세제도(GSP;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절대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무관세로 시장 진입을 허용하자는 등의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은 현재 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DDA 협상에서도 큰 쟁점 중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기존에 WTO에서 사용하던 라운드(Round)라는 명칭 대신 도하개발아젠다 DDA(Doha Development Agenda)라고 명명한 것에도 잘 나타나고 있듯이, 개발도상국 특별우대조치(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가 여러 분야에 걸쳐 폭 넓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는 어떤 혜택을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개도국에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제적 영향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최빈개도국에 대해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특혜관세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교역상황을 고려해 볼 때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편, 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 확대는 시기적으로 DDA에 의한 관세율 인하와 함께 FTA가 확대된 이후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GSP 공여보다는 FTA를 통해 양국간 혜

택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정재호 박사와 인천대학교 이명현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다. 저자들은 본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본 보고서의 초안을 읽고 많은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문성 박사, 공주대학교 박순찬 교수, 그리고 익명의 두 심사논평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또한 원내 세미나에 참석해 많은 지적을 해주신 여러 참석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하며, 저자들의 자료수집과 분석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김용대 주임연구원과 자료 정리 및 원고정리에 많은 노고를 한 장정순 연구조원과 최미영 연구조원, 그리고 원고교정을 맡아준 출판담당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5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최 용 선

요약 및 정책시사점

본고는 특혜관세제도와 관련하여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확대문제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전면 실시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번 DDA 협상은 최빈개도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이 자신의 입장을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등 발언권을 강화하면서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이 협상의제 및 분야별 협상목표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크게 반영되고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은 OECD 회원국이면서 World Bank에 의해 고소득으로 분류된 국가들 중 인구규모가 크면서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GSP를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이다. 따라서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에 대해 특혜관세 확대를 논의할 경우 제일 먼저 거론될 위치에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사전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빈개도국은 UN이 제시한 선정기준에 의해 지정된다. 최빈개도국은 절대 빈곤상태에 있는 국가로 국민의 80% 이상이 하루 2달러 이하를 소비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기준으로 최빈개도국에 약 34억달러를 수출하였고 약 13억달러를 수입하여 약 21억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즉, 최빈개도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한 액수보다도 더 큰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무역수지 흑자는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국제적 흐름, 최빈개도국의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교역비중 및 무역수지 흑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에서 민감하게 여기는 일부 농산물 등을 제외하면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확대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현재 DDA 협상중에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지위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에 위치하여, 비농산물 협상에서는 선진국으로, 농산물 협상에서는 개도국으로 그 지위를 양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확대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특혜관세를 공여할 품목 선정방식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positive 방식을 선택하여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고 또한 품목별로 상이한 특혜관세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산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쟁력에 비추어 positive 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며 negative 방식을 활용하여 일부 품목에 대해 특혜범위와 특혜세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모형을 통한 경제적 분석에서도 농산물의 수입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쌀을 포함한 곡류는 특혜품목에서 제외하였지만, 특혜가 공여되는 비곡류 농산물의 수입이 전체적으로 2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수산물, 음식료품, 섬유제품 등의 수입이 증가하였는데, 그 증가율이 약 1% 수준으로 미미했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방식대로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해 적절하게 특혜관세를 적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농산물과 섬유제품은 최빈개도국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품목으로 이들을 제외할 경우 최빈개도국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다. 또한 모형을 통한 경제분석에서도 농산물을 완전히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의 후생증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최빈국의 입장에서도 후생증가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는 것도 한 번쯤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공여품목으로 석유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경제적 모형에서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석유는 교역규모가 크면서도 일부 산유국인 최빈개도국에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후순위에 놓아야 한다. 향후 원유에 대해 최빈개도국 특혜관세를 부여한다면 이는 원유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 후에 고려해야 하는 것이 순서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특혜관세를 공여하면 이를 다시 폐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당장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를 공여할 수 있다고 해도 우선 그 대상을 다소 보수적으로 설정한 이후 차차 그 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특혜관세(GSP)와 관련해서는 우선 실시시기는 이번 DDA 협상으로 우리나라 관세율이 낮아지고 이를 우리나라 경제에서 소화하는 한편 FTA 체결이 확대된 이후가 적절하다. 즉, DDA 협상에 의해 우리나라 관세율이 낮아진 이후 GSP제도를 실시할 경우 GSP 특혜관세율과 일반 실행세율의 차이가 줄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어느 정도 FTA 체결이 이루어진 후 GSP를 실시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적 지위도 증가시키면서 GSP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는 GSP를 이미 도입한 국가들의 경험을 보아도 알 수 있었으며, 경제적 효과분석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GSP를 실시할 경우 수혜 대상국과 수혜 품목 등은 어느 정도 자율권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예상대로 대상국의 대한국 수출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무역전환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수혜 품목별로는 현재 관세율이 높은 비곡류 농산물, 섬유제품 등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비곡류 농산물의 경우는 인도와 브라질을 특혜대상국에 포함시키는가의 여부, 섬유류의 경우는 중국을 특혜대상국에 포함시키는가 여부에 따라 수

입증가율이 크게 달라졌다. 특히, 섬유류에 대해 전면 특혜를 부여할 경우 중국의 포함여부에 따라 수입증가율의 차이가 거의 4배에 가까웠다. 비곡류 농산물에서도 인도와 브라질의 포함여부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중국의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빈개도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도 인도, 브라질 및 중국에 특혜관세를 시행하느냐 여부에 큰 영향을 받았다. 예컨대 최빈개도국의 섬유류 수출의 경우 중국에 특혜관세를 제공하지 않을 때에는 20~30% 증가하지만, 중국에도 특혜관세를 제공할 때에는 4~12%의 증가에 그쳤다. 한편,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이 포함된 상황에서 추가로 더 많은 개도국에 GSP를 제공할 경우에도 우리나라 수입총량은 약간 증가할 뿐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이런 분석 결과에 따라 중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FTA를 추진하거나 혹은 현재 중국과 이루어지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무역 협정(방콕협정)을 통해 상호간 관세인하 폭을 넓히면서 양국간 경제적 혜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GSP의 전면도입도 이런 경로를 보면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 한·중 FTA 체결을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일방적인 GSP 제공과 달리 FTA로 중국도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 때문에 수송장비, 전기 및 기계 등을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이로 인한 우리나라의 민간 후생증가도 일방적인 GSP 공여때에 비해 훨씬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GSP를 도입할 경우 비곡류 농산물, 음식료품, 섬유류 등에서의 수입총량 증가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이들 농산물 분야와 섬유류를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에 주는 후생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과 섬유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관세를 인하해 줌으로써 이왕 GSP를 공여한다면 우리나라의 후생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

나 이런 효용증가를 위해 우리나라의 일방적인 GSP 제공보다는 상호간의 교역장벽을 낮추는 FTA 체결이 경제적으로 더 효과가 클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GSP 제공에 앞서 이들 국가와의 FTA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빈개도국을 비롯해 개도국에 대해 특혜관세를 확대하는 것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이번 DDA 협상에서 분야별로 분리되어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다고 해서 다른 분야의 협상력이 커지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농산물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얻으려는 우리나라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특혜관세를 확대할 경우 보다 많은 특혜를 요구할 수 있어 작은 것들이 모여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개방보다는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교육 훈련 강화, 기술지도 등을 통해 해당 개도국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미지 개선뿐만 아니라 개도국에도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특혜관세 제공과 직접적인 원조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현재의 국제적 흐름으로는 이 둘을 모두 소홀하게 다룰 수 없음은 분명한 것 같다.

목 차

I. 서 론	19
II.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제도	25
1. 최빈개도국 현황	25
2. 국제적인 논의 배경 및 동향	34
3. 주요국의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제도 특징	38
가. EU	38
나. 일본	39
다. 미국	41
라. 캐나다	42
마. 그 밖의 국가들	43
4. 우리나라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제도	45
가. 운영 현황	45
나. 전반적인 교역현황	46
다. 주요국과 교역비중 비교	51
라. 산업별 최빈개도국 수입	53
마. 원유 및 석유제품	59
5. 정책적 시사점	67
가.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확대의 필요성	67
나.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확대방안	69
다. 석유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여부	75
라. 특혜관세 확대에 따른 피해 예방대책	76

III. 일반특혜관세제도(GSP)	78
1. 일반특혜관세제도 개요	78
가. GSP 실행 국가들	80
나. GSP 수혜국과 졸업규정	81
다. 특혜대상 품목 및 특혜세율	83
라. 원산지규정	85
2. 국제적 논의동향	88
가. 국제적인 논의 배경	88
나. 개발도상국 관련 주요 쟁점	92
다. GSP 관련 논의사항	94
3. 주요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 특징	95
가. 일본	95
나. EU	97
다. 미국	99
라. 캐나다	100
마. 헝가리	101
4. 정책적 시사점	102
가. GSP 실시 검토	102
나. GSP 실시방안	107
다.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112
IV. 경제적 효과분석	115
1. 모형구성	116
가. 모형과 자료	116
나. 원산지별 관세율 및 탄력성	122
2. 정책 시나리오별 분석	126
가. 시나리오	126
나.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제도 확대	128

다. GSP 실시	138
3. 소결	146
 V. 결 론	151
1.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확대 검토	151
2. GSP 실시 검토	154
 참고문헌	158
 부 록	163

표목차

<표 II- 1> 최빈개도국 졸업기준	2
<표 II- 2> 최빈개도국의 지역별 분포	8
<표 II- 3> 최빈개도국에서의 빈곤의 정도: 1995~1999년	9
<표 II- 4> 최빈개도국에서의 빈곤의 추세	9
<표 II- 5> 최빈개도국의 인구와 1인당 GDP: 1999년	31
<표 II- 6> 최빈개도국의 1인당 GDP 추이	32
<표 II- 7> 최빈개도국의 수출입 규모	33
<표 II- 8> 최빈개도국의 WTO 참여 현황	33
<표 II- 9> 일본의 GSP와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40
<표 II-10> 주요국의 최빈개도국 우대조치 현황	44
<표 II-11> 29개 특혜관세 공여 제외품목	44
<표 II-12> 최빈개도국과 수입실적이 있는 품목수	44
<표 II-13> 최빈개도국에 대한 수출	44
<표 II-14>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	60
<표 II-15>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비중	55
<표 II-16> 주요국의 최빈개도국 수입비중	58
<표 II-17>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비중	63
<표 II-18>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석유제품 수입비중	63
<표 II-19> 국가별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비중	66
<표 II-20> 특혜관세 공여 제외품목 중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 농산물	72
<표 II-21> 특혜관세 공여 제외품목 중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 수산물	73

<표 II-22> 특혜관세 공여 제외품목 중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 공산품	74
<표 III- 1> GSP 실행 국가들	8
<표 III- 2> EU의 GSP 대상 품목 및 세율구조	8
<표 III- 3> 주요국의 GSP 도입당시의 경제수준	10
<표 III- 4> 주요국의 GSP 수입비중	15
<표 III- 5> 우리나라의 ODA 지원실적	14
<표 IV- 1> 사회계정행렬	10
<표 IV- 2> 모형에 이용된 지역분류	11
<표 IV- 3> 모형에 이용된 산업분류	12
<표 IV- 4> 원산지별 관세율	14
<표 IV- 5> 탄력성 모수	15
<표 IV- 6> 국가 및 상품범위 시나리오	17
<표 IV- 7> 국가별 후생 및 물가수준 변동	18
<표 IV- 8> 국별, 품목별 대(對)한국 수출의 변화율	132
<표 IV- 9> 시나리오별 후생변화	14
<표 IV-10> 시나리오별 물가변화	15
<표 IV-11> 아시아 최빈국의 대한국 수출 변화	16
<표 IV-12> 아프리카 최빈국의 대한국 수출 변화	17
<표 IV-13> 우리나라의 수입총량 변화	18
<표 IV-14> 국가 시나리오별 후생의 증가	10
<표 IV-15> 물가의 변화	11
<표 IV-16> 우리나라의 수입총량 변화	13
<표 IV-17> 시나리오별 우리나라의 후생변화율	14
<표 IV-18> 시나리오별 우리나라의 물가변화율	15
<표 IV-19> 시나리오별 우리나라의 비곡물 농산물 수입증가율 ...	16

<표 IV-20> 시나리오별 우리나라의 석유 수입증가율	16
--------------------------------------	----

<부표 1> 최빈개도국 판정에 필요한 각종 지수들	13
<부표 2> 최빈개도국의 1인당 GDP 추이	15
<부표 3> OECD 회원국 등의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액 비교	17
<부표 4> 산업별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액	18
<부표 5> 산업별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세번수	19
<부표 6> 산업별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실행세율과 실적세율 ...	19
<부표 7> 우리나라 석유 수입비중	11
<부표 8> 우리나라의 주요 석유 수입국	12
<부표 9> GSTP 회원국 명단	14
<부표 10> 시나리오 A-5하에서의 각국의 대한국 수출증가율	15
<부표 11> 시나리오 B-5하에서의 각국의 대한국 수출증가율	16
<부표 12> 시나리오 C-5하에서의 각국의 대한국 수출증가율	17
<부표 13> 시나리오 D-5하에서의 각국의 대한국 수출증가율	18
<부표 14> 시나리오 E-5하에서의 각국의 대한국 수출증가율	19

그림목차

[그림 II-1] 최빈개도국과의 교역규모	48
[그림 II-2] OECD 회원국 등의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 비교	53
[그림 II-3] 산업별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2004년)	54
[그림 II-4] 산업별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2002년)	56
[그림 II-5] 산업별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2003년)	56
[그림 II-6] 우리나라의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원유수입액 비중	59
[그림 II-7] 국가별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원유수입액 비율	60
[그림 II-8] 국가별 원유 및 석유제품 평균 수입비중	66

I. 서 론

특혜관세제도는 개념적으로 한 국가가 상대국가에 일방적으로 관세장벽을 낮추어 줌으로써 관세상 혜택을 주는 제도를 지칭한다. 즉, 상대국가가 관세장벽을 낮추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관세인하라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같이 양자간에 이루어지는 지역무역협정이라든지 혹은 다자간에 이루어지는 WTO 다자간 관세인하협상과는 구별되는 제도이다. 그 이유는 양자 혹은 다자간 무역협정은 참여 국가들이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상호 관세를 인하하는 것을 원칙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 같이 양자간 혹은 다자간 상호주의에 입각한 협정이 아닌, 대가 없이 일방적(비상호주의적)으로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이유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후진국의 산업화 및 수출확대를 통한 후진국의 경제성장을 도와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특혜관세제도에 대한 논의는 여러 국제기구 등을 통해 시작되었다. 1963년 GATT 각료회의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 등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우대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를 최초로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64년 UNCTAD (UN 무역개발회의) 총회에서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장려하고 산업을 육성하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무차별적이며, 또한 비상호주의적인 특혜관세제도(GSP;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를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

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는 좁게는 최빈개도국 혹은 일부 특정 국가에 대해 적용하는 특정특혜관세제도가 있으며, 넓게는 대부분의

개도국에 대해 일반관세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들 수 있다.

국제적으로 최빈개도국과 관련된 문제는 UN과 WTO를 비롯해 여러 국제기구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절대 빈곤국가인 최빈개도국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있다. 이런 추세 속에 1990년대 중반 이후 최빈개도국의 절대적인 빈곤을 줄여야 한다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WTO에서는 최빈개도국의 모든 수출품에 대해 수량제한 없이 무관세로 시장접근을 허용하기로 약속하고 있다¹⁾.

개도국에 대한 지원은 현재 WTO에서 진행중인 DDA 협상에서 큰 쟁점 중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WTO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라운드(Round)라는 명칭 대신 도하개발아젠다 DDA(Doha Development Agenda)라고 명명한 것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 특별우대조치(SDT;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가 논의되고 있으며, 개별 협상 분야별로 개도국에 대해 선진국보다 관세인하폭과 관세인하기 간 등에서 차별적인 우대를 제공하는 것 등이 협상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이제 국제적 흐름상 선진국은 최빈개도국에서의 절대적인 빈곤을 없애려는 좋은 의도에서든 아니면 국제적인 압력에 의해서든 최빈개도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무관세로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더 나아가 이번 DDA 협상에서는 최빈개도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현재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입장차이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지만, 이런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협상의제 및 분야별 협상목표에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을 과거 어느 때

1) 2005년 12월에 개최된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 선진국과 이에 동참하고자 하는 개도국은 2008년까지, 그리고 당장 이행하기 어려운 선진국의 경우 2008년까지 최빈개도국 수출품의 97%까지 시장접근을 허용하는 데 합의하였다.

보다도 크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등 발언권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에 맞는 개도국 우대를 준비해야 한다. 설령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게 개도국에 대한 혜택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협상 마지막에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떤 혜택을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개도국에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제적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성이 높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우선 World Bank의 기준에 의해 고소득 국가²⁾로 분류된 55개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은 국가 중에서 GSP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는 없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World Bank에 의해 고소득으로 분류되면서 인구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국가들 중 GSP를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로 나타났다³⁾. 또한 WTO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걸쳐 있는 상황이다. 비농산물 분야에서는 선진국 위치에 놓여 있지만 농산물 분야에서는 개도국 위치를 주장하고 있어 아직 모호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볼 때, 우리의 사정은 그리 여유롭지는 않으며 향후 최빈개도국은 물론 개도국에 대한 시장개방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여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장 높다고 여겨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부 품목에 대해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제

2) World Bank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per capita)을 기준으로 모든 국가 또는 경제권을 고소득 국가(2004년의 경우 1인당 GNI가 1만 65달러 이상인 국가), 중상위 소득 국가(3,256달러 이상이고 1만 65달러 이하인 국가), 중하위 소득 국가(826달러 이상이고 3,255달러 이하인 국가), 저소득 국가(825달러 이하인 국가)로 나누고 있다.

3) World Bank의 기준에 의해 고소득 경제권 혹은 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는 총 55개 국가로 OECD 30개 회원국 중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멕시코, 터키 등 6개국을 제외한 24개 국가가 여기에 속해 있다. 이 중 우리나라와 인구가 30만 명이 채 안 되는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22개 국가가 GSP를 시행하고 있다. 참고로 이 중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도 GSP를 공여하고 있다.

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특혜관세제도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최빈 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도 현재 49개의 최빈국⁴⁾에 한해 80개 품목에 대해서만 무관세 혜택을 주고 있어, WTO에서 권고하는 품목 116개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는 국민총소득(GNI)대비 0.06%에 불과하여⁵⁾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 0.25%의 1/4에 불과하고, 국민 1인당 원조규모는 8.8달러로 OECD 회원국의 1/10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최빈개도국 혹은 개도국에 대해 특혜관세를 확대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이에 대한 대비책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한 자료는 거의 없다. 이러한 선행연구 및 기초자료 부족은 특혜관세 관련 정책입안에 큰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또한 막연한 두려움 속에 혹은 지나친 낙관론 속에 정책이 진행되어 우리 경제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특혜관세제도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대부분 다른 국가들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소개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본고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경제적 효과분석 등은 전무한 상태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일반특혜관세제도 혜택을 받은 것이 2002년 초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반특혜관세제도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 주요 연구 중 우리나라의 일반특혜관세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로는 김남두(1996), 김중근(2000)이 있다. 그러나 두 논문 모두 제도 소개에 치중하고 있으며, 본고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경제적 분석은 없

4) 2003년 12월 4일자로 동티모르(Timor-Leste)가 최빈개도국에 포함되어 최빈개도국은 총 50개국이나 현재 우리나라 시행령에는 동티모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5) 내부거래로 공적개발원조(ODA)에 포함되지 않는 대북지원실적을 포함할 경우 국민총소득(GNI) 대비 0.11%가 된다.

다. 김남두(1996)의 연구는 일반특혜관세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와 함께 다른 국가들의 제도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연구도 상당 기간 이전에 실시된 것으로 현재 경제상황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최근에 연구된 김중근(2000)의 연구도 제도 소개를 중심으로 일반특혜관세제도의 도입배경과 주요 내용, 주요국의 최빈개도국 수혜조건(원산지판정기준) 및 특별규정과 문제점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한편, 유관영·김학기(1999)는 우리나라의 일본 GSP제도 활용실태 및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GSP제도를 중지할 경우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일본과의 GSP협상에 활용할 자료를 목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반대 경우인 우리나라가 특혜관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대한 효과분석은 연구하지 않았다.

외국문헌에서 우리나라 문제를 분석한 경우는 없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CGE와 GTAP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한 연구는 무수히 많지만, GSP 등 일방적인 특혜관세를 도입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이는 아마도 미국, 일본, 유럽(EU) 등은 1970년대에 이미 GSP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특혜관세제도에 대한 외국문헌은 UNCTAD를 중심으로 GSP제도가 개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거나, 또는 반대로 개도국들이 얼마만큼의 혜택을 보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UNCTAD에서는 최근에도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 GSP제도를 확대할 경우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UNCTAD 2003).

이 밖에 Murray(1973)는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GSP제도로 인해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언급하였고, Baldwin and Murray(1977)에서는 GSP보다는 GATT 차원에서의 관세인하가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하였다. Özden and Reinhardt(2005)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GSP보다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국제무역 상황이 개도국들에 더 좋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Lederman and Özden(2004)에서는 미국으로부터 특혜관세를 받는

국가들 중 GSP보다는 FTA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새롭게 GSP를 도입할 경우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현재 진행중인 DDA 협상,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및 흐름을 고려할 때 향후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 확대 및 더 나아가 일반 특혜관세제도 실시 등 특혜관세제도 확대에 대한 사전적 검토 및 경제적 효과분석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연구분야이다.

본 보고서는 특혜관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특혜관세제도에 관련된 국제적 논의동향 및 주요국의 특혜관세제도 분석, 그리고 우리나라가 특혜관세제도를 확대 시행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DDA 협상에서 활용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전체적인 특혜관세제도의 확대와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을 사전적으로 검토하여 전반적인 특혜관세제도 운영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Ⅱ장에서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를 분석한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국제적인 개념 및 실상, 최근 WTO, UNCTAD 등에서 논의되는 최빈개도국 관련 주요 쟁점, 그리고 최빈개도국에 대해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하는 주요국의 특징을 살펴본다. 한편, 우리나라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 및 교역 규모 등도 분석한다. 제Ⅲ장에서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대해 분석한다. 우선 일반특혜관세제도의 개념과 제도 종류, 세부 특징 등을 살펴본다. 일반특혜관세제도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동향 및 이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의 제도적인 특징도 분석한다.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가 특혜관세제도를 확대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확대, GSP 도입 등을 포함하여 여러 시나리오별로 그 효과를 분석한다. 제Ⅴ장은 주요 분석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II.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제도

1. 최빈개도국 현황

1971년 UN에서 처음으로 24개의 최빈개도국을 지정하였다. 최빈개도국 지위는 매 3년마다 갱신되며, 1971년 이후 최빈개도국 선정기준이 완화되면서 2003년부터 50개 국가가 지정되어 있다.

최빈개도국 선정기준은 UN 경제사회이사회(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산하의 개발정책위원회(the Committee of Development Policy)에서 결정한다. UN 개발정책위원회는 최빈개도국 가입 혹은 졸업을 위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를 추천하면, 해당 국가와의 협상을 거쳐 유엔총회(UN General Assembly)에서 최빈개도국에의 가입 혹은 졸업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UN 개발정책위원회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최빈개도국 선정기준은 크게 1인당 GNI, 인적자산지수(the Human Assets Index), 경제적 민감성지수(Economic Vulnerability Index) 등 세 가지이다.

첫째, 1인당 GNI는 이전 3개 연도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2003년 기준으로 1인당 GNI가 750달러 미만인 경우 최빈개도국에 포함되며, 900달러 이상인 국가는 최빈개도국에서 제외(졸업)된다⁶⁾.

둘째, 인적자산지수(HAI)는 5세 미만 어린이 사망률, 하루 필요량의 비율로 나타낸 1인당 열량섭취량, 1차 및 2차 교육기관(primary

6) 2002년 이전에는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2000년도의 경우 최빈개도국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인당 GDP가 900달러(1994년도에는 700달러, 1997년도에는 800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최빈개도국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1인당 GDP가 1,035달러(1994년도에는 800달러, 1997년도에는 900달러)를 초과해야 한다.

and secondary school) 등록률, 성인 문맹률 등을 반영하여 계산된다. 인적자산지수(HAI)가 55 미만인 경우 최빈개도국에 가입되고, 지수가 61을 초과하면 최빈개도국 지위에서 졸업하게 된다.

셋째, 경제적 민감성지수(EVI)는 GDP 대비 제조업 및 현대서비스의 비중, UNCTAD의 수출상품집중도(merchandise export concentration index), 농업생산의 불안정성,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의 불안정도, 로그를 취한 인구 등을 반영하여 계산된다. 앞의 다른 지수와는 달리 수치가 작을수록 바람직한데, 37이 초과되면 최빈개도국으로 지정되고 33 미만이면 졸업하게 된다⁷⁾.

이 세 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될 경우 최빈개도국 지위를 얻을 수 있으며, 세 가지 지수 중 어느 하나라도 최빈개도국을 졸업하기 위한 기준에 가까우면 해당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신축적으로 졸업 여부를 정하고 있다.

7) 개별국가별 최빈개도국 판정 지수는 부표 참고.

<표 II-1> 최빈개도국 졸업 기준

1990년대	2000년	2002년
1. 1인당 GDP: 3년 평균, 각 연도의 공식환율로 환산 - 최빈개도국 졸업 기준: 700달러 초과(1991), 800달러 초과(1994), 900달러 초과(1997)	1. 1인당 GDP: 3년 평균, 각 연도의 공식환율로 환산 - 최빈개도국 졸업 기준: 1,035달러 초과	1. 1인당 GNI: 3년 평균, 각 연도의 공식환율로 환산 - 최빈개도국 졸업 기준: 900달러 초과
2. 물리적 생활지수 (Augmented Physical Quality of Life Index) - 다음 4가지 요소의 평균 a. 보건: 출생시 기대수명 b. 영양: 하루 필요량의 비율로 나타낸 1인당 열량섭취량 c. 교육: 1차 및 2차 교육기관(primary and secondary school) 등록률 d. 교육: 성인 문맹률 - 최빈개도국 졸업기준: 52 초과	2. 물리적 생활지수 (Augmented Physical Quality of Life Index) - 다음 4가지 요소의 평균 a. 보건: 5세 미만 어린이 사망률 b. 영양: 하루 필요량의 비율로 나타낸 1인당 열량섭취량 c. 교육: 1차 및 2차 교육기관(primary and secondary school) 등록률 d. 교육: 성인 문맹률 - 최빈개도국 졸업기준: 68 초과	2. 인적자산지수 (the Human Assets Index) - 다음 4가지 요소의 평균 a. 보건: 5세 미만 어린이 사망률 b. 영양: 하루 필요량의 비율로 나타낸 1인당 열량섭취량 c. 교육: 1차 및 2차 교육기관(primary and secondary school) 등록률 d. 교육: 성인 문맹률 - 최빈개도국 졸업기준: 61 초과
3. 경제적 다양성지수 (Economic Diversification Index) - 다음 4가지 요소의 평균 a. GDP에서 제조업부분의 비중 b. 노동력 가운데 공업(industry)의 비중 c. 연간 1인당 상업적 에너지 소비량 d. UNCTAD의 수출상품의 집중도 지수(merchandise export concentration index) - 최빈개도국 졸업 기준: 25 초과(1991년), 29 초과(1994, 1997년)	3. 경제적 민감성지수 (Economic Vulnerability Index: EVI) - 다음 5가지 요소의 평균 a. GDP에서 제조업 및 비정부서비스의 비중 b. UNCTAD의 수출상품의 집중도 지수(merchandise export concentration index) c. 농업생산 불안정도 지수 d.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의 불안정도 지수 e. 인구(로그) - 최빈개도국 졸업기준: 31 미만	3. 경제적 민감성지수 (Economic Vulnerability Index: EVI) - 다음 5가지 요소의 평균 a. GDP에서 제조업 및 현대적 서비스업의 비중 b. UNCTAD의 수출상품의 집중도 지수(merchandise export concentration index) c. 농업생산의 불안정성 d.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의 불안정성 e. 인구(로그) - 최빈개도국 졸업기준: 33 미만
	4. 보조적(질적) 고려 - 위의 3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졸업기준에 가까우면 UN 개발정책위원회의 위원들이 졸업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음	4. 3년간 적어도 2번 연속해서 위의 3개 부문 중 적어도 2개 부문 중 이상 졸업기준에 부합하면 최빈국으로부터 벗어남

자료: U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Report 2002*.

U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Report 2004*.

현재 인구가 7,500만명 이하이면서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국가는 모두 50여 개 국가가 있다. 콩고와 가나 등은 UN 개발정책위원회에서 최빈개도국으로 제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이 최빈개도국으로 지정되는 것에 반대하여 제외되었다. 따라서 현재 최빈개도국은 50개 국가이다.

50개 최빈개도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오대양주 포함)이 14개국, 아프리카 지역이 34개국, 중동 1개국, 그리고 중남미 1개국이다.

<표 II-2> 최빈개도국의 지역별 분포

지 역	국 가
아시아 (14)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라오스, 몰디브, 바누아투, 부탄, 사모아, 키리바시, 투발루, 솔로몬군도, 동티모르
아프리카 (34)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니제르, 레소토, 르완다,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토메프린시페,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리트리아, 이디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차드, 카보베르데, 코모로, 탄자니아, 토고, 콩고민주공화국(자이레)
아메리카 (1)	아이티
중동 (1)	예멘

주 : 2003년 12월 4일자로 동티모르(Timor-Leste)가 최빈개도국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시행령에는 동티모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료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 대통령령 제17469호, 2001년 12월 31일.

U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Report 2004*.

UN의 조사에 따르면 1995년부터 1999년 사이에 전체 최빈개도국에 사는 국민의 절반 이상은 하루에 1달러 이하를 소비하고 있으며, 80% 이상의 국민은 하루에 2달러 이하를 소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최빈개도국에서의 절대적 빈곤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또한 하루에 1달러(2달러) 이하를 소비하는 인구의 비율도 아시아 지역의 최빈개도국에서는 1985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지역의 최빈개도국에서는 1975년부터 1980년 사이에는 56%(84%), 1985년부터 1990년 사이에는 62%(87%),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65%(8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3> 최빈개도국에서의 빈곤의 정도: 1995~1999년

(단위: %, 백만명, 1985년도 달러)

지역	하루 소비가 1달러 이하인 경우			하루 소비가 2달러 이하인 경우		
	비율	인구수	평균 소비액	비율	인구수	평균 소비액
아시아 ¹⁾ (5)	23.0	44.8	0.90	68.2	133.3	1.42
아프리카 ²⁾ (30)	64.9	233.5	0.59	87.5	315.0	0.86
기타 ³⁾ (4)	31.3	0.5	0.66	59.5	0.8	1.18
합계 (39)	50.1	278.8	0.64	80.7	449.3	1.03

주 : 1) 아시아 지역은 네팔,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부탄의 5개국으로 구성된다.

2) <표 II-2>와 비교하여 아프리카 지역에는 중남미 국가인 아이티가 포함되며, 상토메프린시페, 에리트리아, 적도기니, 카보베르데, 코모로가 제외된다.

3) 기타는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카보베르데, 코모로의 4개국으로 구성된다.

자료: U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Report 2002*.

<표 II-4> 최빈개도국에서의 빈곤의 추세

(단위: 1985년도 달러, %)

지역	하루에 1달러 이하를 소비하는 인구의 비율				하루에 2달러 이하를 소비하는 인구의 비율			
	1965~69	1975~79	1985~89	1995~99	1965~69	1975~79	1985~89	1995~99
아시아	35.5	35.9	27.6	23.0	78.8	79.6	73.4	68.2
아프리카	55.8	56.4	61.9	64.9	82.0	83.7	87.0	87.5
합계 (39)	48.0	48.5	49.0	50.1	80.8	82.1	81.9	80.7

주: 각 지역에 포함된 국가들은 <표 II-3>과 동일하다.

자료: U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Report 2002*.

1999년 현재 최빈개도국의 총인구수는 약 5억 5,800만명이며, 데이터가 이용가능한 45개 최빈개도국⁸⁾의 평균 1인당 GDP는 288달러이다. 또한 나머지 5개 최빈개도국의 경우에도 1인당 GDP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빈개도국 중 비교적 GDP가 높은 국가는 아시아와 기타지역에 분포하고 아프리카는 아시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8) 49개 최빈개도국 중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투발루, 소말리아 등이 제외되었다.

<표 II-5> 최빈개도국의 인구와 1인당 GDP: 1999년

(단위: 백만명, 달러)

지역	인구	1인당 GDP
아시아 (11) ¹⁾	168.3	338.5
아프리카 (31) ²⁾	364.3	246.2
기타 (2)	25.6	418.0
합계(44)	558.2	288.0

주: 1) <표 II-2>와 비교하여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가 제외된다.

2) <표 II-2>와 비교하여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지부티, 라이베리아, 소말리아가 제외된다.

자료: U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Report 2002*.

2002년 기준으로는 총인구수가 6억 9,900만명이며, 평균 1인당 GDP는 281달러로 거의 변동이 없음을 보여준다. 개도국 전체의 1인당 GDP가 1,195달러로 최빈개도국은 이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선진시장경제 국가들의 1인당 GDP 2만 8,388달러에 비하면 1/100 수준으로 매우 가난한 수준이다.

개별국가별로 살펴보면 최빈개도국 중 가장 높은 1인당 GDP를 나타내는 국가는 2002년 기준으로 적도기니(4,517달러)이며, 그 다음으로는 몰디브(2천달러), 사모아(1,482달러) 순이고, 가장 낮은 1인당 GDP를 보이는 국가는 이디오피아(87달러), 부룬디(109달러), 콩고민주공화국(111달러), 에리트리아(146달러) 순이다. 즉, 최빈개도국 내에서도 1인당 GDP 차이가 약 50배 정도이다.

<표 II-6> 최빈개도국의 1인당 GDP 추이

(단위 : 달러)

국가	1980	1990	2002
최빈 개도국 전체	-	253	281
개도국 전체	761	901	1,195
선진시장경제	18,813	23,832	28,388
동유럽국가	-	3,160	2,781

자료: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03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nline data.

자료의 이용이 가능한 45개 최빈개도국(부탄, 에리트리아, 레소토, 투발루, 동티모르를 제외한 최빈개도국들)의 2004년도 수출액의 합계는 540억달러였다. 이는 전 세계 총 수출액의 약 0.7%를 차지하는 액수이다. 이들 국가의 수입액은 765억달러로서 전 세계 총수입액의 약 1.0%를 차지한다. 지난 5년간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가 확대되는 등의 이유로 해서 이들 국가의 수출이 약 1.5배 증가하였으나, 이들 국가의 인구가 전 세계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상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그 비율이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45개 최빈개도국은 2004년도에 224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50억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무역적자의 폭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표 II-7> 최빈개도국의 수출입 규모

(단위: 백만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적자)
	수출액	비율	수입액	비율	
1998	23,129	0.44	44,016	0.81	20,887
1999	25,887	0.47	45,785	0.80	19,898
2000	34,481	0.55	50,815	0.79	16,334
2001	34,743	0.58	49,614	0.79	14,871
2002	36,311	0.59	52,889	0.81	16,578
2003	42,857	0.67	65,561	0.99	22,704
2004	54,080	0.72	76,515	0.98	22,435

주: 1. 비율은 전 세계 수출액 또는 수입액의 합계에서 최빈개도국의 수출액 또는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2. 부탄, 에리트리아, 레소토, 투발루를 제외한 45개 최빈개도국의 경우임.
 3. 2003, 2004년의 경우는 부탄, 에리트리아, 레소토, 투발루, 동티모르 제외.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합무역정보』, www.kita.net.

마지막으로, 최빈개도국의 WTO 참여상황을 살펴보면, 30개국이 WTO 회원국이고, 12개국이 WTO 옵저버 국가이다. 옵저버 국가들 중 상토메프린시페와 적도기니를 제외한 나머지 10개국은 WTO의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표 II-8> 최빈개도국의 WTO 참여 현황

WTO 참여 수준	국가명
WTO 회원국 (32)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니제르, 레소토, 르완다, 네팔, 캄보디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솔로몬제도, 시에라리온, 아이티,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WTO observer 국가(10)	라오스, 비누아투, 부탄, 사모아, 수단, 상토메프린시페, 이디오피아, 예멘, 적도기니, 카보베르데
WTO 비가입 국가(8)	아프가니스탄, 코모로, 에리트리아, 키리바시, 라이베리아, 소말리아, 투발루, 동티모르

주: WTO 옵저버 국가들 중 상토메프린시페와 적도기니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WTO의 회원국이 되기 위한 가입 절차를 밟고 있다.

자료: WTO, www.wto.org.

2. 국제적인 논의 배경 및 동향

WTO는 무역이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 아래 최빈개도국을 다자간 무역체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여 왔다. 1996년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한 이행계획’⁹⁾을 채

9) We remain concerned by the problems of the least-developed countries and have agreed to:

- Plan of Action, including provision for taking positive measures, for example duty-free access, on an autonomous basis, aimed at improving their overall capacity to respond to the opportunities offered by the trading system;
- seek to give operational content to the Plan of Action, for example, by enhancing conditions for investment and providing predictable and favourable market access conditions for LLDCs' products, to foster the expansion and diversification of their exports to the

택하여 최빈개도국의 수출품에 대하여 특혜관세 혹은 무관세 적용을 추진하였다. WTO에서는 무역과 개발(trade and development)위원회 아래에 LDC의 하위 위원회(sub-committee)를 두어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LDC)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논의를 해오고 있다.

이러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심은 WTO뿐만 아니라 UN,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도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최빈개도국의 개발관련 기술지원을 위한 통합체제(IF: Integrated Framework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가 6개의 국제기구(IMF, ITC, UNCTAD, UNDP, World Bank and the WTO)에 의해 시작되었다. IF는 최빈개도국이 무역능력제고(trade capacity building)와 국가개발전략에서 무역관련 이슈의 통합을 지원하는 프로세스이며, 1997년 10월 ‘최빈개도국을 위한 고위급회의’에서 시작되었다.

개발도상국 지원문제가 국제협력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계기는 1996년 OECD에서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개발전략(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는 2015년까지 절대 빈곤층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개발도상국에서의 빈곤을 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UN도 2000년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2015년까지 절대 빈곤층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세계은행, IMF 등도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는 빈곤 국가의 외채를 탕감하는 등 개발도상국

markets of all developed countries; and in the case of relevant developing countries in the context of the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nd

- organize a meeting with UNCTAD and the International Trade Centre as soon as possible in 1997, with the participation of aid agencies, 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to foster an integrated approach to assisting these countries in enhancing their trading opportunities.

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2002년 9월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도 절대적인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2002년 3월에 개최된 UN 개발재원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논의를 포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몬테레이 합의(Monterrey Consensus)를 채택하여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와 함께 개도국 스스로도 무역정책 개혁과 경쟁력 향상을 추구하여 WTO 협정의 이행 및 협상능력을 강화해야만 무역자유화를 통한 이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지원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UN이 지정하는 최빈개도국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971년 24개국에서 출발하여 1981년 30개국, 1991년 47개국으로 증가하여, 2005년 현재는 50개국(2003년 12월 4일 동티모르 가입)이 최빈개도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최빈개도국과 관련하여 큰 쟁점사항은 없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최빈개도국을 도와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세혜택 등을 제공한다는 것에 큰 이견은 없으나, 다만, 어느 정도까지 예외를 둘 것인가, 원산지 규정 등의 관세행정 관련 규칙 적용 등이 논란거리이다.

현재 UNCTAD 등을 중심으로 최빈개도국의 전체 수출품에 대해 쿼터 없는 무세화(Bound duty-free, quota free treatment)를 주장하고 있다. 이미 EU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무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EBA: Everything But Arms)에 대해 무세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현재에는 설탕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에서는 아직도 최빈개도국들이 관심이 가지고 있는 섬유 등의 품목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엄격한 원산지 규

정 등이 최빈개도국 수출에 지장을 주고 있다.

WTO DDA 협상에서도 개도국에 대한 논쟁은 많으나 최빈개도국에 대한 우대에 큰 이견을 보이는 회원국은 없다.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DDA 협상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따라서 개도국에 주어지는 관세유예기간 연장, 낮은 관세인하율 등의 혜택보다도 더 나은 혜택이 최빈개도국에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12월에 개최된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최빈개도국의 모든 수출품에 대해 무관세 및 무쿼터를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선진국과 이에 동참하고자 하는 개도국은 2008년까지 시장접근을 제공하고, 당장 이행하기 어려운 선진국의 경우 2008년까지 최빈개도국 수출품의 97%까지 시장접근을 허용하자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비농산물 분야 등에서 최빈개도국에 관세인하가 면제되더라도 최빈개도국들이 실질적으로 양허수준을 늘리게 된다면 최빈개도국 입장에서는 불이익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WTO에 품목을 양허한다는 것은 그만큼 최빈개도국의 관세를 통한 정책적 유연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최빈개도국의 경제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 최빈개도국에 대해 특혜를 확대하고 또한 개도국에까지 특혜관세가 확대될 경우, 오히려 해당 품목에 대한 경쟁을 증가시켜 최빈개도국의 상품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수출물량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는 의견도 있다. UNCTAD에서는 최빈개도국이 미국, EU, 일본에서 받은 혜택을 시나리오별로 50%에서 75%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¹⁰⁾. 이런 분석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나라 처럼 최빈개도국에 대해 일부 혜택만을 제공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혜택을 더 넓혀야 하고, 이것이 국제적 압력으로

10) UNCTAD, 'Review of developments and issues in the post-Doha work programme of particular concern to developing countries', 2005. 10.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3. 주요국의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제도 특징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의 특징을 분석해 보자.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품목들은 농산물과 섬유산업 관련 품목들이다. 이 두 산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에 대해서는 최빈개도국들이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특혜관세 공여에 큰 논란이 없다. 그러나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농산물과 섬유 관련 품목들은 여타 공산품에 비해 관세율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여기서는 주로 이 두 산업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우대조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 EU

EU는 일찍부터 최빈개도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왔다. 2000년 초에 이미 수입액을 기준으로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약 99% 정도가 무관세로 수입되었다. 그리고 2001년 3월 5일부터 발효된 규정에 의하면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EBA; Everything But Arms)에 대해 수량 제한 없이 무관세로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설탕, 쌀, 그리고 바나나 등 세 가지의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최빈개도국이 요구하던 모든 농산물에 대해 우대조치를 확대하였다. 이들 세 품목에 대해서도 바나나의 경우에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그리고 쌀과 설탕의 경우에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를 내려 2009년 1월 1일까지는 무기를 제외한 모든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수량에 관계 없이 무관세로 수입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도 일정한 쿼터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나. 일본

일본은 1971년 일반특혜관세(GSP)제도를 도입하여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수입품에 대해 우대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1980년 4월 1일부터 GSP에 대한 규정 안에 최빈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규정을 도입하여,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특혜관세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코모로와 시에라리온을 제외한 47개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만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만약 두 국가가 특혜관세를 요구하면 특혜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일본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특혜관세를 공여하는 품목을 정하는 positive 방식을, 그리고 공산품에 대해서는 특혜관세를 공여하지 않는 품목을 먼저 정하고 그 이외의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특혜관세를 공여하는 negative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리고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를 공여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수량에 대한 제한 없이 무관세로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까지도 적극적으로 최빈개도국을 우대하는 조치를 시행하지는 않았다. 특혜를 공여하는 품목의 수는 많지만, 최빈개도국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품목들이 많이 빠져 있었다. 2000년의 경우 HS 6단위를 기준으로 최빈개도국이 일본에 수출한 실적이 있는 541개 품목 중에서 250개의 품목은 아무런 특혜관세의 혜택 없이 수입되었다.

반면, 2001년 이후 국제적인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최빈개도국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품목들을 특혜대상에 포함시키기 시작하였다. 2001년 4월 1일에는 HS 9단위 기준으로 약 350개 품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무관세 시장접근을 허용하였는데, 여기에는 주로 섬유와 의류 제품이 포함되었다. 2003년에 1월 1일에는 다시 198개 품목의 농산물에 대해서도 무관세 시장접근을 확대하였다.

<표 II-9> 일본의 GSP와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GSP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농산물 (약 1,600 품목)	221 품목	관세 인하 수량제한 없음	GSP: 221 품목 + 최빈개도국: 77 품목 + 최빈개도국: 198 품목 (추가)	면세 수량제한 없음
공산품 (약 4,400 품목)	3,284 품목	대부분은 면세 일부는 관세 인하 수량 제한 있음	GSP: 3,284 품목 + 최빈개도국: 1,035 품목	면세 수량제한 없음

자료: UN, *Handbook on the Scheme of Japan, 2002/2003*.

2003년 현재 농산물의 경우 전체 약 1,600여 개의 품목 중에서 GSP에 따라 221개 품목을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최빈개도국 특혜관세로 기존의 77개 품목에 2003년부터 도입된 198개 품목을 합해 275개 품목을, 결국 포함 496개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를 공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3년에 추가된 품목까지 합하면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일본에 수입되는 농산물의 약 81% 정도가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공산품의 경우에는 전체 4,400여 개의 품목 중에서 GSP에 따라 3,284개 품목을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로 1,035개 품목을, 포함 4,319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GSP에 특별대우 규정으로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예방대책이나 원산지규정 등은 GSP의 규정

을 따르고 있다. 일본의 GSP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다. 미국

미국은 1976년부터 일반특혜관세(GSP)제도를 도입하여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수출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1996년 수정된 GSP 법안에 의해 1997년 5월 30일부터는 최빈개도국에 대해 HS 10단위를 기준으로 1,783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의 우대조치를 확대하여 전체 9천여 개 품목의 절반 정도에 대해 무관세의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며, GSP, Africa Growth and Opportunity Act(이하 AGOA) 등의 여러 가지 규정에서 해당 최빈개도국에 대해 우대조치를 해주고 있다. 또한 미국은 모든 최빈개도국에 대해 특혜관세를 공여하는 것이 아니라 35개의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만 이를 공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미국의 최빈개도국 우대조치와 관련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2000년부터 발효된 AGOA이다. 미국은 이 법안에 의해 GSP와는 별도로 23개 최빈개도국을 포함하는 34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에 특혜관세를 부여하였다. 미국의 특혜관세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분야는 섬유산업이다. 미국은 그 동안 의회에서 인준을 받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섬유산업에 대해서는 특혜관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HS 60류와 61류 사이에 속하는 의류제품에 대해서 수량제한 없이 무관세의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 속하는 23개의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1,835개의 품목에 대해 무관세의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

해서는 기존의 GSP보다 강화된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켜야 하는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만큼의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되고 있다.

라. 캐나다

캐나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미얀마를 제외한 나머지 48개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만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2000년까지는 전체의 약 8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최빈개도국에 특혜관세를 부여하여 오다가 2000년 9월 1일부터는 여기에다 HS 8단위 기준으로 특혜관세 공여품목을 570개 추가하였다. 그 결과 농산품의 경우에는 전체 수입의 약 99%가 무관세로 수입되었다.

하지만, 섬유산업 관련 제품에서는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고,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수량제한을 실시하고 있었다. 미국과 더불어 캐나다의 경우 주로 논란이 되고 있었던 것은 섬유산업에서도 우대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면 2000년도의 경우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의 절반 이상이 섬유산업 관련 제품에서 이루어졌다. 같은 해에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된 섬유제품의 절반 이상이 12% 내지 14%의 관세로 수입되었고, 의류제품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9%에 가까운 관세가 부과되었다. 또한 이들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은 방글라데시 등 6개국에 대해서는 시장제한 물량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섬유와 의류산업에서의 시장개방을 위한 국제적인 압력이 가중되었다.

캐나다는 2003년 1월 1일부터 일부 낙농업 제품을 제외한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무관세의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또한 섬유와 의류산업에서의 수량제한도 단계적으로 철폐했다. 방글라데시 등 6개국에 대해 2005년도까지는 한시적으로 수량제한을 두고 그 이후에는 모든 수량제한을 없앴다. 더불어 원산지

규정도 2003년부터는 이전보다 완화된 규정을 사용하고 있다.

마. 그 밖의 국가들

다음의 표는 다른 몇몇 국가들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와 경제적 수준이 유사한 국가들은 최빈개도국에 대해 상당 부분 시장을 개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10> 주요국의 최빈개도국 우대조치 현황

국가	최빈개도국 특혜조치 공여 현황
노르웨이	2000년부터는 flour, grains and feeding stuffs 등을 제외한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광공업 또는 농업 제품에 대해 무관세 및 무쿼터 제도를 실시하였고, 2002년 7월부터는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 대해 무관세 및 무쿼터를 실시하였다.
뉴질랜드	1999년에 이미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의 96.7%, 액수를 기준으로 하면 수입품의 99.3%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2001년 7월부터는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무관세로 쿼터 없이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호주	상당히 자유로운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1997년의 경우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의 98%가 무관세였으며, 2000년 5월에는 93.2%가 무관세로 쿼터 없이 수입되었다. 품목별로는 약 84% 정도의 품목이 무관세 또는 우대관세의 적용을 받고 있다.
불가리아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많은 수입품에 대해 무관세로 쿼터 없이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1997년의 경우에는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제품이 무관세로 수입되었다.
체코	자국의 GSP에 따라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무관세로 쿼터 없이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표 II-10>의 계속

국가	최빈개도국 특혜조치 공여 현황
이집트	1998년부터 HS 8단위 기준으로 77개의 WTO 권고 품목에 대해서는 10~20% 정도의 우대관세를, 약 50개의 품목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광공업 제품에 대해 관세를 10% 낮추는 우대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홍콩	MFN에 따라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무관세로 쿼터 없이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헝가리	자국의 GSP에 따라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무관세 및 무쿼터의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인도	자국의 GSTP에 따라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베냉, 기니, 아이티, 모잠비크, 수단의 7개 최빈개도국에 대해 관세우대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양자협정에 따라 미얀마와 네팔에 대해서도 관세우대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1997년 SAARC의 최빈개도국에 대해 배타적으로 574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양허하고 180개 품목에 대한 쿼터를 없앴다.
폴란드	1990년부터 최빈개도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우대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00년 5월에 모든 중요한 제품에 대해 무관세로 쿼터 없이 시장접근을 허용할 것을 연구중임을 발표하였다.
싱가포르	MFN에 따른 무관세 시장허용 이외에도 HS 6단위를 기준으로 107개 품목에 대해 최빈개도국 특혜관세를 주고 있다.
슬로바키아	자국의 GSP에 따라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무관세 및 무쿼터의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스위스	1997년 3월부터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광공업 제품과 대부분의 농수산물 제품에 대해 무관세로 시장접근을 허용하여 최빈개도국 수입품의 약 98%가 무관세로 수입되었다. 2002년 1월부터는 나머지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30% 감축하였고, 2004년 1월에는 다시 30%로 더 감축하였다.
태국	1997년에 HS 6단위 기준으로 74개 품목에 대해 일부 수입품은 관세를 면제하고 일부는 적용 관세율의 20% 한도 내에서 우대조치를 해주는 내용의 우대조치를 발표하였다.
터키	1998년 1월 1일부터 HS 그 외의 모든 품목은 무관세로 추가적인 시장접근을 허용하였다.

자료: 재경부 내부자료.

4. 우리나라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제도

가. 운영 현황

우리나라는 2000년 1월 1일부터 최빈개도국에 대해 HS 6단위 기준으로 116개 WTO 권고품목 중 87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로 시장접근을 허용하는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관세법 제76조 제3항에 근거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대통령령)에서 대상 품목 및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품목을 산업별로 나누어보면 커피·담배 등 농산물이 22개 품목이며, 관상용 활어, 닭새우류 등 수산물 3개 품목이고, 원목과 제재목 등 임산물이 13개 품목이고, 원면·천연고무·천연인산칼슘·의류 등 나머지 공산품이 42개 품목이다.

WTO에서 권고하고 있는 116개 품목 중에서 우리나라가 특혜관세를 공여하고 있지 않은 29개 품목은 농산물이 13개 품목, 수산물이 8개 품목, 임산물이 1개 품목, 그리고 공산품이 7개 품목이다.

<표 II-11> 29개 특혜관세 공여 제외품목

구 분	품 목
농산물(13)	뼈 없는 쇠고기(020230), 콩(070820), 기타 채소(070990), 기타 채두류(071390), 바나나(080300), 망고(080450), 건포도(080620), 홍차류(090240), 쌀(100630), 참깨(120740), 낙화생(120220), 발포성 포도주(220410), 오일케이크(230400)
수산물(8)	냉동황다랭이(030342), 냉동가다랭이(030343), 기타 냉동어류(030379), 기타 건조한 어류(030559), 냉동새우와 보리새우(030613), 오징어(030749), 기타 연체동물(030799), 통조림 다랭이(160414)
임산물(1)	합판(441299)
공산품(7)	원유(270900), 석유조제품(271000), 티셔츠 등(610910), 인조섬유제의 카디건 등(611030), 남자용 재킷 등(620342), 면제 남자용 셔츠(620520), 인조섬유제의 남자용 셔츠(620530)

우리나라는 특혜관세를 공여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에서는 또한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직권으로 특혜관세의 적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UNCTAD에서 정한 특혜관세 공여 관련 원산지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예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원재료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나. 전반적인 교역현황

2004년도 우리나라가 수입한 실적이 있는 품목의 수는 HS 6단위 기준으로 5,070개이고, 이 중 최빈개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있었던 품목의 수는 633개이다. 최빈개발도국으로부터 수입이 있는 품목의 수는 전체 수입실적이 있는 품목수의 12.5%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수입되는 부문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HS 10단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2004년 우리나라가 수입한 실적이 있는 품목의 수는 1만 363개이며, 이 중 최빈개발도국으로부터 수입한 실적이 있는 품목의 수는 1,144개로 전체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2년의 약 7%에서 상승한 것이다.

<표 II-12> 최빈개도국과 수입실적이 있는 품목수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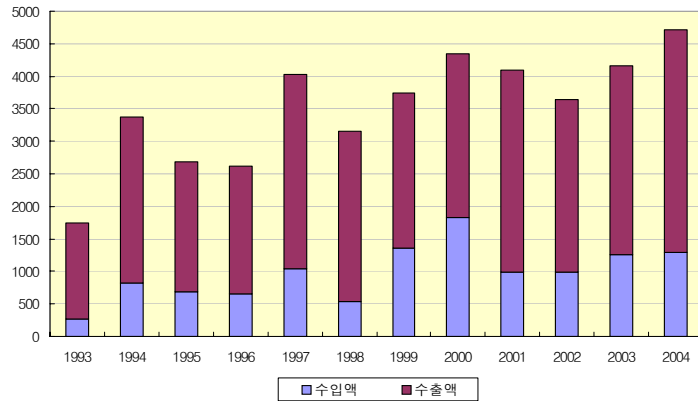
연도	전체 품목수	최빈개도국 품목수	비율
1997	4,944	374	7.6
1998	4,878	313	6.4
1999	4,935	420	8.5
2000	4,966	561	11.3
2001	4,959	562	11.3
2002	5,128	588	11.5
2003	5,055	639	12.6
2004	5,070	633	12.5

주: 품목수는 HS 6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www.kita.net

우리나라는 2004년에 50개 최빈개도국에 34억 2천만달러어치를 수출하였으며 이들 국가로부터 13억달러어치를 수입하였다. 최빈개도국과의 교역규모는 47억 2천만달러에 이르며 최빈개도국과의 교역을 통해 21억 2천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는 최빈개도국과의 교역을 통해 매년 평균 16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 10년간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평균 수출액의 65%, 그리고 평균 수입액의 약 1.2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림 II-1] 최빈개도국과의 교역규모

(단위 : 백만달러)



우리나라의 총수출에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의 경우 1.5%이었고, 최근 10년간 1.7%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수출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프리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 그 다음은 아시아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의 경우 아프리카 지역의 최빈개도국에 22억 6천만달러어치를 수출하여 전체 최빈개도국에 대한 수출에서 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66%였다. 최근 10년간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적으로 64%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최빈개도국에 10억 6천만달러어치를 수출하여, 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의 경우 31% 정도이다. 지난 10년간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34%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표 II-13> 최빈개도국에 대한 수출

(단위: 백만달러, %)

연도	총 수출액 (A)	최빈개도국 수출액					비율 (B/A)
		총계(B)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기타	
1993	82,236	1,485	468(32)	967(65)	49	3	1.81
1994	96,013	2,552	554(22)	1,966(77)	32	2	2.66
1995	125,058	1,996	705(35)	1,258(63)	33	8	1.60
1996	129,715	1,970	731(37)	1,197(61)	42	14	1.53
1997	136,164	2,984	858(29)	2,077(69)	48	14	2.20
1998	132,313	2,621	807(31)	1,761(67)	53	15	1.99
1999	143,685	2,386	871(36)	1,463(61)	52	18	1.67
2000	172,268	2,520	1,142(45)	1,334(53)	44	12	1.47
2001	150,439	3,098	1,120(36)	1,932(62)	46	9	2.06
2002	162,471	2,657	941(35)	1,664(62)	52	16	1.65
2003	193,817	3,420	1,006(35)	1,814(63)	60	18	1.35
2004	253,845	2,898	1,062(31)	2,261(66)	75	22	1.50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www.kita.net.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의 경우 0.58%였고 최근 10년간 1.0%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2004년의 경우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8천만달러에 달해 전체 최빈개도국 수입의 약 7%를 차지하여 2001년과 2002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아프리카 지역은 9억 6천만달러로서 전체의 74%를 차지하여, 2002년의 46%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중동의 예멘은 2억 5천만달러로 19%를 차지하였다.

아프리카 지역과 중동이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이유는 원유 때문이다. 원유를 제외하면, 2002년 기준으로 아시아 지역의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약 8천만달러로 전체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원유를 제외한 수입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아

프리카 지역은 1억달러로 55%를 차지하였고, 중동으로부터의 수입은 100만달러에 불과하였다.

<표 II-14>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

(단위: 백만달러, %)

연도	총수입액 (C)	최빈개도국 수입액				비율 (D/C)
		총계(D)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1993	83,800	263	95(36)	65(25)	103(39)	0.31
1994	102,348	814	57(7)	191(24)	566(70)	0.79
1995	135,119	691	66(10)	163(24)	462(67)	0.51
1996	150,339	652	84(13)	187(29)	381(58)	0.43
1997	144,616	1,048	67(6)	508(48)	473(45)	0.72
1998	93,282	540	36(7)	291(54)	213(39)	0.58
1999	119,752	1,358	52(4)	997(73)	309(23)	1.13
2000	160,481	1,828	77(4)	1,147(63)	605(33)	1.14
2001	141,098	996	105(11)	457(46)	434(44)	0.71
2002	152,126	989	108(11)	451(46)	429(43)	0.65
2003	178,827	1,266	87(7)	941(74)	238(19)	0.71
2004	224,463	1,300	88(7)	959(74)	253(19)	0.58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www.kita.net.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들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품목은 원유이다. 원유는 앙골라, 예멘, 수단, 미얀마 등지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전체 최빈개도국 수입액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999년과 2000년에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액이 가장 많아 각각 12.2억달러와 16.6억달러로 전체 최빈개도국 수입액의 약 90% 정도를 차지하였다. 2004년에는 그 비중이 감소하여 60.5%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총 수입액 중 원유를 포함한 최빈개도국의 수입 비중은 10여년간 평균적으로 약 0.7%이지만, 원유를 제외할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약 0.13%에 불과한 수준이다. 원유 수입이 감소한 2004년의 경우 우리나라가 최빈개도국에 대한 수출액이 총 34.2억달러이고, 원유를 제외한 수입액이 약 5.1억달러에 불과해 약 29억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원유를 제외한 수입액의 거의 6배에 달한다.

<표 II-15>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비중

(단위: 백만달러, %)

연도	총수입액 (A)	최빈개도국 수입액				원유 포함 비중 (B/A)	원유 제외 비중 (D/A)
		총계(B)	원유 (C)	그 외 (D)	원유 비중 (C/B)		
1993	83,800	263	121	142	46.0	0.31	0.17
1994	102,348	814	636	178	78.1	0.79	0.17
1995	135,119	691	581	110	84.1	0.51	0.08
1996	150,339	652	491	161	75.3	0.43	0.11
1997	144,616	1,048	891	157	85.0	0.72	0.11
1998	93,282	540	428	112	79.3	0.58	0.12
1999	119,752	1,358	1,226	132	90.3	1.13	0.11
2000	160,481	1,828	1,660	168	90.8	1.14	0.10
2001	141,098	996	829	167	83.2	0.71	0.12
2002	152,126	989	811	178	82.0	0.65	0.12
2003	178,827	1,266	1,001	265	79.1	0.71	0.15
2004	224,463	1,300	787	513	60.5	0.58	0.23

자료: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www.kita.net.

다. 주요국과 교역비중 비교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최빈개도국과의 교역이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편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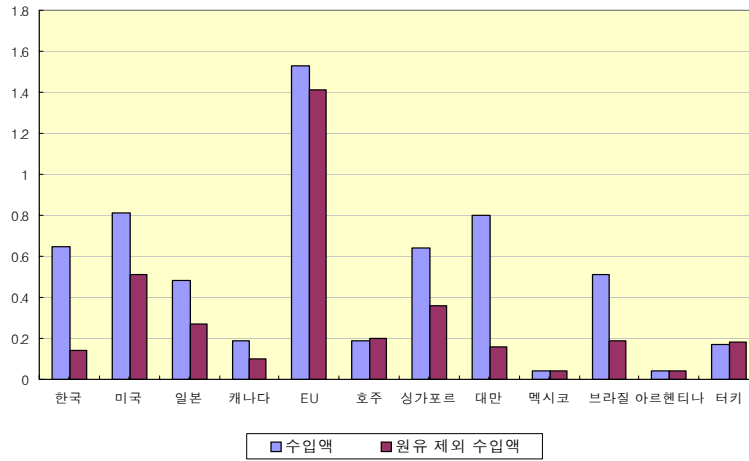
2002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수입시장에서 최빈개도국이 차지하는 수입시장 점유율은 0.65%로, EU 1.53%, 미국과 대만 각각 0.81%와 0.80%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일본 0.48%, 호주 0.19%, 캐나다 0.19%, 멕시코 0.04%에 비해서는 높았다. 싱가포르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0.64%였다. 우리나라에서 최빈개도국이 차지하는 수입시장 점유율이 1.13%로 매우 높았던 1999년의 경우 미국은 0.66%, 일본은 0.33%, 대만과 싱가포르는 0.5% 내외였다.

하지만 원유를 제외하면, 최빈개도국 제품이 우리나라의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0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0.14%였지만, EU는 1.41%로 가장 높았고, 미국 0.51%, 일본 0.27%, 호주 0.20%, 그리고 싱가포르 0.36%였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0.16%였고, 산유국인 멕시코,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0.04%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최빈개도국과 상대적으로 활발한 교역을 하고 있는 편이다. 우리나라의 수입시장에서 최빈개도국 제품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 하지만 원유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의 약 80%에 달해, 원유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최빈개도국과의 교역을 통해 전체 수입액의 거의 2배에 달하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원유를 제외하면 원유를 제외한 수입액 약 5억달러의 거의 6배에 달하는 약 29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교역량에 비해 상당히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II-2] OECD 회원국 등의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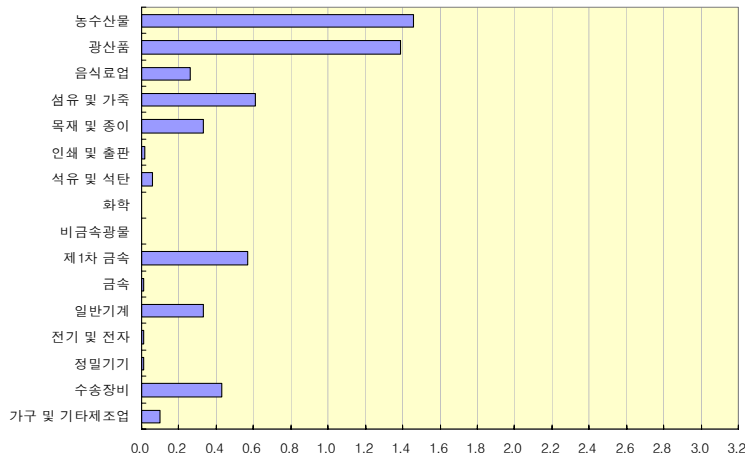


라. 산업별 최빈개도국 수입

산업별로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을 분석해 보자. 산업구분은 산업연관표에 나오는 대분류 기준에 의해 구분하였다. 2004년 기준으로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된 농수산물과 광산품의 수입액 비중은 각각 1.46%와 1.39%로 가장 높았다. 이 두 산업만이 유일하게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높은 산업은 섬유 및 가죽으로 0.61%로 나타났다.

[그림 11-3] 산업별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2004년)

(단위 : %)



2002년에는 수입액 비중이 1% 이상인 산업은 광산품이 유일하였고, 2003년에는 광산품과 농수산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른 산업에 대한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거의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광산품은 원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지난 2002년에는 3.05%, 2003년에는 2.02%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4년에는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원유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그 비중이 1.39%로 낮아진 것이다.

농수산물은 2002년 0.79%에서 2003년 1.26%, 그리고 2004년 1.46%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농수산물 중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참깨로, 2004년의 경우 참깨 수입이 전체 농수산물 수입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참깨를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최빈개도국은 수단으로 2004년의 경우에는 그동안 참깨의 대부분을 수출한 중국보다도 더 많은 양의 참깨를 우리나라에 수출하여 제일 많은 참깨를 우리나라에 수출한 국가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다음으로 수입비중이 높은 산업으로는 섬유 및 가죽 산업을 꼽을 수 있다. 섬유 및 가죽 산업은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2002년과 2003년에는 0.48%였고, 2004년에는 조금 증가한 0.61%로 나타났다.

농수산물과 섬유 및 가죽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산업이다. 즉, 우리나라가 8% 중심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외로 운영하고 있는 두 산업이 바로 농수산물과 섬유 및 가죽 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산품과 함께 최빈개도국에서 유일하게 수출 경쟁력이 존재하는 산업으로 이 두 산업에 대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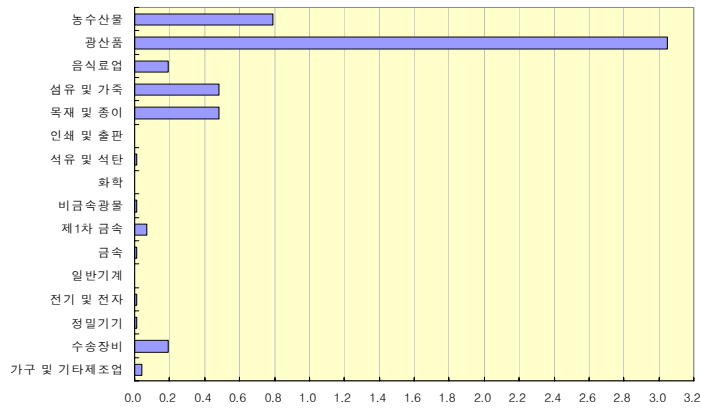
섬유 및 가죽 산업 다음으로는 목재 및 종이 산업에서의 수입비중이 2002년 0.48% 그리고 2003년과 2004년에 0.33%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목재 및 종이 산업은 2004년에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결과 무세화된 품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입비중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빈개도국 수입품의 가격탄력성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수송장비 산업은 2002년 0.19%에서 2003년 0.45%, 2004년 0.43%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수송장비에 포함되는 강철제 선박 중 화물선에서 일부 최빈개도국에서 수입되는 것이 있었다. 이는 최빈개도국에서 강철제 선박을 직접 제조하여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최빈개도국 선적을 가지고 있는 선박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는 분해되어 고철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로 강철제 선박의 관세율은 무세이고 우리나라가 가장 경쟁력이 높은 산업 중 하나이다.

위에서 언급한 산업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산업들의 최빈개도국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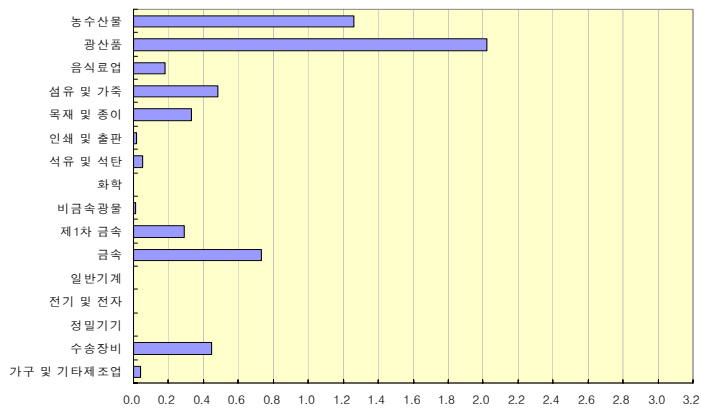
[그림 II-4] 산업별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2002년)

(단위 : %)



[그림 II-5] 산업별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2003년)

(단위 : %)



이런 산업별 비교를 주요국과 함께 하는 것이 유용하나 자료의 한계상 다른 국가들과 산업별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대체할 분석방안으로 HS 분류기준을 이용하여 품목별로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EU의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전체 수입액 대비 1.5%로 가장 높았다. 미국은 0.8%로 EU의 절반수준이고,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0.7%이며, 일본은 0.5%로 EU에 비해 약 1/3 수준이다.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비중을 보면, EU가 3.2%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일본도 전체 수입액 대비 비중이 0.5%인 데 비해 농산물은 0.8%로 나타났다. 미국은 0.7%로 전체 수입비중과 거의 유사한 반면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입비중이 0.4%로 전체 수입비중에 비해 적었다. 비중이 높은 EU의 경우 HS 제1류인 산동물과 동물성 생산품이 최빈개도국으로부터 많이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도 EU와 마찬가지로 현상을 보였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제2류인 식물성 생산품이 더 비중이 높았으며, 우리나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공산품 비중은 전체 수입액 비중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공산품이 전체 수입액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공산품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제5류 광물성 생산품이 2.5%의 높은 비중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제9류 목재와 목재제품이 1.7%로 나타났다. 원유를 포함해서 목재 등의 원재료가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U에서는 제14류 진주, 귀금속의 비중이 7.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제11류 섬유 및 섬유제품이 6.3%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제5류 광물성 생산품 2.3%, 제8류 원피, 모피, 가죽제품 2.2%, 제9류 목재와 목재제품 1.8% 등으로 나타났고, 그 나머지 품목은 비중이 미미했다. 결과적으로 진주, 광물성 생산품, 목재 등 원자재의 수입과 그리고 섬유, 가죽 등 섬유류 제품의 수입이 최빈개도국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겠다.

미국에서도 제11류 섬유 및 섬유제품이 5.5%로 공산품 품목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제5류 광물성 생산품 3.6%, 제12류 신발, 모자, 인모 0.9%로 나타났고, 그 나머지 품목은 비중이 미미했다. 일본도 미국과 유사하게 제12류 신발, 모자, 인모가 3.0%로 가장 높았

고, 그 다음으로 제5류 광물성 생산품이 1.2%였다.

결과적으로 미국, 일본, EU 모두 유사하게 광물성 생산품 등 원자재의 수입과 그리고 섬유류 제품의 수입이 최빈개도국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16> 주요국의 최빈개도국 수입비중

(단위: %)

품목 분류	미국	일본	EU	한국
농산물	0.7	0.8	3.2	0.4
01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0.9	1.2	6.5	0.5
02 식물성 생산품	1.5	0.8	2.6	0.5
03 동식물성유지 및 분해산물	0.1	0.2	3.7	0.0
04 조제식료품, 음료, 담배	0.3	0.3	1.4	0.1
공산물	0.8	0.4	1.4	0.7
05 광물성 생산품	3.6	1.2	2.3	2.5
06 화학공업/연관공업 생산품	0.1	0.0	0.2	0.0
07 플라스틱과 고무, 그 제품	0.2	0.0	0.1	0.0
08 원피, 모피, 가죽제품	0.2	0.5	2.2	0.9
09 목재와 목재제품	0.1	0.2	1.8	1.7
10 펄프, 종이	0.0	0.0	0.0	0.0
11 섬유 및 섬유제품	5.5	0.3	6.3	0.3
12 신발, 모자, 인모	0.9	3.0	1.2	0.1
13 석, 시멘트, 유리, 도자제품	0.0	0.0	0.2	0.0
14 진주, 귀금속	0.3	0.0	7.1	0.0
15 비금속과 제품	0.0	0.6	1.1	0.1
16 기계류, 전기기기, 부분품	0.0	0.0	0.0	0.0
17 차량, 항공기, 선박, 관련품	0.0	0.0	0.5	0.2
18 광학기기, 정밀/의료용 기기	0.0	0.1	0.1	0.0
19 무기 총포, 그 부속품	0.0	0.0	0.0	0.0
20 잡품	0.0	0.0	0.1	0.0
21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	0.2	0.7	0.1	0.1
전 체	0.8	0.5	1.5	0.7

주: 2002년 기준.

자료: WTO I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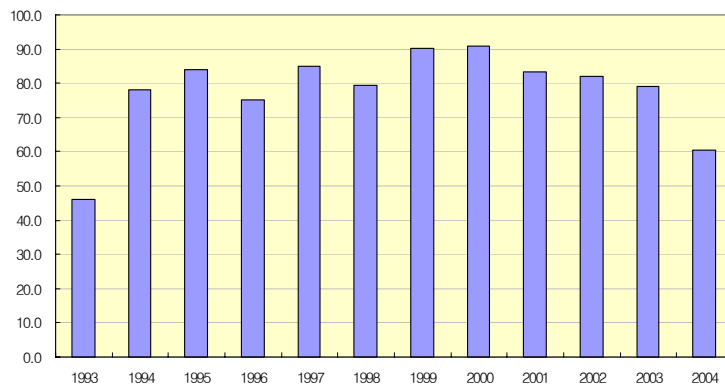
마. 원유 및 석유제품

원유와 석유제품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WTO에서 최빈개도국에 대해 특혜관세를 공여하도록 권고하는 품목 중의 하나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대상품목에서 제외하고 있다.

1) 국내 수입 현황

석유¹¹⁾는 HS 4단위 기준으로 2개 세번(HS2709, HS2710)에 불과하지만 수입액 기준으로 최빈개도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다. 최빈개도국에서 수입되는 총금액의 약 80% 정도가 석유로서 최빈개도국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¹²⁾.

[그림 II-6] 우리나라의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원유수입액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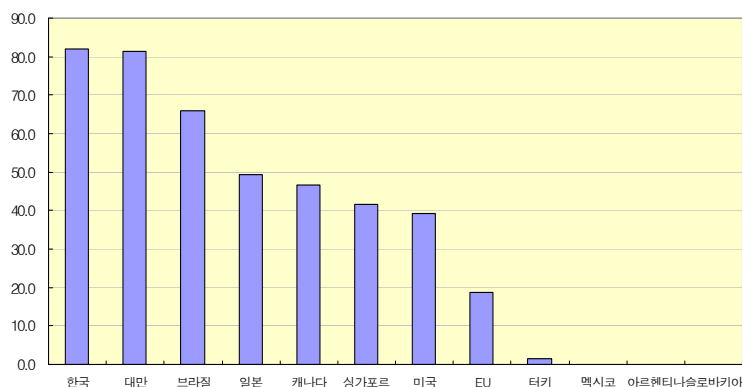
11) 편의상 원유와 석유제품을 총칭하여 석유라 명명하자. 추후에는 이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12) 석유 수입의 대부분은 원유가 차지하고 있다.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석유의 규모는 2000년의 16.6억달러가 정점이었다. 이 당시 최빈개도국에서의 석유수입은 전체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의 90%를 상회하였고, 전체 수입의 1%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빈개도국 석유수입 규모는 그 추세를 논할 수 있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들의 석유수입에 대해 2002년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 최빈개도국 수입 중에서 석유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81.9%로 가장 높았다. 대만이 81.3%로 우리나라 다음으로 최빈개도국 수입 중에서 석유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우리나라가 최근 10년간 평균 80%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999년 65% 내외였던 대만보다는 우리가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싱가포르(41.6%)와 미국(39.2%)이 있었으며, 일본은 49.3%였다. 우리나라는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석유수입이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7] 국가별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원유수입액 비율



우리나라에 원유를 수출하고 있는 최빈개도국으로는 앙골라, 수단, 적도기니, 예멘 그리고 미얀마 등이 있다.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유금액은 2002년 기준 8.1억달러였으며, 2000년에는 16.6억달러에 육박하기도 하였다.

미얀마는 2001년과 2002년에만 수입되었으며 전체 원유수입의 0.2%로 아주 미미하다. 수단도 1999년 이후 우리나라에 원유를 수출하고 있으나 점유율이 약 0.5% 미만이다. 따라서 이들 두 나라를 제외하고 앙골라, 적도기니, 예멘 등 3개국에서 대부분의 원유가 수입되고 있다. 특히 예멘에서는 나프타용 원유가 주로 수입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원유는 실질적으로 앙골라, 적도기니에서 수입되고 있다.

앙골라에서는 물량대비 최고 4.52%의 점유율(1999년)을 나타낼 정도로 많은 물량이 수입된 적도 있으나 금액 및 물량이 점차 감소하여 2005년 6월 현재 이 국가에서 수입된 양이 없다. 그 다음은 콩고로 점유율이 약 1% 내외를 선회하고 있다. 국가수로 보면 1993년에 최빈개도국 중 단 2개의 국가에서 수입되고 그 비중도 예멘이 크게 높던 것이 2000년에 6개 국가로 증가하였으나 물량은 국가별로 전체 비중에서 계속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에 비해 석유제품의 최빈개도국 수출은 아주 미미하다.

<표 II-17>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비중

(단위: %)

연도	미얀마	앙골라	콩고	수단	적도기니	예멘
1993	-	0.32	-	-	-	0.95
1994	-	0.78	-	-	-	6.26
1995	-	1.05	0.13	-	-	4.22
1996	-	0.51	0.12	-	-	2.56
1997	-	0.97	2.04	-	0.50	2.61
1998	-	1.40	2.34	-	0.14	1.90
1999	-	4.52	1.95	0.32	0.49	2.18
2000	-	2.70	2.21	0.51	0.22	2.31
2001	0.14	1.00	1.88	0.41	0.15	1.90
2002	0.22	1.04	2.23	0.14	0.54	2.23
2003	-	1.08	1.55	0.28	0.32	1.01
2004	-	0.44	0.59	0.48	0.19	0.46
2005.6	-	-	1.10	0.49	0.10	0.69

주: 수입비중은 전체 수입액 대비 비중임.

자료: <http://www.petronet.org/>

<표 II-18>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석유제품 수입비중

(단위: %)

연도	방글라데시	수단	앙골라	콩고	예멘
1993	0.11	-	-	-	0.69
1994	0.08	-	-	-	-
1995	-	-	-	-	-
1996	-	-	0.06	-	0.08
1997	-	-	-	-	0.16
1998	-	-	-	-	0.13
1999	0.12	-	-	-	-
2000	-	-	-	0.16	0.40
2001	0.04	-	-	-	0.41
2002	-	-	-	-	-
2003	-	0.04	-	-	0.02
2004	-	-	-	-	0.03
2005.6	-	-	-	-	-

주: 수입비중은 전체 수입액 대비 비중임.

자료: <http://www.petronet.org/>

2) 주요국의 석유수입 현황

가) 원유관세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이 원유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무세를 적용하지 않는 OECD 회원국으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일본, 멕시코가 있다¹³⁾.

13) 우리나라는 원유의 기본관세율은 5%이지만 현재 할당관세 1%를 적용하고 있다. 멕시코는 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2개 세번만을 제외하고 모든 세번을 WTO에 양허한 상태이다. 양허하지 않은 2개의 품목은 원유로서 HS 2709.0010과 HS 2709.0020이다. 참고로 미국은 이들 두 HS코드에 대해 MFN 세율 0.0525달러/배럴과 0.105달러/배럴을 부과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대상국에 대해서는 무세 혹은 0.05달러/배럴, 0.01달러/배럴을 부과하고 있고, GSP 대상국에 대해서는 무세를 적용하고 있다. 즉,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도 무세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도 미국처럼 원유(HS 2709.00.010과 HS 2709.00.090)에 대해서는 WTO에 양허를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해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다. 원유에 대해서는 기본관세는 무세이나 잠정관세 50엔/kl(2004년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석유제품은 제품에 따라 다양하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최빈개도국에 원유에 대한 특혜관세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EU는 원유에 대해 무세를 적용하고 있고, 석유제품의 평균관세율은 4.069%이다.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해 최빈개도국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캐나다는 원유에 대해서는 무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석유제품의 평균관세율은 3.25%이다. 원유는 무세이기 때문에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와 상관없지만, 석유제품은 최빈개도국에 대해 무세를 적용하여 혜택을 주고 있다.

대만의 경우 원유에 대해서는 무세와 2.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수입 자료를 살펴보면, 원유수입은 무세로 수입되었다. 석유제품의 평균관세율은 6.83%이다.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해 최빈개도국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종합적으로 원유는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WTO에 양허한 미국과 일본에서 양허하지 않은 예외 품목이었으며, 미국만이 최빈개도국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국가였다. 물론 원유에 무세를 적용하는 국가들에 최빈개도국 특혜관세는 무의미하다.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캐나다만이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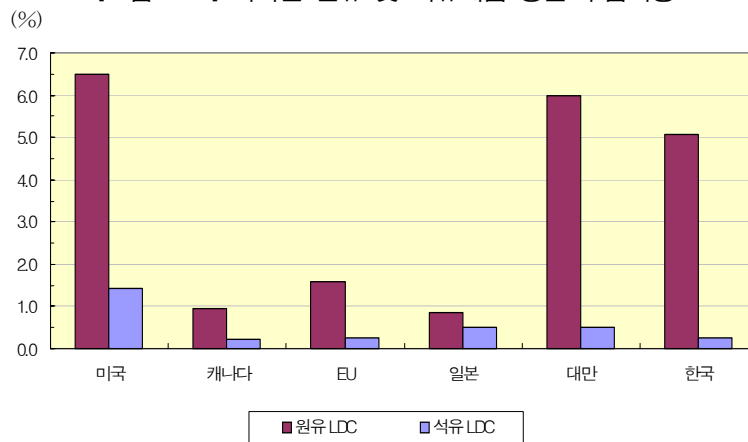
나) 주요국의 석유 수입

이들 국가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살펴볼 때, 우선 석유제품의 경우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비중은 전체 석유제품 수입액에 대해 매우 미미하고, 또한 원유에 비해서도 미미하다. 미국만 평균적으로 1.4%로 높은 편이고, 일본과 대만은 약 0.5%, 그리고 캐나다, EU, 우리나라는 약 0.25% 수준이다.

원유의 경우 미국은 2002년 전체 원유 수입액의 약 6.8%를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최빈개도국 중에서 미국에 가장 많은 원유를 수출하는 국가는 앙골라이다. 앙골라가 미국에 대해 특별히 많은 물량을 수출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첫째, 미국은 최빈개도국(GSP 포함)의 원유 수출에 대해서는 무세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미국은 원유에 대해 MFN세율과 FTA 특혜세율에 대해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다국적 석유기업들이 앙골라 유전개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앙골라에서 유전을 개발하는 회사로는 Chevron, Texaco, Exxon Mobil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의 원유에 대한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비중은 1% 미만으로 매우 작으나 다만 2002년 2.1%로 다소 높아졌다. EU도 이와 유사하게 평균적으로 약 1.6%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대만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최빈개도국 원유 수입비중이 미국, 캐나다, 일본, EU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대만은 평균적으로 약 8.4% 정도를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그림 II-8] 국가별 원유 및 석유제품 평균 수입비중



<표 II-19> 국가별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비중

(단위: %)

연도	미국		캐나다		EU		일본		대만		한국	
	석유 제품	원유	석유 제품	원유	석유 제품	원유	석유 제품	원유	석유 제품	원유	석유 제품	원유
1996	3.1	4.5	0.8	2.3	0.3	1.0	1.0	1.1	-	-	0.2	3.5
1997	3.5	5.5	0.8	0.2	0.6	0.9	0.8	0.4	-	-	0.2	5.0
1998	0.7	8.8	0.0	0.3	0.3	1.2	0.5	0.5	0.4	9.8	0.2	3.9
1999	0.7	7.4	0.0	0.0	0.2	1.1	0.5	0.3	0.7	7.8	0.0	8.3
2000	0.6	6.2	0.0	0.3	0.1	1.6	0.2	0.7	0.9	6.0	0.5	6.6
2001	0.4	6.3	0.0	1.2	0.2	2.4	0.0	0.9	1.6	7.8	0.6	3.9
2002	0.9	6.8	0.0	2.4	0.1	2.9	0.6	2.1	0.0	10.5	0.0	4.2
평균	1.41	6.50	0.23	0.96	0.26	1.59	0.51	0.86	0.51	5.99	0.24	5.06

자료: WTO.

5. 정책적 시사점

가.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확대의 필요성

국제적으로 최빈개도국의 절대빈곤 문제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UN 산하기관인 UNCTAD를 중심으로 일정 기준에 부합한 국가에 대해 1971년부터 최빈개도국으로 지정하여 회원국들의 지원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빈개도국 수는 1971년 24개에서 1981년 30개국, 1991년 47개국으로 증가하였다. 이런 증가 추세를 줄여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1990년대 말 OECD, WTO, 그리고 UN 등을 중심으로 폭넓게 형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996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는 최빈개도국의 수출품에 대해 수량제한 없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OECD에서도 2015년까지 최빈개도국에서의 절대적인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추진되었고 UN의 2000년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도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부응하여 EU는 적극적으로 무기 이외의 모든 최빈개도국 물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할 계획이고,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일명 QUAD 국가들도 농산물 및 섬유제품에 대해 최빈개도국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범위를 더 넓히고 있다. 특히, 의회 반대를 구실로 섬유제품 특혜관세 확대를 미루던 미국도 섬유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일본도 대부분의 섬유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또한 2003년부터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특혜관세를 확대하였다.

WTO 회원이고 또한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World Bank는 우리나라를 고소득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¹⁴⁾. 즉,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14) World Bank에 의해 고소득 경제권 혹은 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는 총 55개 국가이며, 이 중 OECD 회원국은 모두 24개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최빈개도국에 대해 어느 정도 혜택을 제공한 후에는 아마도 선진국과 비슷한 우대조치를 시행하라고 요구할 것은 자명해 보인다. 2005년 12월에 개최된 WTO 제6차 각료회의 결과 선진국과 이에 동참하는 개도국은 2008년까지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모든 수출품에 무관세 및 무쿼터를 적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이런 국제적인 분위기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의 교역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로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확대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2004년 기준으로 최빈개도국에 약 34억달러를 수출하였고 약 13억달러를 수입하여 약 21억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즉, 최빈개도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한 액수보다도 더 큰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이런 무역수지 흑자는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원유수입을 제외할 경우 그 수입액은 2004년에 약 5억달러에 불과하다. 5억달러도 가장 큰 액수로 2004년 이전 10여년간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약 1억달러를 좀 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원유를 제외한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액에 거의 20배에 가까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최빈개도국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0.7% 수준이고 원유를 제외할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낮은 약 0.1% 수준이다.

그러므로 국제적인 흐름, 최빈개도국의 경제적인 상황 및 규모,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교역비중 및 무역수지 흑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부 농산물 등 국내에서 민감하게 여기는 품목을 제외하면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확대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OECD 국가이면서 World Bank에 의해 고소득으로 분류된 국가 중 인구규모가 크면서도 GSP를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이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DDA 협상중에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지위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에 위치하여, 비농산물 협상에서는 선진국으로, 농산물 협상에서는 개도국으로 그 지위를 양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확대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나.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확대방안

특혜관세를 공여할 품목을 선정하는 방식은 다른 나라의 예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농산물에 대해서는 positive 방식을 이용하고, 공산품에 대해서는 negative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농산물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positive 방식을 선택하여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고 또한 품목별로 상이한 특혜관세를 줄 수 있다는 장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산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쟁력에 비추어 positive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negative 방식을 활용하여 석유, 섬유제품 등에 대해서는 특혜범위와 특혜관세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특혜관세를 공여할 품목의 범위와 특혜세율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 보자. 지금까지는 국제사회에서 어떤 국가가 최빈개도국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가를 평가할 때는 첫째, 농산품과 섬유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여부, 그리고 둘째, 최빈개도국의 수입 중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런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농산품과 섬유제품에 대해서도 그 특혜 품목 범위는 확대하면서 대신 특혜관세는 무세보다는 관세를 인하해 주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특히, 농산품과 섬유산업은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적은 수의 품목에 대하여 무관세의 특혜를 주기보다는 가급적 특혜 대상 범위를 넓히고 무세가 아닌 낮은 특혜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으로 여겨진다. 한 예로 호주에서는 GSP를 통해 관세율이 5% 이

하인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무세로 적용하지만, 그 이상인 경우에는 5%포인트만 관세를 인하해주고 있다.

다만, 한 번 특혜관세를 공여하면 이를 다시 폐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당장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를 공여할 수 있다고 해도 우선 그 대상을 다소 보수적으로 설정한 이후 차차 그 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최빈개도국은 아니지만 최빈개도국과 경제적 여건이 비슷한 국가들이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점차 특혜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특혜관세는 상대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관세장벽을 낮춰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특혜관세 공여품목을 선정할 때 특혜관세 공여로 인한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거나 또는 수입이 증가하더라도 국내 산업을 대체하기보다는 다른 나라 수입을 대체하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에 속하는 품목으로는 관세율이 낮은 품목, 특혜 수혜국 제품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낮은 품목, 또는 국내에서 생산이 전혀 안 되는 품목 등을 들 수 있다.

관세율이 낮은 품목을 선정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관세율이 높을 경우 특혜 수혜국을 우회한 수출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가격탄력성이 같다면 수입증가는 관세율에 의존하기 때문에 현재 관세율이 높다면 특혜 수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편, 수입시장 점유율이 낮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유로는 특혜 수혜국 제품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으면, 비록 수입이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 산업에서 수입이 증가하는 액수가 커질 것이고 이에 따라 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WTO에서 권고하는 품목들 중 일부는 앞서 제시한 조건들을 대부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쌀은 특수한 상황이고, 원유에 대해서는 일본 등에서도 특혜관세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기타 냉동어류 등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로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또한 빼 없는 소고기, 참깨, 낙화생 등과 같이 수입제한물량이 있는 경우에는 참깨처럼 관세율이 최고 630%까지 높기 때문에 특혜관세를 공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만 이들 품목을 제외하고는 국제적인 관심도를 반영하여 관세인하를 포함한 특혜관세의 공여를 고려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

WTO에서 최빈개도국에 대해 무세 적용을 권고한 품목 116개 중 우리나라가 무세를 적용하고 있는 87개 품목을 제외한 29개 품목은 농산물 13개 품목, 수산물 8개 품목, 임산물 1개 품목, 그리고 공산품 7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에 대해 지난 5년 동안의 수입실적을 보면, 농산물 13개 품목의 경우 참깨를 제외하고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산물 8개 품목 중에서는 기타 냉동어류 품목이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비중은 전체 수입액의 약 1% 수준이다. 수산물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실행세율보다 높은 조정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섬유제품에 대해서도 수입비중은 그리 크지 않지만, 현재 평균 실행세율이 13%로 우리나라 중심세율 8%보다 높은 수준으로 무세화보다는 관세인하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표 11-20> 특혜관세 공여 제외품목 중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 농산물

(단위: 천달러, %)

품목	2000		2001		2002		2003		2004
	수입	최빈국	수입	최빈국	수입	최빈국	수입	최빈국	
뼈 없는 쇠고기	318,732	0	217,402	0	414,943	0	440,087	0	313,328
콩	0	0	0	0	0	0	3	0	24
기타 채소	6,009	0	6,125	0	6,927	0	10,410	0	13,983
기타 채두류	405	369	25	4	46	0	27	13	22
바나나	75,250	0	70,045	0	78,211	0	90,682	0	86,665
망고	1,313	0	705	0	1,610	0	2,199	0	2,197
건포도	3,359	0	2,756	0	3,007	0	3,563	0	4,238
홍차류	627	0	657	0	648	0	521	0	699
쌀		0		0		0	401	0	489
참깨	52,483	26,273	49,226	18,112	38,935	7,767	68,685	18,873	80,593
낙화생	1,337	0	999	0	114	0	1,010	0	1,225
발포성 포도주	803	0	805	0	1,391	0	1,466	0	1,929
오일케이크	218,226	0	300,511	0	285,960	0	314,655	0	419,197

자료: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www.kita.net
 한국관세무역연구원, 「수출입통관편람」, 2004.

<표 II-21> 특혜관세 공여 제외품목 중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 수산물

(단위: 천달러, %)

품목	2000		2001		2002		2003		2004	
	수입	최빈국	수입	최빈국	수입	최빈국	수입	최빈국	수입	최빈국
냉동황다랭이	1,529	0	1,673	0	1,456	97	1,630	184	1,257	53
냉동가다랭이	163	0	70	0	1,512	0	560	0	1,142	0
기타 냉동어류	398,594	3,268	485,193	3,974	560,269	5,266	587,559	4,188	568,346	4,824
기타 건조한 어류	19,600	0	12,543	0	17,268	0	7,687	1	25,839	5
냉동새우와 보리새우	61,245	416	81,257	817	83,910	1,399	89,338	740	107,722	2,938
오징어	22,880	16	34,717	92	34,870	165	34,926	72	46,406	167
기타 연체동물	24,808	9	24,880	32	24,994	118	27,731	36	28,885	176
통조림 다랭이	665	0	1,125	0	1,001	0	1,787	0	3,247	0

자료: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www.kita.net
한국관세무역연구원, 「수출입통관편람」, 2004.

<표 II-22> 특혜관세 공여 제외품목 중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 공산품

(단위: 천달러, %)

품목	2000		2001		2002		2003		2004
	수입	최빈국	수입	최빈국	수입	최빈국	수입	최빈국	
합관	15,927	0	16,628	0	19,817	0	17,649	0	18,652
티셔츠 등	30,275	331	34,320	93	63,385	116	84,970	98	125,487
인조섬유제의 카디건 등	136,206	6	222,142	206	298,275	29	302,660	270	259,491
남자용 재킷 등	116,932	56	131,034	366	123,640	351	116,556	386	108,694
면제 남자용 셔츠	51,223	175	71,233	31	79,788	131	92,080	207	103,326
인조섬유제의 남자용 셔츠	32,808	35	29,592	53	38,042	51	45,588	71	58,213

자료: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www.kita.net
 한국관세무역연구원, 「수출입통관편람」, 2004.

다. 석유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여부

우리나라의 교역규모가 적지만 세번수가 많은 경우 여러 최빈개도국에 대해 혜택을 주면서도 수입급증 등 우리 경제의 부담이 적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나라의 교역규모가 크며, 세번수가 적은 경우에는 일부 최빈개도국에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품목이 석유이다. 석유는 HS 6단위 기준으로 2개 품목에 불과하지만 교역규모는 최빈개도국과 교역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석유의 무세화에 따른 특혜는 앙골라, 수단, 적도기니, 예멘 등 일부 산유국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석유(특히, 원유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경제적 부담을 주면서 혜택이 돌아가는 최빈개도국은 몇 개국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우선순위를 살펴볼 때 후순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향후 원유에 대해 최빈개도국 특혜관세를 부여한다면 이는 원유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 후에 고려해야 하는 것이 순서인 것으로 사료된다.

석유제품에 대한 최빈개도국의 수출은 미미하다. 다른 국가들을 보아도 최빈개도국을 통한 석유제품 수입은 미미하다. 그렇지만 원유를 제외하고 석유제품에 대해서만 특혜제도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석유는 단순한 광산품 의미 이외에 모든 국가들이 중요한 원재료로서 소비지 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에 비해 석유제품의 관세가 낮은 것은 소비지 정제주의에 맞지 않는다. 또한 석유제품은 원유에 비해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빈개도국에 대해 혜택을 줄 경우 최빈개도국에 투자한 미국, 유럽 등의 다국적 석유기업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석유제품에 대한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공여도 적절하지 않다.

라. 특혜관세 확대에 따른 피해 예방대책

관세법 제77조는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정지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관세법 77조에 의하면 재정경제부 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등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과 그 물품의 원산지인 국가를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는 물론이고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특정 국가의 물품에 대해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여부와 상관 없이 재정경제부 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국의 소득수준, 우리나라의 총수입액 중 특정한 특혜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특정한 특혜대상국의 특정한 특혜대상물품이 지니는 국제경쟁력의 정도, 기타의 사정을 감안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국가를 지정하거나 당해 국가 및 물품을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여부를 불문하고 해당국의 소득수준, 해당물품의 국제경쟁력 정도 등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척도를 통해서도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법 조항만으로도 최빈개도국으로부터 국내산업이 입을 지 모르는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는 피해를 입거나 혹은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최빈개도국 특혜관세를 철회할 수 있으며, 한편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준을 통해서도 특혜관세 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제경쟁력 정도, 국내산업에 피해

를 주거나 혹은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수량증가 등으로 국내생산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위협이 되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양여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의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GATT 제19조에 의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보호조항이다. 그러나 특혜관세는 특혜공여국이 물품 및 국가 등을 선택할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19조를 따를 필요는 없으며, 다른 보호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다른 보호방식으로는 전년도 수입수량 등에 근거하여 주어진 수량 제한을 규정하거나,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특정 국가에 대해 쿼터 또는 수입액 고정액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이 제한을 넘는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일반관세가 적용된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수입물품 총액에 제한을 두어 일정연도 수입총액의 일정수준(예를 들어 50%)을 넘거나 혹은 이에 도달할 경우 특혜관세가 다음 연도에는 취소되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

III. 일반특혜관세(GSP)제도

1. 일반특혜관세제도 개요

일반특혜관세(GSP;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제도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진국 등이 개발도상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우대관세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GSP는 1963년 GATT 각료회의에서 최초로 논의되기 시작해서 1964년의 제1차 UNCTAD(UN 무역개발회의) 총회에서 제기되었으며, 1968년 2월 뉴델리에서 열린 제2차 UNCTAD 총회에서 개발도상국의 (1) 수출을 장려하고 (2) 산업을 육성하며 (3)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키기 위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여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무차별적이며, 또한 비상호주의적인 특혜관세제도를 채택하기로 합의함으로써 GSP가 도입되었다.

여기서 일반적이라고 함은 모든 개발도상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무차별적이라고 함은 모든 대상 국가들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비상호주의적이라는 표현은 대상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면제하거나 혹은 최혜국 관세율(MFN 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GSP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도 특혜관세를 공여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제도와의 차이가 있다.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제도는 UN이 정한 50개의 최빈개도국에 대해서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제도이지만, GSP는 최빈개도국은 물론이고 그 외의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뒤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GSP에서는 특혜 공여국이 자신이 특혜를 공여할 대상 국가를 어느 정도 임의적으로 결정하여 왔다. 또한 GSP에서는 특혜를 공여하는 대상 국가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특혜를 공여하는 품목의 수도 적고 특혜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적다.

UNCTAD 총회에서 GSP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후, 1965년 구 소련이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호주가 1966년에, 이어 일본, EU, 노르웨이가 1971년에, 그리고 미국 등이 1976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5년 현재 EU를 포함하여 12개 국가 또는 지역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GSP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각 국가가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 GSP 규정을 만들고 있다. 물론, 개별 국가가 GSP 규정을 만들 때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앞서 제시하였듯이 UNCTAD는 모든 개발도상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규정이나 일반보호규정 등을 만드는 데도 국제적으로 합의된 틀을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런 국제적인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개별 국가는 자국의 경제적 여건에 맞게 GSP와 관련된 규정들을 결정하여 왔다.

특혜 공여국은 먼저 자국의 GSP와 관련된 일반규칙을 정하게 된다. 그리고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국가의 목록, 특혜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의 목록이나 특혜를 받을 수 없는 품목의 목록, 해당 품목의 특혜관세율과 쿼터, 그리고 원산지규정 등을 마련하여 공포하고 있다. 이외에도 특혜 공여국은 국가 또는 국가의 특정 품목을 특혜의 대상에서 졸업시키기 위한 기준이나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혜관세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조건 등을 정하고 있다.

가. GSP 실행 국가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GSP는 현재 12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국가 또는 지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I-1> GSP 실행 국가들

구분	국 가
OECD 국가	미국, 캐나다, 일본, EU, 스위스, 노르웨이, 터키, 호주, 뉴질랜드
그외	러시아, 불가리아, 벨라루시

주: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는 2002년 EU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GSP를 공여하는 국가들이었다. 현재 이들 국가가 EU에 가입하여 따로 표기하지 않았다.

GSP 공여국 중 러시아, 불가리아, 벨라루시를 제외한 9개 국가 또는 지역이 (EU의 각 회원국을 따로 계산하면 25개 국가가) OECD 회원국이다. OECD의 30개 회원국 중 아직 GSP를 공여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한국, 멕시코, 아이슬란드 3개국이다. GSP를 공여하는 나머지 국가들의 GSP 도입 이유는 경제적 여건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냉전시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팽창 경쟁 등의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

World Bank의 기준¹⁵⁾에 의해 고소득 경제권 혹은 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는 총 55개 국가로 OECD 회원국은 모두 24개 국가가¹⁶⁾ 여기에

15) World Bank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per capita)을 기준으로 모든 국가 또는 경제권을 고소득 국가(2004년의 경우 1인당 국민총소득이 1만 65달러 이상인 국가), 중상위 소득 국가(3,256달러 이상 1만 65달러 이하인 국가), 중하위 소득 국가(826달러 이상이고 3,255달러 이하인 국가), 저소득 국가(825달러 이하인 국가)로 나누고 있다.

16) OECD 30개 회원국 중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멕시코, 터키 등 6개국을 제외한 24개 국가.

속해 있다. 고소득에 속하는 OECD 24개 국가 중 한국과 인구가 30만 명이 채 안 되는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22개 국가가 GSP를 시행하고 있다.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World Bank의 기준에 의해 고소득 경제권 혹은 국가로 분류되는 55개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은 국가 중에서 GSP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는 없었다. 인구가 1천만 명 이상이면서 GSP를 공여하지 않는 국가로는 우리나라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가 유일했으며, 인구가 500만 명 이상인 국가 중에는 이스라엘과 홍콩이 GSP를 시행하고 있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OECD에 소속된 고소득 국가들이 GSP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 몇몇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도 GSP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이면서 World Bank에 의해 고소득으로 분류된 국가 중 인구규모가 크면서도 GSP를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로 분류되었다.

나. GSP 수혜국과 졸업규정

GSP 수혜를 받는 국가의 범위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GSP가 일반적이어야 한다는 국제적인 합의를 World Bank의 기준으로 중상위 소득 국가까지를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여기에 속하는 국가들을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런 기본적인 제약은 있지만, 아직까지 수혜국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GSP 공여국의 전적인 권한이다. GSP 공여국은 모든 개발도상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대상이 되는 국가의 경제적인 여건, 자국의 수입품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 해당 국가가 자국에 수출을 하여 특혜를 요청하는가의 여부 등의 경제적인 이유와 정치, 노동, 환경문제 등 비경제적인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혜국의 범위를 결정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149개 국가와 15개 지역에 대해 특혜관세를 공여하고

있다. 이 중에는 49개 최빈개도국 중에서 47개 최빈개도국만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본 정부는 나머지 2개 국가의 경우 그 국가로부터 특혜를 공여하라는 요청이 없어서 아직 특혜를 공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은 121개 국가와 24개 지역에 특혜관세를 공여하고 있다. 캐나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최빈개도국인 미얀마에 대해서 특혜관세를 공여하지 않고 있다. 또한 EU는 178개 국가 또는 지역에, 그리고 헝가리는 113개 국가에 대해 특혜관세를 공여하고 있다.

한편, 헝가리 등의 과거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한 모든 GSP 공여국은 수혜국의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면 그 국가를 GSP의 수혜 대상에서 졸업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GSP 수혜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때 적용되는 기준 또한 GSP 공여국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World Bank의 기준으로 고소득 국가가 되었을 때에는 그 국가를 특혜 수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또한 각 국가마다 전체 수입액에서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등 추가적인 요인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EU의 경우에는 (1) World Bank의 기준으로 고소득 국가가 되고, 또한 (2) 해당 국가의 수출액 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집계한 개발지수(Development index)가 -1 이상이면 그 국가를 수혜 대상에서 자동적으로 제외시키고 있다.

또한 해당 국가가 특혜 대상에서 졸업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더라도 특정 품목이나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면 그 국가를 그 품목이나 산업에 대해서만 특혜 대상에서 졸업시키기도 한다. EU의 경우에는 해당 수혜국의 개발지수가 -2 이상이고 해당 산업에서 그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특혜 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어서면 그 국가의 해당을 GSP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EU는 이 규정을 적용하여 2003년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광산물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일부의 섬유제품을 GSP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밖에도 미국과 EU 등에서는 어린이 노동¹⁷⁾ 등 국제적으로 요구

되는 노동자 권익보호에 미달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GSP를 철회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¹⁸⁾.

다. 특혜대상 품목 및 특혜세율

GSP 혜택을 받는 품목을 정하는 것도 GSP 공여국의 정책적인 결정에 따른다. 특혜 대상 품목을 정하는 방식으로는 특혜를 공여하는 품목과 특혜의 폭을 명시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과 특혜에서 제외되는 품목을 명시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 특혜를 주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이 있다. 특혜 공여국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특혜 대상 품목을 정하는 방식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일부 산업에서는 positive 방식을, 그리고 나머지 산업에서는 negative 방식을 택하는 나라도 있다. 일본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일본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positive 방식을,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negative 방식을 택하고 있다.

대상 품목을 정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대상 품목 자체를 선정할 때도 GSP 공여국은 자국의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 즉, GSP 공여국은 통상 특혜를 공여하는 품목을 선정할 때 국내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한 관세의 수입이 적게 감소하는 품목을 먼저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관세를 줄여주는 폭도 GSP 공여국에 따라 그리고 품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EU의 경우를 보면, 특혜를 공여하는 품목을 크게 역내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품목군(sensitive products)’과 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민감하지 않은 품목

17) 국제노동기구(ILO)의 Worst Forms of Child Labor Convention.

18) 이 규정에 의해 미국은 파키스탄을 비롯해서 미얀마, 과테말라, 라이베리아, 몰디브 등에 대해 GSP 특혜제공의 일부 정지 혹은 완전 철회를 실시하였다.

군(non-sensitive products)'으로 나누어, 후자의 경우에는 무관세의 특혜를 주고 있으며, 전자의 경우에는 MFN 세율의 약 30% 정도를 인하하여 적용하고 있다. 일본도 공산품의 경우에는 negative 방식을 택하여 특혜 제외 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경우에는 positive 방식을 택하여 특혜 품목마다 10%에서 80%에 이르는 다른 관세인하의 폭을 명시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상 품목에 대하여 MFN 세율에서 5%포인트 인하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GSP 공여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혜 대상국에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도록 GSP가 개정되기도 한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제도의 경우에는 대상 품목이나 인하하는 관세의 폭을 결정할 때 최빈개도국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는 국제적인 압력이 강한 데 반하여, GSP의 경우에는 아직 그런 압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개정이 일어나기도 한다.

EU가 2001년까지 적용한 규정에 따르면, 특혜 대상 품목을 크게 매우 민감한 품목군(very sensitive products), 민감한 품목군(sensitive products), 덜 민감한 품목군(semi-sensitive products), 민감하지 않은 품목군(non-sensitive products)의 네 가지로 나누어, 각 군마다 다른 폭으로 관세를 인하해 적용하고 있었다. 1995년에 있었던 개정에서는 덜 민감한 품목군의 특혜의 폭은 늘어났지만 매우 민감한 품목군의 특혜의 폭은 MFN 세율의 20%에서 15%로 감소하였다. 또한 2002년부터 적용된 규정에서는 앞의 세 군을 모두 민감한 품목군(sensitive products)으로 합쳐 같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세율이 그 이전보다 특혜 수혜국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라. 원산지규정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모든 제도에서는 원산지규정이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다. GSP 또한 해당 국가에만 그 혜택을 공여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를 구분하기 위한 원산지규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직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규정은 없다. WTO와 WCO에서 이를 추진중이지만 현재는 그 결과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원산지 개념

원산지규정(Rule of Origin)은 일반적으로 국가 간 거래상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판정하는 데 필요한 제반 기준과 규정, 판례 또는 행정결정 등을 말한다.

원산지규정은 적용 목적에 따라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비특혜 원산지규정으로 분류하는데 특혜원산지규정은 특정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등 특정국가군 상호간에 또는 일방적으로 무역상의 혜택을 부여할 경우에 적용한다.

비특혜원산지규정은 일반적인 상품의 원산지를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쿼터, 정부조달, 수출입통계작성 등 원산지판정이 필요한 모든 비특혜무역제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타 무역정책상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2) 원산지 결정기준

특정 제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되었을 경우 어느 국가를 원산

지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원산지 판정기준(criteria for origin determination)은 국가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어 왔다.

먼저 한 제품이 한 국가에서 생산되었을 때에는 완전생산(wholly obtained)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 국가(혹은 역내)에서 채굴한 광산물(철광석 등), 재배·양식·수확한 농수산물(과일, 채소, 수산물, 곡물류 등)과 국산 원료만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 제품의 생산에 여러 국가가 참여하였을 때에는 최종의 실질적 변형(last 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기준이 적용된다. 즉, 수입재료와 국산재료를 혼용하여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대부분의 공산품이 이에 해당된다.

실질적 변형을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세번변경기준(tariff shift rules),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rules), 주요공정기준(specific process rules) 등이 있다. 세번변경기준은 제품의 제조 및 생산과정에 투입된 원재료 또는 부품의 세번과 생산된 제품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세번변경의 해당 공정이 일어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이다. 세번변경기준은 객관적인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품목번호(세번)만 알면 누구든지 판정이 가능한 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의 장점은 많은 국가가 관세법의 기준으로 HS code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따라서 안정적이고 공통적인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질적 변형을 나타내는 단일 수준의 세번변경을 도출하기 어렵고, 또한 단순조립과 비단순조립의 구별이 어렵다는 점,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발생 등도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부가가치기준은 일정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공정이 일어난 곳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이다. 즉, 완제품의 전체 가치 중에서 최종 공정을 수행하는 국가에서 일정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이다. 부가가치기준은 논리적으로는 원산

지의 개념에 가장 부합한 기준이지만 세번변경기준보다는 세관이나 무역거래자에게 서류제출 및 확인 등 추가적 부담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세번변경기준의 예외적 조항으로 사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요공정기준은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생산공정이 발생한 국가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다. 주요공정기준은 그 규정이 매우 자세하게 기술되어야 하여 일반성이 없고 모든 제품에 대하여 주요공정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기준이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며 또한 새로운 제품의 생산이나 생산방식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다시 조정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 밖에 원산지 판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미소기준(de minimis rule), roll-up(or absorption), 누적기준(accumulation rule) 등이 있다. 전체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미미하여 이 부분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는 경우 원산지로 판정하는 것을 미소기준이라 한다. 미소기준과 누적기준은 확실적인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순과 불합리성을 보완하고 양국의 투자증진 등을 고려한 것이다.

3) 주요 원산지규정의 통일

원산지규정은 GSP뿐만 아니라 FTA 등 WTO의 MFN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특혜관세에 적용된다. 특히, 원산지규정은 다른 제품과 구별하여 차별적인 특혜관세를 부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이를 엄하게 혹은 느슨하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특혜관세 공여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미국의 경우에서처럼 최빈개도국에 더 많은 특혜를 제공하면서 더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일부 국가에서는 원산지 기준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원산지규정은 개별 국가별로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부가가치기준을 따르면서도 제각기 다른 비율을 제시하고 있으며, 가공도 기준을 따르면서도 실질적 변형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가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Bhagwati가 지적하였듯이 FTA 체결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규정이 복잡해지고 이에 따라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Spaghetti Bowl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GSP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원산지규정은 일단은 기존의 FTA 등에서 적용된 원산지규정의 주요 기준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모든 FTA뿐만 아니라 GSP에서도 다른 원산지규정을 적용한다면 매우 큰 행정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세부 규정은 다를 수 있지만, 원산지규정의 주요 기준은 통일될 필요가 있다.

2. 국제적 논의동향

지난 2001년 11월에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핵심의제로 상정한 도하개발아젠다(DDA)라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출범에 합의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가. 국제적인 논의 배경

그 동안 개발도상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과 WTO 출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각종 협정문에 나타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우대조항의 이행과 강화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1999년 시애틀에서 열린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이 특별우대조항들을 먼저 이행할 것을 주장하며

선진국과 대립함으로써 새로운 다자간 협상의 출범에 실패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2001년 제4차 각료회의에서는 그 동안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사용한 라운드는 명칭을 포기하고 개발도상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¹⁹⁾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함으로써 개발문제가 핵심의제 중의 하나로 떠올랐다.

WTO에서는 무역과 개발(trade and development)위원회 아래에 하위 위원회(sub-committee)를 두어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논의를 해오고 있다. 2001년 도하 각료회의 이후 무역과 개발위원회는 무역, 부채, 금융 working group, 무역과 기술이전 working group과 개발도상국의 무역 및 개발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된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농산물,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서비스, 개발이슈,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등의 주요 협상분야에서 그동안의 협상진행 결과를 점검하면서 2006년 말까지 협상완료를 위해 향후 협상의 진행지침에 대해 합의하였다.

2006년 말이라는 시한은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이 2007년에 종료될 것이라는 예측과 빈곤퇴치와 개발장려의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를 지속시키는 개발패키지(Development

19) GATT 체제아래 개최된 8차례의 다자간 협상에서는 라운드(round)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지난 50여 년간 라운드는 다자간 무역협상의 대명사가 되었다. 라운드는 여러 회원국들이 원탁에 둘러앉아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협상을 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라운드라는 단어에 대해 개도국들이 저항감을 표시하게 되었다. 이는 그 동안의 무역협상이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개도국에 대해서는 선진국처럼 발전할 수 있는 다른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WTO 무역협상에서는 도하 라운드가 아닌 도하개발아젠다(DDA)로 명명하기로 하였다. 이는 개도국의 발언권 강화와 협상의 제 및 협상목표에 개도국의 입장을 폭 넓게 반영하여 개도국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WTO가 범세계적인 성격(universal nature)의 체제로 자리잡고자 함이다.

package)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개발패키지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농산물 및 공산품, 서비스 특히 Mode 4에 대한 가시적인(predictable) 시장접근증진, 시장진입장벽과 비관세장벽의 제거, 국내농업의 수출보조 및 보조적 감면의 신뢰할 만한 종료일 내의 철폐, 코튼에 대한 무역 교란 보조금과 코튼생산자를 위한 개발패키지의 조속한 철폐 등이 주요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다.

현재 농산물과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분야에서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초기제안(initial offer)과 기준제정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가들의 시장접근부문에 대한(특히 mode4)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발이슈부문에서는 SDT와 이행(implementation)문제에 대한 중요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세부적으로 농산물 분야에서는 비종가세의 종가세 전환을 위한 관세 상당치(AVEs)의 계산방식에 대한 합의가 파리 소각료회의에서 이루어졌으나 관세인하공식이 여전히 협상의 핵심이슈로 남아 있다. Dalian 소각료회의에서 UR 공식과 스위스 공식 사이의 중간을 찾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시하였고(G20제안서²⁰⁾)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관세구간(tariff band)의 수, 관세구간 설정원칙, 및 각 관세구간별 관세인하에 대한 세부사항(modalities)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수출보조금 감축,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등이 농산물 분야의 주요 논의사항이다. 시장접근과 관

20) G20의 제안서는 UR 공식과 스위스 공식의 중간지대를 찾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제안서에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이 받아들일 관세감축의 2/3 이하로 감축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 제안서는 선진국의 5가지 tariff band와 개발도상국의 4가지 tariff band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밴드에서 높은 tariff band가 더 많은 감축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 제안서는 관세상당(EVA)공식에 따라 관세를 binding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더하여 각기 다른 tariff band에 다른 감축률을 제안하여 낮은 관세밴드에서는 낮은 평균감축률을, 높은 관세밴드에서는 높은 감축률을 적용한다.

런된 다른 이슈는 개도국에 대한 민감품목 대우(treatment), SDT에서 특별품목과 SSM(Special Safeguard Mechanism) 등이 쟁점사항이다. 또한 순식량수입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을 위한 식량수입에 대한 자금지원(financing facility)도입부문도 논의되고 있다.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문제는 전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 후생증가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자유화에 따른 효과는 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고용과 생산이 자국의 핵심 산업으로 이동하여 이에 따른 산업별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조정은 고용, 재정수입, 산업정책 수단 등 개도국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수단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국가적 조정비용²¹⁾을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

비농산물 시장접근의 핵심 문제인 관세감축공식이 합의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그 외의 비양허 품목(treatment of unbound tariffs), 개도국을 위한 유연성, 부문별 협상 참여, 비관세장벽(NTBs)과 무역특혜(trade preferences) 등이 중요 협상이슈들이다.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에서 스위스 공식²²⁾ 형태의 관세감축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21) 조정비용의 경우 UNCTAD(2005)에서 무역자유화 시나리오 및 이에 따른 조정비용(adjustment costs)을 분석하였는데 총변화가 완만(moderate)할지라도 부문별 변화는 급격할 수 있음을 보였다. 몇몇 개발도상국에서 특정부분은 50% 이상의 생산감소(예를 들어 아시아의 자동차분야)를 나타냈다. 국가별 연구에서는 무역정책의 변화에 따른 급격한 변화를 확인하여 예를 들어 잠비아의 엔지니어링 부문 수출이 1990년대에 약 50%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22) EU, 미국, 노르웨이는 각각 단순한 스위스 공식을 제안했는데 선진국에 단일계수를, 개발도상국에는 SDT조항과 유연성과 연계된 복수의 계수를 제안하였다. 이 세 제안서는 공통적으로 낮은 관세감축을 선택하면(i.e. 높은 계수) 유연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는 비선형공식을 제안하였는데 선진국에 단일계수를 적용하고 개도국에 유연성과 연계된 제한된 수의 계수를 적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카리브해 국가들은 초기관세율에 연계된(높은 초기협정관세로 개도국의 경우 적은 관세감축을 하게 됨) 스위스 공식을 제시하였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 계수(coefficients)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와 개도국에 부여되는 유연성을 이 계수들과 연계할 것인가의 여부가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다.

개발도상국 특별우대조치(SDT)는 개도국의 개발, 금융, 무역과 관련된 핵심 내용으로 현재 MDG 8이라는 직접적인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88개의 특정 합의제안서는 기한 내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섬유협정(ATC: Agreement on Textile and Clothing)의 종료문제로 개도국들 사이에 중요한 문제로, 특히 섬유협정 종료 후 중국 섬유수출의 급격한 증가는 최근 긴장을 조성하고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measure)를 요청하게 만들었다. 몇몇 경쟁력이 낮은 국가들에서는 쿼터제의 폐지에 따른 조정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시장접근 및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조(assistance)를 요구하고 있다.

이행문제에 있어서도 국가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개도국에 중요한 TRIPS하의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의 연장 및 TRIMs의 유연성 확보에 관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나. 개발도상국 관련 주요 쟁점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에서는 협상의제 및 분야별 협상의 목표를 설정할 때부터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게 반영되고 있다. 이는 개도국들이 자신의 입장을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등 발언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세계화와 개방화의 빠른 진전과정 속에서도 개발도상국들이 다자무역체제에 순조롭게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개발도상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첫째, 개발도상국 특별우대조치(SDT;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의 원칙과 목적, 둘째, 개발도상국 분류와 졸업 문제, 셋째,

감독기구의 설립, 넷째, 특정조항들에 대한 제안 등이 있다.

개발도상국 특별우대조치와 관련하여 일본, EU,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 특별우대조치의 기본적인 원칙과 목적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자신들에게 허용된 유연성 및 특별한 권리를 모든 회원국들이 존중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쟁점으로는 개발도상국 분류와 졸업문제를 들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느 국가가 개도국이고 어느 국가가 선진국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WTO에서는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UN의 분류기준에 의한 최빈개도국 목록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WTO 차원의 정의가 없으며 개발도상국 지위는 해당 회원국이 자선(self-selection)을 하고 다른 회원국들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인정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 내에도 경제적 여건이 다른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이를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분류문제는 커다란 쟁점이며 동시에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쟁점이기도 하다. 또한 개발도상국 졸업문제도 개발도상국을 분류하는 문제와 얽혀 있어서 합의가 요원한 상태이다.

셋째, 감독기구의 설립이 있다. 감독기구의 주요 기능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들이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합의된 내용을 회원국들이 따르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감독기구의 설립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넷째, WTO의 특정조항들에 대해 개발도상국의 우대 혹은 유예를 제안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서는 특정조항별로 세세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위의 네 가지 쟁점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커다란 의견차이가 있으며, 이들 쟁점에 대해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리라 판단되지는 않는다.

다. GSP 관련 논의사항

GSP제도와 관련하여 GSP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국제적인 논의는 아직 없다. 다만, DDA 협상에서 부분적으로 무역특혜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GSP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논의로는 무엇보다도 같은 개도국 내의 차별적 조치이다. 예를 들어 GSP 수혜국에 대해 EU는 179개 국가 또는 지역에, 일본은 164개 국가 또는 지역에, 그리고 헝가리는 113개 국가에 대해 특혜관세를 공여하고 있다. 즉, 같은 개도국이라고 해도 어느 국가로부터는 GSP 혜택을 받고 다른 국가로부터는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도국은 이런 점을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모든 개도국은 동일한 혜택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선진국들의 주장은 개도국 간에도 경제발전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괄 적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을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합의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이로 인해 감독위원회 설치, 농산물과 비농산물 분야에서 관세인하폭 축소 등으로 개도국의 요구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GSP 혹은 이보다 적은 범위의 개도국 무역특혜 문제는 DDA 협상 이후 개도국에 대한 우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대두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이번 DDA 협상에서 개발도상국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등 발언권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들의 불만해소와 그들을 향후 다자협상에 유인할 특별대우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어 우리나라 경제적 수준에 맞는 개

도국 우대를 준비해야 한다. 설령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게 개도국에 대한 혜택을 요구하지 않고 있더라도 협상 마지막에 이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3. 주요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 특징

가. 일본

일본은 1971년 8월 1일에 GSP를 도입하였으며, 매 10년마다 이를 갱신하고 있다. 1981년에 1차로 갱신하였고, 1991년과 2001년에도 갱신이 있었으며, 최근 갱신으로 2014년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2003년 일본은 47개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149개 국가와 15개 지역, 도합 164개 경제권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나머지 2개의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도 그 국가가 특혜관세를 요청하면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일본 정부는 밝히고 있다.

특혜관세를 공여하는 품목을 선정하는 방식과 관련하여서 일본은 농산물(HS 1류에서 24류까지의 품목)에 대해서는 positive 방식을, 공산품(HS 25류에서 98류까지의 품목)에 대해서는 negative 방식을 택하고 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잠정조치법 별표 제2(the Annexed Table No. 2 of the Temporary Tariff Measures Law)에서 우대를 하는 품목과 특혜세율을 명시하고 있다. 우대해주는 관세의 폭은 MFN의 10%에서 무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수량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은 반면에 국내의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품목 목록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적은 폭의 우대를 하고 있다. 또한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관세잠정조치법 별표 제5에 추가적으로 특혜를 주는 품목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47개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관세잠정조치법 별표 제2와 제5에 명기된 모든 품목에 대해 무관세로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2002년 현재 관세잠정조치법 별표 제2에 포함된 농산물 품목의 수는 HS code 9단위를 기준으

로 전체 약 1,600개 품목 중 221개이며, 관세잠정조치법 별표 제5에는 77개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2003년에 관세잠정조치법 별표 제5에 198개 품목을 추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공산품에 대해서는 우선 관세잠정조치법 별표 제3에 관세가 부과되는 모든 품목을 명기하고 있으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관세의 특혜를 주고 있다. 관세잠정조치법 별표 제4에서는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 중 관세를 인하해 적용하는 품목과 세율을 명기하고 있는데, 인하해주는 관세의 폭은 20%에서 100%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일본은 공산품의 경우에는 많은 품목에 대해 큰 폭의 특혜관세를 공여하는 한편, 수량에 대한 상한을 둬으로써 자국의 산업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관세잠정조치법 별표 제6에서는 특혜관세를 공여하지만 수량을 제한하는 품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그 쿼터도 명기하고 있다. 만약 수입이 이 쿼터를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MFN에 따른 세율이 부과된다. 그리고 관세잠정조치법 별표 제5에서는 농산물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관세잠정조치법 별표 제3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최빈개도국에 대해 추가적으로 특혜를 주는 품목을 명시하고 있다. HS 9단위를 기준으로 전체 공산품의 약 4,400개 품목 중에서 석유, 섬유, 합판, 생사 등을 제외한 3,284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 또는 관세인하의 혜택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추가로 1,035개 품목에 대해서 무관세의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의 GSP도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졸업규정, 일반보호규정, 그리고 원산지규정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일본은 특혜 대상 국가의 경제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다면 GSP를 졸업하도록 하는 졸업규정을 갖고 있다. 일본은 World Bank의 기준에 의해 고소득 국가로 분류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1인당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에 대한 특혜를 중지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국가는 특혜 대상국에서 졸업시키고 있다. 이런 기준

에 따라 일본의 GSP 혜택을 받다가 졸업한 국가는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19개에 이른다. 또한 (1)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품목에서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이 일본 전체 수입액의 25%를 초과하거나 또는 (2) 그 수입액이 10억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해당 품목을 특혜 대상에서 졸업시키고 있다.

일본의 일반보호규정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일본 정부가 “어떤 상황에서도 특혜관세를 유예할 권리를 갖는다”고 폭 넓게 정의함으로써 예상되는 모든 피해에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나. EU

EU는 1971년 7월 1일에 GSP를 도입하여, 매 10년마다 이를 갱신하고 있다. 1981년에 1차로 갱신하였고, 1991년에 다시 갱신하였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는 매년 개정을 하였으며, 1995년에는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재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2004년에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유효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EU는 2004년 현재 178개의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 특혜관세를 공여하고 있으며, positive 방식을 택하여 특혜를 주는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EU가 시행하는 GSP의 특징 중 하나는 특혜를 주는 품목을 몇 개의 군으로 나누어 군마다 다른 크기의 관세를 인하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2001년 이전에는 4개의 군으로 나누다가 2002년부터는 특혜를 주는 모든 품목을 민감한 품목군(sensitive products)과 민감하지 않은 품목군(non-sensitive products)의 두 개 군으로 나누고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모든 품목에 대해 무관세의 특혜를 주고 있으며, 전자의 경우에는 관세로 종가세(ad valorem)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현행 MFN 세율에서 3.5%포인트 인하해주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MFN 세율에서 30%의 정률 인하를 해주고 있다. 또한 이의 예외로서 섬유산업의

경우에는 20%의 정률 인하를 하고 있다.

<표 III-2> EU의 GSP 대상 품목 및 세율구조

2001년까지		2005 ~ 2008년	
구분	특혜세율	구분	특혜세율
매우 민감한 품목군	15% 인하	민감한 품목군	증가세의 경우 3.5%포인트 인하, 섬유· 의복류: 20%, 그 외 (종량세) 30% 인하
민감한 품목군	30% 인하		
덜 민감한 품목군	65% 인하		
민감하지 않은 품목군	무세	민감하지 않은 품목군	무세

자료: Handbook on the Scheme of the European Community, 2004.

EU GSP의 두 번째 특징은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로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관세인하를 하고 있다. 둘째로 노동자의 권익보호나 환경보호와 관련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도 추가로 관세를 인하하고 있다.

EU는 가장 구체적인 GSP 졸업규정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의 졸업규정이 있는데, 첫째는 해당 국가의 일부 품목이 졸업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고 둘째는 해당 국가 전체가 졸업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다. 첫째 규정을 먼저 살펴보자. EU는 자신들이 정한 룰에 따라 개발지수(Development Index)를 만들었으며, 이 개발지수가 -2를 초과하고 해당 국가로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이 전체 수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의 25%를 초과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국가의 해당 품목을 졸업시키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는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의 광산물(HS 기준으로 25류부터 27류까

지), 그리고 중국의 일부 섬유제품(28류부터 30류까지와 32류부터 38류까지)이 GSP를 졸업하였다. EU는 또한 (1) World Bank의 기준에 따라 고소득 국가로 분류되고, (2) EU의 개발지수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를 GSP의 수혜 대상에서 졸업시키고 있다.

일반보호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특혜 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이 EU 역내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특혜를 중지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EU가 국가연합이라는 점에서 각 회원국마다 자국의 산업이 영향을 받거나 예상되는 경우에 자국의 특혜를 중지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미국

미국은 1974년에 제정된 Title V of the Trade Act에 1976년 1월 1일부터 GSP를 도입하였으며, 1984년에 Trade Tariff Act, 1994년에 the Uruguay Round Agreement Act, 1996년에 the Small Business Act, 1997년에 the Budget and Reconciliation Act에 의해 GSP를 개정하였다. 미국은 2004년 현재 약 121개 국가와 24개의 지역에 특혜관세를 공여하고 있다. 이 국가들 중 2004년 알제리와 이라크가 추가되었으며 EU 가입으로 폴란드, 체코 등은 GSP에서 종료되었다. 미국은 2000년 현재 HS 8단위 기준으로 4,650개 품목에 대해 특혜를 공여하고 있는데 이들 품목에 대하여 모두 무관세의 특혜를 주고 있다.

미국 GSP의 두 가지 특징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물량제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과 자국 내 이해 당사자가 청원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CNL(Competitive Need Limitations)이라는 쿼터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어느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이 전체 수혜국으로부터 수입액의 50%를 넘어서거나 또는 1999년을 기준으로 9천만달러(매년 500만달러가

자동적으로 증가한다)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해부터는 그 국가의 해당 품목에 대해 특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자국 내의 이해 당사자가 특혜를 중지하도록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원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대통령이 특혜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또한 졸업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1인당 GDP 한도를 정하고 있다. 더하여 수혜국의 경제발전 정도와 무역경쟁력의 수준을 정기적으로 살피고 있다. (1) 수혜국의 전반적인 발전정도 (2) 특정품목의 경쟁력 (3) 무역투자와 노동자 권익과 관련된 수혜국의 노력 (4) 미국의 전반적 경제이해관계 등을 GSP 하부위원회(subcommittee)에서 수혜국의 GSP 졸업관련사항으로 위의 사실들을 조사한다.

라. 캐나다

캐나다는 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1974년 7월 도입하여 초기 10년의 기간이 지난 1984년에 1차로 갱신하면서 폭넓게 공여범위를 확대하였고 이와 유사하게 1994년에 한 번 더 갱신하였다. 1995년 일반특혜세율(GPT:The General Preferential Tariff)이 우루과이라운드 다자협상의 결과에 의해 다시 갱신되었다.

2001년 기준으로 캐나다는 GSP 특혜세율을 186개국에 공여하며 그 중 최빈개도국의 수는 47개국이다. 캐나다는 GSP 수혜에 있어 공여대상 품목을 정하는(positive)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섬유직물 일부와 신발, 화학제품,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사용 산업, 특히 철강과 전선은 공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캐나다 또한 자국 생산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상품에 대해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캐나다 재무장(Minister of Finance)은 GATT에서 합의된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와 관련된 피해 품목을 캐나다 국제무역위원회(CITT: the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에 알리고

CITT는 피해정도에 따라 그 품목을 정부에 권고하여 정부가 그 품목을 제외하거나 관세 쿼터를 제정하게 된다.

원산지규정에 있어 캐나다는 수혜국에서 제조·제작된 상품에서 수입부품(원료)가치가 40%를 넘지 않으면 수혜국 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누적원산지제도 및 공여국산 원자재 사용분 인정제도(donor country content rule)를 운영하고 있어 GSP 수혜국 간 또는 캐나다산의 수입부품(원료)을 60% 이상(최빈개도국의 경우 40%) 함유하고 있으면 수혜국의 수출로 인정하고 있다.

마. 헝가리

헝가리는 1972년 1월 1일에 GSP를 도입하였다. 헝가리는 2002년 기준 49개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113개 국가에 대해 특혜관세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혜 공여품목은 농산물이 약 1천여개 품목이고 공산품이 약 6천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 중 절반 정도는 무관세의 특혜를 주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20~90% 인하된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다른 구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헝가리의 GSP는 OECD 회원국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우선 GSP가 정해진 기간을 두고 갱신되는 일시적인 규정이 아니다. 즉, OECD 회원국들의 GSP는 정해진 기간을 두고 갱신하면서 갱신이 되지 않으면 적용이 끝나는 데 반해 헝가리는 다른 개정이 없는 한 GSP가 영원히 적용된다. 둘째, 헝가리는 구체적인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으며,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규정을 바꿈으로써 이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시장진입 물량에 대한 규제나 졸업에 대한 규정도 없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자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6배나 높은 싱가포르에 대해 아직도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다른 점은 1972년부터 1990년 사이에 전체 수혜국으로부터 총수입액의 약 90% 정도가 특혜를 받고 수입되었을 정도로 수혜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을 많

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4. 정책적 시사점

가. GSP 실시 검토

다음 장에서 이루어질 일반균형모형을 통한 경제적 분석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GSP제도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모형 분석 이외의 잣대를 가지고 논의해 보자.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은 OECD 회원국이면서 World Bank에 의해 고소득으로 분류된 국가 중 인구규모가 크면서도 GSP를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이다. 따라서 개도국에 대해 특혜관세를 확대할 경우 제일 먼저 거론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개도국에 대해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전 세계가 함께 발전해 나가자는 데 모든 국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앞서도 여러 번 언급하였듯이 WTO에서도 개도국 우대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GSP제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다. GSP 도입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 및 대외적인 압력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GSP를 도입할 이유는 없다. 다만, 연구를 통해 이에 대비할 필요성은 시기적으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국내적으로 우리나라의 GSP 도입시기는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 수준, 국내물가, 국제수지와 통화가치 등 국내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1인당 GDP 등 경제발전 수준, 관세율 수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김남두(1996)에서는 GSP를 도입한 국가들의 도입 당시 경제수준을 비교해 보고 있다. 본고에서도 우리나라 현재 경제수준을 이와 비교해 보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EU 국가가 1971년 GSP제도를 도입할 당시 1인당 GNP는 영국 2,554달러, 프랑스 3,113달러, 독일 3,574달러 등이었으며, 일본은 2,183달러였다. 한편 스위스 4,938달러

(1972년), 캐나다 6,842달러(1974년) 등은 EU 국가들보다 1인당 GNP가 높았고, 1976년에 GSP를 도입한 미국은 그 당시 1인당 GNP가 8,177달러였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GDP 수준은 전 세계 49위 수준으로 이들 국가보다 낮다.

또한 EU 국가들이 전 세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독일 10%, 영국 6.9% 등이었으며 일본 5.7%, 미국 13.9%, 캐나다 4.2% 등이었으나 우리나라는 2003년 기준 2.3% 수준으로 이들 국가보다 낮다²³⁾. 전 세계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영국 4%, 독일 6.2%, 일본 6.6%, 미국 26.3%, 캐나다 2.8%였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2004년 기준 전 세계 GDP 대비 1.66%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도 전 세계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4% 수준으로 약간 증가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수준은 GSP를 도입한 국가들의 도입당시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²⁴⁾.

23) 전 세계 수출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기준 2.6%이다.

24) 통계자료의 한계로 우리나라는 GDP 수치를, 다른 국가들은 GNP 수치를 사용한다.

<표 III-3> 주요국의 GSP 도입당시의 경제수준

(단위: 억달러, 달러, %)

국가	도입시기	GNP	1인당 GNP	세계수입 비중	세계GNP 비중
영국	1971년 7월	1,420	2,554	6.9	4.02
프랑스	1971년 7월	1,595	3,113	6.2	4.57
독일	1971년 7월	2,154	3,574	10.0	6.16
이탈리아	1971년 7월	1,109	2,054	4.7	3.38
일본	1971년 8월	2,307	2,183	5.7	6.62
미국	1976년 1월	17,828	8,177	13.9	26.30
캐나다	1974년 7월	1,532	6,842	4.2	2.77
노르웨이	1971년 10월	148	3,761	1.2	0.36
스위스	1972년 3월	316	4,938	2.1	0.76
한국	2004년 기준	6,801 ¹⁾	14,145 ¹⁾	2.3 ²⁾	1.66 ³⁾

주: 1) 1인당 GDP 수치임.

2) 2003년 기준임.

3) 세계 GDP 대비 비중임.

자료: 김남두(1996), World Bank, WTO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재작성.

현재 GSP를 도입한 국가들의 개도국 수입비중을 비교해 보자. 전체 수입에서 GSP 해당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비중은 국가마다 다르다. 일본은 GSP 혜택을 받은 수입비중이 43.1%로 매우 높았다. positive list로 품목을 한정하는 농산물의 경우 그 수입비중이 36.9%로 negative list를 사용하는 공산품의 44.1%에 비해 조금 낮았다. 호주도 GSP 혜택 수입비중이 36.2%로 높았다. 미국은 전체적으로 GSP 수입 비중이 13.9%였지만 농산물은 29.6%로 높았다. 미국은 전체적으로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비중이 30.5%를 차지하고 있어 GSP

비중이 일본에 비해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캐나다도 전체적으로 GSP 수입비중이 12.8%로 낮는데 그 이유는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비중이 67.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터키도 FTA로부터의 수입이 53.3%로 절반 이상이 되고 있다. 일본과 슬로바키아를 제외하고는 공산품에 비해 농산물의 수입비중이 높았다.

<표 III-4> 주요국의 GSP 수입비중

(단위: %)

국가	해당연도	전체	농산물	공산품
미국	2002년	13.9	29.6	13.1
일본	2002년	43.1	36.9	44.1
캐나다	2002년	12.8	16.1	12.6
호주	2001년	36.2	36.3	36.2
뉴질랜드	1999년	19.7	20.1	19.6
스위스	2002년	6.6	12.9	6.1
슬로바키아	2001년	21.1	14.1	21.5
헝가리	2001년	6.8	25.0	6.2
터키	2000년	0.2	0.9	0.1

주: EU는 GSP를 시행하고 있지만 WTO 자료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자료: WTO.

결과적으로 이들 국가를 볼 때 일본처럼 FTA 등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미미한 경우 GSP 혜택을 받은 수입비중이 약 40%에 육박하는 등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는 반면 미국, 캐나다 등은 GSP 수입비중이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 헝가리, 터키는 이보다 낮으면서 많은 부분이 FTA를 통해 수입되고 있었다. GSP는 일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양국 혹은 다국 간의 FTA는 회원국 간의 동등한 시장개방을 통해 그만큼 국민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FTA를 통

한 교역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FTA를 체결한 후에 GSP를 도입할 경우 대외적인 지위도 증가시키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적 영향은 감소시킬 수 있겠다.

또한 이번 DDA 협상에 의해 우리나라 관세율이 낮아진 이후 GSP 제도를 실시할 경우 GSP 특혜관세율과 일반실행세율의 차이가 줄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감소할 수 있다. 이는 GSP가 개도국 상품에 한정되지만 전체적으로 관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국제수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관세율이 낮아져 국내시장가격이 전체적으로 낮아질 수 있어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 다음 장에서 이루어질 모형을 통한 분석에서도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GSP제도에 대한 도입 논의는 아직 국제적인 추세도 아니며 대외적인 압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2002년까지 일본으로부터 GSP 혜택을 받은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GSP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GSP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최우선 순위로 거론될 위치에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저자들의 소견으로는 이번 DDA 협상으로 우리나라 관세율이 낮아지고 이를 우리나라 경제에서 소화하는 한편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FTA를 체결한 후에 GSP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일정 수준의 FTA 체결이 이루어진 후 GSP를 실시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적 지위도 증가시키면서 GSP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FTA가 진행된 이후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나. GSP 실시방안

우리나라가 구체적으로 GSP를 전면 실시한다면 우선, 특혜관세를 공여할 국가범위와 품목, 그리고 GSP제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국내산업 피해 예방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GSP 수혜국

앞서 언급하였듯이 GSP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해 특혜관세를 공여하는 것으로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제도처럼 UN이 정한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만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GSP 공여국은 자신이 특혜를 공여할 대상 국가를 어느 정도 임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GSP 공여국 수는 미국 121개국, 일본 149개국, EU 187개국 등으로 이들 주요국만 보아도 편차가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WTO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준이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GSP 수혜국 선정기준은 경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정치, 노동, 환경 등 비경제적인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GSP 수혜국을 선정할 때는 어느 정도 유동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떤 품목에 대해 어느 정도의 특혜관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수혜국 범위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GSP 수혜국을 검토할 때 가장 고민해야 할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이면서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이다. 예를 들어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중국을 비롯해서, 인도, 브라질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에 GSP 혜택을 줄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물론 우리나라가 GSP를 도입하면 중국을 GSP 수혜국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모형을 통한 경제적 효과분석에서도 후술하겠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는 다른 국가들

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대체효과도 유발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까지도 고려한다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GSP 수혜국에 포함될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와 함께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이전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노동집약적 혹은 중급기술 공장의 해외이전이 상당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도 필요하다. 중국과 인도는 우리나라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방콕협정) 가입국으로 일부 품목에 대해 상호간 관세인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GSP 등 일방적인 관세인하 혜택보다는 방콕협정과 더 나아가 FTA를 통해 상호 혜택을 보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중국에 대해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얻는 후생의 증가도 있지만, 중국도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를 함께 낮춘다면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로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후생증가도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예측은 후술할 경제적 분석에서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중국 간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공산품 위주로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민간 후생도 또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도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방콕협정) 가입국으로 우선적으로 방콕협정을 통한 상호간 관세인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브라질은 중국과 인도에 비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덜한 것으로 추측된다.

경제적 분석에서도 자세히 후술하겠지만, 인도와 브라질을 특혜대상국에 포함하는가의 여부에 의해 비곡류 농산물의 수입증가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중국의 경우에는 섬유류 수입증가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섬유류 수입의 경우 중국 포함 여부에 따라 수입증가율 차이가 약 4배 가까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빈개도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도 인도, 브라질 및 중국에 특혜관세를 시행하느냐 여부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예컨대 섬유류

수출의 경우 아시아 최빈국과 아프리카 최빈국의 경우 중국에 대한 특혜관세가 없을 때에는 각각 30% 및 20%씩 증가하지만, 중국에 대한 특혜관세가 있을 경우 각각 12% 및 4% 증가에 그친다. 따라서 중국을 GSP 대상국에 포함시킬 경우 우리나라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효과가 많이 상쇄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중국, 인도 등이 포함된 상황에서 기타 대부분의 개도국에 GSP를 제공할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총수입은 약간 증가할 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아 중국에 대한 GSP 공여가 차지하는 의미가 큼을 알 수 있었다.

2) GSP 수혜품목

GSP 수혜국 범위를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혜품목 또한 GSP 공여국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 수혜국 범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품목에 대해 어느 정도의 특혜세율을 부여하는지는 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우선 일본이 실행하고 있듯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특혜품목과 특혜세율, 쿼터 등을 명시하는 positive 방식을 채택하고 공산품에 대해서는 특혜품목에서 제외되는 품목만을 명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특혜관세를 제공하는 negative 방식 채택을 고려할 수 있겠다. 이 방법은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도 제안한 내용과 일치한다.

이런 기본구조 아래 품목별로 민감한 정도에 따라 그룹을 구분하여 상이한 특혜세율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품목을 몇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그룹별로 다른 특혜관세를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공산품도 예외품목을 제외하고 모든 품목이 GSP 대상이 되지만 모든 품목에 무세 등 일률적인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품목군별로 다른 수준의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혜세율을 정하는 방법도 다른 국가들의 예에서 보듯이 무세 혹은 현재 MFN 관세율에서 일정 퍼센트 포인트 관세인하 혹은

일정한 비율로 관세를 인하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또 하나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특혜 공여국은 정해진 수량 또는 액수까지는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MFN 세율을 부과한다. 이때 수량 기준은 전년도의 수입액이나 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일본은 농산물은 물론이고 일부 공산품에 대해서도 수량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처럼 한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정해진 쿼터를 상회하는 경우에 쿼터를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 대상에서 제외할 뿐만 아니라, 그 이듬해부터는 그 국가의 해당 품목을 특혜수혜 대상에서 졸업시키는 규정을 두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장접근 물량을 설정하여 이런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품목별로 혹은 산업별로 그룹을 설정하고 어떤 특혜세율을 적용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나 현재 GSP 전면 실시를 처음으로 검토하는 단계에서 수혜국 범위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제시하기에는 연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또 다른 연구에서 수행될 과제로 생각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후술하겠지만, 모든 분석대상 국가들의 산업을 15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전 품목 무세화, 공산품만 무세화, 그리고 국내에서 민감한 산업인 섬유와 농산물을 중심으로 무세화 제외 혹은 50% 관세인하 등을 중심으로 한 품목별 시나리오를 GSP 수혜국을 달리하는 국가 시나리오와 조합하여 GSP 공여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GSP 도입에 따른 피해 예방대책

일반적으로 GSP 공여국이 특혜를 공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는 우선 국내 산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특혜관세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또는 폐지하는 일반보호규정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 관세법에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관세법 77조에 의하면 특정한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물품과 그 물품의 원산지인 국가를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산업에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국의 소득수준, 우리나라의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해당물품의 국제경쟁력 정도 등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도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도 법에 명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GSP를 실시할 경우 특혜 대상국의 경제가 발전하면 특혜 대상국으로부터 졸업시키는 졸업규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졸업규정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공통점을 찾아보면, 우선은 World Bank 등의 국제기준에 의해 고소득 국가로 분류되거나 혹은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해당 국가 자체를 GSP 대상에서 졸업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다. EU에서는 이에 덧붙여 해당 국가의 수출액 등을 반영하여 자체적인 개발지수를 만들어 그 기준에 따라 졸업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즉, 해당 국가를 GSP 혜택에서 제외시키는 졸업기준은 누구나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 설정되면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국가의 예에서 보듯이 해당 국가의 졸업규정과 함께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제외시키는 방법도 유용하다. 이는 해당 국가 자체를 제외시킬 수 없더라도 우리나라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견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규제방안이다. 일반적으

로 해당 국가의 수입액이 자국 전체 수입의 일정부분을 초과하거나 혹은 수입규모가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 품목의 특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준은 대부분 국가에서 25~50%를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를 실시한다면 시행초기이므로 가장 보수적으로 25% 수준 내외로 설정하고 향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처음부터 높은 수준을 제시할 경우 향후 이를 다시 낮추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처럼 “일본 정부가 어떤 상황에서도 특혜관세를 유예할 권리를 갖는다”고 폭넓게 정의하여 예상되는 모든 피해에 대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GSP 규정이 GSP 공여국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보호규정을 아주 폭넓게 정의한 사례로, 일본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를 명시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만약 GSP 도입에 대해 WTO 논의가 있을 경우 우리나라는 우선 개도국마다 경제수준이 다름을 강조하여 개도국 분류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농산물, 환경 등의 분야에서는 개도국이기 때문에 동일한 개도국에 대해 GSP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WTO에서 제시하는 최빈개도국에 대해서 특혜를 확대할 것임을 강조하고 한편으로는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개도국에 대해 실질적인 원조를 증가시킬 것임을 역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빈개도국을 비롯해 개도국에 대해 특혜제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이를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우선 예를 들어 농산물 분야와 비농산물 분야가 분리되어 협상이 진행되듯이 개도국 특별우대도 다른 분야와 분리되어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개

도국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다고 해서 다른 분야에서 우리의 협상력이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농산물 분야에서 최빈개도국 등에 특혜를 늘릴 경우 이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얻으려는 우리나라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최빈개도국과 개도국에 대해 특혜를 확대할 경우 보다 많은 특혜를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이 전체 최빈개도국 등에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에는 작은 것들이 모여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개방보다는 여타 국제기구를 통해 최빈개도국과 개도국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 예를 들면 개도국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기술지도 등을 통해 해당 개도국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개도국 경제개발을 위해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²⁵⁾ 규모는 2004년 4.2억달러이다. 이는 GNI 대비 약 0.06%로 OECD/DAC²⁶⁾ 회원평균 0.2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러한 ODA 지원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이 최빈개도국 등에 대해 시장개방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특혜관세 제공과 직접적인 원조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현재의 국제적 흐름으로는 이 둘을 모두 소홀하게 다룰 수 없음은 분명한 것 같다.

25) 선진국 정부에 의한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관에의 원조로 금리가 높은 민간원조보다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받는 쪽에서 환영하고 증여나 차관, 기술원조 등의 형태를 취한다. 정부개발원조의 실시에는 국제연합헌장의 모든 원칙(특히 주권, 평등 및 내정불간섭) 및 이하 모든 점을 상대국의 요청, 경제사회 상황, 양국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실시하고 있다.

26) 현재 우리나라는 OECD/DAC 회원은 아니다.

<표 III-5>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실적

(단위: 백만달러, %)

연도	공적개발원조(ODA)			ODA/GNI
	ODA 총계	양자간 협력	다자간 협력	
1993	111.6	60.1	51.4	0.03
1994	140.2	60.1	80.2	0.04
1995	116.0	71.5	44.5	0.03
1996	159.2	123.3	35.8	0.03
1997	185.6	111.3	74.3	0.04
1998	182.7	124.7	58.0	0.06
1999	317.5	131.4	186.1	0.08
2000	212.1	131.2	80.9	0.05
2001	264.7	171.6	93.1	0.06
2002	278.8	206.8	72.0	0.06
2003	365.9	245.2	120.7	0.06
2004	423.3	330.7	92.6	0.06

자료: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IV. 경제적 효과분석

이 장에서는 특혜관세제도를 시행했을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일반 균형계산(CGE)모형을 이용하여 전망한다. 관세체계의 변화는 경제주체들의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상대가격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CGE모형은 이와 같은 변화가 자원배분과 사회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주체들의 최적화 행동과 시장청산 조건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보통 조세와 같은 정책변화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예측함에 있어서는 계량경제학적으로 추정된 수요·공급 함수에 입각한 부분균형 분석모형이나 계량경제학적인 연립방정식 체계의 추정 및 그에 입각한 정책효과 예측도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 고려하는 특혜관세 부여의 효과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CGE모형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 부분에 대한 과세와 달리 관세 체계의 변화는 상대가격체계 전반에 동시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여러 상품시장 및 요소시장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혜관세의 부여는 아래의 분석에서 보게 될 것과 같이, 대상국가, 대상품목 등에 대하여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고 이것은 계량경제학적 모형의 맥락에서는 매우 많은 모수들의 추정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다국가-다품목에 대하여 그러한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많은 관측치의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경제주체들의 가격에 대한 반응정도를 나타내는 탄력성 모수에 대한 적절한 가정 위에서 경제주체들의 최적화 행태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는 CGE모형은 그 차선택이 될 수 있다. 셋째, 정책적 판단을 위해 특혜관세의 다양한 조합에 따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특혜부여의 대상이 되거나, 제외대상이 되

는 국가들의 후생수준을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경제주체의 최적화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CGE는 그 속성상 그러한 비교를 용이하게 한다.

기존 연구에서 CGE와 GTAP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한 연구는 무수히 많지만, GSP 등 일방적인 특혜관세를 도입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이는 아마도 미국, 일본, 유럽(EU) 등은 1970년대에 이미 GSP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1. 모형구성

가. 모형과 자료

이 장의 분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자간 무역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널리 이용되고 있는 GTAP의 데이터베이스와 GTAP 모형을 이용하되, 모형계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탄력성계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국내의 연구결과를 반영한다.

우선 모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ertel and Tsigas(1997)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모형의 개괄적 구조만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표 IV-1>은 사회계정행렬로 McDonald and Thierfelder(2004)가 제시한 바와 같다. 수입재의 총액규모는 수출국에서의 수출가격 + 수입마진 + 관세로 이루어지고 이 액수는 산업의 중간재, 민간의 소비, 정부의 소비, 투자로 분할된다. 국산재의 총공급액은 국내 산업의 총공급액에 수출세를 더한 것과 같으며 이것은 중간투입, 민간소비, 정부소비, 투자, 수출마진 및 수출액으로 분할된다. 각 산업은 수입재, 국산재가 결합된 중간투입과 비숙련노동, 숙련노동, 자본으로 구성된 생산요소를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세제에 따라 투입된 재

화에 대하여 매상세를 지불하고, 고용한 요소에 대하여 요소세를, 최종 생산물 가액의 일정비율을 생산세로 지불한다. 대표가계는 산업으로부터의 요소소득과 앞에서 언급된 각종 세금을 수입으로 하여 민간지출, 정부지출, 그리고 저축으로 지출한다. 민간가계는 수입재와 국산재를 소비하고 관련된 매상세를 지불한다. 정부는 역시 수입재와 국산재를 소비하고 관련된 매상세를 지불한다. 투자의 재원은 대표가계의 저축과 자본순유입액의 합계로 정해지는데 이때 자본순유입액은 '(수입마진+수입액)-(수출마진+수출액)'으로 주어진다.

다음으로 이 모형에 등장하는 경제주체들의 제약과 목적함수들을 간단히 설명한다. GTAP 모형 및 데이터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각 국가별로 '대표적 가계'라는 가상단위를 상정하여 이 가계가 민간가계의 요소소득 및 정부의 세수를 수취하여 그 총액을 예산제약으로 하여 민간소비, 정부소비, 투자의 세 가지 지출을 결정하는 것으로 상정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정부와 민간의 개별적 예산제약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수많은 국가에 대하여 정부 재정상의 정보를 정확히 수집하기 어렵다는 데에 기인한다²⁷⁾. 반면, 이러한 단순화를 통하여 이 대표적 가계의 효용수준을 이용하여 정책 변화로 인한 후생수준을 일의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편리한 점도 있다. 대표적 가계가 민간소비, 정부소비, 투자 간에 지출을 배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모형화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항상 기준연도에 관측된 비율대로 배분하는 것으로 가정한다²⁸⁾.

다음으로 민간가계의 효용함수는 각 재화종류별 하부효용을 콥-더글러스 함수 형태로 결합한 것으로 가정한다. 이때 각 재화의 종류별 하부효용은 국산재와 수입재를 불변대체탄력성(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CES) 함수로 결합한 것으로 정의된다. 정부 역시 같은

27) Hertel and Tsigas(1997).

28) 이것은 대표적 가계가 민간효용, 정부효용, 실질투자수준을 변수로 하는 콥-더글러스 효용함수를 가진다고 가정하는 것과 같다.

구조의 효용함수를 갖는 것으로 가정된다. 기업은 이윤최대화를 추구하며, 중간투입과 본원투입(비숙련노동, 숙련노동, 자본)을 결합한 생산함수를 가지며, 이때 중간투입은 역시 재화별로 국산재와 수입재를 CES함수로 결합한 것으로 가정된다. 한편 본원투입은 콥-더글러스 함수형태로 결합되며, 이렇게 결합된 총본원투입과 중간투입들은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로 결합되어 재화를 생산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한편, CGE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준연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계정행렬의 각 셀의 수치를 정하여야 하는데 아래의 <표 IV-1>은 이 수치들을 GTAP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행렬에서 얻었는지를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전 세계를 16개 지역, 산업을 15개로 분류하였다. 연구에 이용된 GTAP 데이터베이스는 87개국, 57개 산업으로 분류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계산부담을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하되, 이 연구에서 고려하는 여러 정책시나리오를 반영할 수 있도록 원 데이터를 집계한 것이다. GTAP 데이터베이스상의 국가와 산업을 이 연구에서 어떻게 집계하였는지를 아래의 <표 IV-2>와 <표 IV-3>에 보였다²⁹⁾.

지역구분을 보면, 우선 우리나라와 EU, NAFTA, 일본 등 선진 거대경제권을 각각 하나의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최빈국 그룹은 지리적 요소를 고려하여 아시아권과 아프리카권으로 구분하여 두 개의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개도국에 대해서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국제적인 국가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 따라서 개도국을 구분하기 위해 GSTP 회원국을 중심으로 구분하였다³⁰⁾. 최빈개도국에 속하지 않는

29) GTAP 데이터베이스에는 87개국 혹은 지역이 수록되어 있다. 즉,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정보가 개별 국가별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들에 대해서는 개별 국가 자료가 제공되지만, 규모가 아주 작은 국가들은 지역으로 묶어서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예를 들어 Rest of Sub-Saharan Africa, Rest of North Africa 등으로 그룹지어져 있다. 따라서 최빈개도국 등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데는 자료 한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최빈개도국에 속하는 국가들에 대해 최대한 근접한 범위로 국가들을 구분하였다.

GSTP 회원국을 중심으로 역시 지리적 요소를 고려하여 아시아와 중남미 국가로 구분하였다. 다만, GSTP 회원국 중에서 인도, 브라질 등은 경제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훨씬 크므로 별도의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이 밖에 경제적 효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중국은 개별 국가로 분류하였다. 끝으로 나머지 국가들은 크게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및 대양주의 4개 지역별로 집계하였다.

산업의 분류는 한국은행 투입산출표의 28개 부문의 대분류를 참고로 하되 이 연구의 관심에 맞추어 조정하였다. 최빈국 및 GSTP 국가의 중요 관심품목이라고 판단되는 1차 산업을 비교적 자세히 분류하여 농산물을 곡류와 비곡류로 구분하였고, 수산물, 음식료품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광산품에서 원유와 석유제품을 별도의 산업으로 구분하였다. 제조업은 목재, 화학, 금속제품, 기타 금속제품, 전기 및 기계, 수송장비로 구분하였다. 끝으로 서비스업은 크게 통합하여 유형물과 관련성이 높은 서비스 산업군(서비스1)과 그렇지 않은 서비스 산업군(서비스2)으로 크게 분류하였다.

30) GSTP 회원국 명단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표 IV-1> 사회계정행렬

구분	수입재	국산재	산업	요소	대표 가계	민간 가계	교역세	수입 매상세	국산 매상세	요소세	생산세	정부
수입재			VIFM			VIPM						VIGM
국산재			VDFM			VDPM						VDGM
산업		VOM										
요소			VFM									
대표가계				EVFA			TMTAX +TETAX	ISTAX	DSTAX	FTAX	PTAX	
민간가계					YH							
교역세	VIMS- VIWS	VXWD- VXMD										
수입매상세			VIFA- VIFM			VIPA- VIPM						VIGA- VIGM
국산매상세			VDFA- VDFM			VDPA- VDPM						VDGA- VDGM
요소세			EVFA -VFM									
생산세			PTAX									
정부					YG							
자본					SAVE							
수입마진	VTWR											
수출마진												
외국	VIWS- VTWR											

자료: McDonald and Thierfelder(2004). 단, 위 표의 음영처리된 부분은 원 출처에서는 산업과 자본열별로 별도의 행렬이름이 붙어 있으나, GTAP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두 열의 자료 모두가 VIFM과 VDFM의 두 행렬에서 공통으로 주어짐.

<표 IV-2> 모형에 이용된 지역분류

국가	비고
한국	
NAFTA	
EU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산유국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최빈국(아시아)	기타 대양주, 기타 동남아, 방글라데시, 기타 남아시아
최빈국(아프리카)	기타 남아프리카 국가, 말라위, 모잠비크, 탄자니아, 짐바브웨, 마다가스카르, 우간다, 기타 사하라 이남, 기타 SADC
GSTP(아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 스리랑카
GSTP(아프리카)	콜롬비아, 페루,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칠레
대양주	호주, 뉴질랜드
기타국가들1	기타 동유럽, 러시아, 터키 등
기타국가들2	홍콩, 타이완, 기타 동아시아
기타국가들3	기타 아프리카

<표 IV-3> 모형에 이용된 산업분류

산업	비고
곡류	벼, 밀, 잡곡
비곡류 농산물	채소 및 과일, 유지작물, 사탕수수 및 사탕무, 섬유작물, 기타 작물, 가축, 기타 축산, 낙농, 양모 및 양잠
수산물	수산물
음식료품	육류, 식물성 유지, 낙농품, 가공쌀, 설탕, 기타 식품, 음료 및 담배
광산품	임업, 석탄
석유	원유, 석유제품 및 석탄제품
섬유 및 가죽	섬유, 의류, 가죽
목재, 종이, 인쇄	목재 제품, 종이 제품 및 인쇄
화학제품	화학제품
기타 비금속제품	기타 광물제품
금속제품	비철금속, 기타 철제품, 철제품
전기 및 기계	전자제품, 기계 및 장비, 기타 제조업품
수송장비	자동차 및 부품, 기타 수송장비
서비스1	전기, 가스 생산 및 배급, 수도, 건설, 유통, 수상교통, 항공교통, 기타 교통, 통신
서비스2	금융, 보험, 기업 서비스, 오락 및 기타 서비스, 행정, 주거

나. 원산지별 관세율 및 탄력성

특혜관세제도는 특정한 국가군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특혜적인 관세율을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특혜의 효과는 특혜를 주기 이전에 실행되고 있던 관세율 수준의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에 이용된 GTAP 데이터베이스에 따른 기준연도의 우리나라 원산지별 관세율은 <표 IV-4>와 같다. 특기할 점은 농산물(곡류, 비곡류, 음식료품)

에 속하지 않는 품목군의 경우 관세율의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고 원산지에 따른 편차도 크지 않은 반면, 농산물에 속하는 제품군의 경우에는 관세율의 수준이 다른 품목군에 비하여 높을 뿐 아니라 원산지에 따른 격차도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농산물 실행관세율 수준이 높다는 점, 그리고 각국에 따라서 수입되는 품목이 특화되어 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IV-4> 원산지별 관세율

구분	NAFTA	EU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산유국	최빈국 (아시아)	최빈국 (아프리카)	GSTP (아시아)	GSTP (아프리카)
곡류	230.67	93.08	335.14	421.54	3.86	438.27		4.72		829.29	438.14
비곡류 농산물	83.49	12.09	5.51	148.83	350.41	249.22	27.05	274.22	336.53	9.53	20.05
수산물	19.27	17.32	16.90	15.42	14.62	10.00	19.91	16.19	9.18	18.21	9.00
음식료품	23.34	30.80	27.14	31.70	18.35	42.16	17.00	36.99	8.90	20.31	8.83
광산물	1.37	2.83	2.62	1.18	1.20	1.05	1.00	0.99	0.59	1.05	1.01
석유	5.58	5.23	5.81	5.84	5.91	5.09	5.06	4.96	5.00	5.21	4.83
섬유 및 가죽	7.71	9.32	8.79	10.67	7.75	5.22	5.81	7.56	5.48	9.15	5.95
목재, 종이, 인쇄	2.36	4.80	4.46	5.61	4.71	2.21	4.23	4.66	3.23	5.00	2.38
화학	6.59	7.22	6.88	7.15	8.35	7.35	6.00	5.28	7.82	5.19	4.67
기타 비금속제품	7.81	7.85	7.71	7.41	7.92	7.71	7.82	7.77	6.91	7.96	7.46
금속제품	3.84	4.50	3.86	4.61	3.85	2.28	3.75	3.17	2.73	3.85	4.33
전기 및 기계	3.00	4.98	4.39	4.34	5.61	5.99	2.54	5.53	5.87	1.53	6.26
수송장비	1.83	5.23	7.40	6.87	7.90	7.56	0.23	0.36	0.60	4.31	7.31

다음으로 계산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모형에 이용되는 각종 탄력성들이 있다. 탄력성은 생산요소 간의 대체탄력성, 소비에 있어서 국산-수입재 간의 대체탄력성(아밍턴 탄력성), 수입에 있어서 수출국 간의 대체탄력성이 있다. 아래의 표는 이 연구에 상용된 탄력성을 보여준다. 각 탄력성들은 기본적으로 GTAP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수치들을 이용하였다. 단, 한국의 요소 간 대체탄력성은 정재호, 성명재, 이명현(2003)이 추정한 수치를 이용하였다³¹⁾. 또한 한국의 국산-수입재 간 대체탄력성은 문석웅(1998)이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로 구분하여 추정한 것을 2000년 산업연관표 기준 산업별 용도별 지출액수로 가중평균하여 사용하였다.

<표 IV-5> 탄력성 모수

산 업	요소 간 대체	요소 간 대체(한국)	국산- 수입재 간	국산-수입재 간(한국)	수출 국 간
곡류	0.24	0.17	3.52	0.38	5.96
비곡류 농산물	0.30	0.17	2.54	0.38	5.21
수산물	0.20	0.17	1.25	0.38	2.50
음식료품	1.12	0.05	2.36	0.27	4.83
광산품	0.20	1.55	5.45	0.05	17.72
석유	0.38	1.55	2.89	0.05	7.55
섬유 및 가죽	1.26	0.16	3.78	3.60	7.58
목재, 종이, 인쇄	1.26	0.07	3.10	0.05	6.32
화학	1.26	0.09	3.30	0.95	6.60
기타 비금속제품	1.26	0.04	2.90	0.50	5.80
금속제품	1.26	0.20	3.56	1.00	7.26
전기 및 기계	1.26	0.00	4.13	0.11	8.32
수송장비	1.26	0.11	3.15	1.71	6.43
서비스1	1.55	0.50	1.98	1.94	3.90
서비스2	1.26	1.00	1.90	1.94	3.80

31) 이 대체탄력성은 3개 요소(비숙련노동, 숙련노동, 자본) 사이의 대체탄력성이다. 원래 정재호 등(2003)의 추정치는 2요소 모형에 대하여 추정된 것이지만, 3요소 모형에 맞춘 추정치가 없으므로 이를 이용하였다.

2. 정책 시나리오별 분석

가. 시나리오

특혜관세의 시행 시나리오는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특혜관세율을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매우 다양해진다. 여기에서는 대상 국가와 대상 품목에 대한 고려방식을 다음과 같이 각각 5가지로 반영하였다.

우리나라가 특혜관세를 제공할 국가 범위로는 우선 최빈개도국만을 대상(시나리오 A)으로 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가 가장 최소 범위로 특혜관세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추가적인 시나리오들은 제공 대상 국가 범위를 더욱 넓힌 것으로 GSTP 국가들에 특혜관세를 제공하되 인도, 브라질, 중국을 제외한 경우(시나리오 B), 인도와 브라질은 포함하면서 중국만을 제외한 경우(시나리오 C), 중국까지 포함한 경우(시나리오 D) 등이다. 그리고 가장 넓은 범위는 최빈개도국은 물론 GSTP 회원국, 중국 등 대부분의 개도국을 포함하는 시나리오(시나리오 E)를 고려하였다. 시나리오 E에서 제외되는 국가들은 EU, NAFTA,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일부 산유국 등이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개도국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 조합이 나올 수 있고, 물론 더 많은 국가를 개도국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본 고의 경제적 분석에서는 이들 5가지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특혜관세를 제공할 품목을 고려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어느 경우든 곡물은 제외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것은 곡물에 포함된 쌀이 농가 소득에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현재 진행중인 DDA 협상에 서나 여러 나라와의 FTA 논의에서 모두 예외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³²⁾.

32) 따라서 이하에서 ‘전 품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쌀을 포함하는 곡류는 제외된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품목별 특혜관세 제공의 구체적 시나리오는 다음의 5가지를 고려한다. 우리나라가 특혜관세를 제공할 품목 범위로는 가장 넓은 범위인 전 품목에 대해 무세화하는 방안(시나리오 1)을 생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농산물을 제외한 공산품만 무세화하는 시나리오(시나리오 2), 석유만을 제외하는 시나리오(시나리오 3), 석유, 섬유, 농산물만을 제외하는 시나리오(시나리오 4)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특혜관세 수준을 고려하여 석유는 제외하면서, 섬유와 농산물에 대해서는 50% 세율을 인하해 주는 시나리오(시나리오 5)도 고려하였다.

<표 IV-6> 국가 및 상품범위 시나리오

국가 시나리오	
시나리오 A	최빈개도국
B	최빈개도국 + GSTP(아시아, 아프리카)
C	최빈개도국 + GSTP(아시아, 아프리카) + 인도, 브라질
D	최빈개도국 + GSTP(아시아, 아프리카) + 인도, 브라질 + 중국
E	최빈개도국 + GSTP(아시아, 아프리카) + 인도, 브라질 + 중국 + 기타 국가들
품목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전 품목 무세
2	공산품만 무세
3	석유만 제외하고 나머지 무세
4	석유, 섬유, 농산물만 제외하고 나머지 무세
5	석유 제외, 섬유, 농산물은 50% 감축, 나머지는 무세

주: 기타 국가들은 기타 국가들1, 기타 국가들2, 기타 국가들3을 의미함.

품목 시나리오에서 쌀이 포함되어 있는 곡물은 무세화에서 항상 제외됨.

품목 시나리오에서 석유에 대해서 특별취급을 고려하는 까닭은 석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세수가 매우 큰 금액이어서 석유의 무세화가 관세세수의 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등의 앞서 언급한 여러 이유들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섬유와 농산물에 대하여 특별취급을 고려하는 까닭은 이 두 산업이 현재 다른 산업에 비하여 강한 구조조정의 압력하에 있으므로 특혜관세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³³⁾.

이하의 분석에서는 관세율의 인하로 인한 세수의 감소를 보충하는 조치는 취해지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특혜관세의 도입은 대표적 가게의 소득을 일차적으로 감소시키지만,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대표적 가게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나.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제도 확대

1) 전 품목 무세화

<표 IV-7>은 최빈국(국가 시나리오 A)에 대해서 전 품목을 면세(품목 시나리오 1)해 주는 특혜관세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전망되는 경제적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민간의 후생수준은 우리나라의 경우 0.62%, 아시아의 최빈국은 0.06%, 아프리카의 최빈국은 0.22%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소비자물가는 우리나라의 경우 0.87% 하락하고, 아시아 최빈국은 0.37%, 아프리카 최빈국은 0.85%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여기서 소비자물가는 민간가계의 후생 한 단위를 달성

33) 이 밖에 더 세분화된 상품 조합 혹은 서로 상이한 관세인하율 조합을 통한 품목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처음 시도되는 경제적 분석이기에 포괄적인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향후 연구의 폭을 좁혀 보다 세분화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을 기준연도와 비교한 지수이다. 이 물가지수는 거시모형에서처럼 일국 내에서 두 시점의 물가수준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국가 간의 상대적 비교로서만 의미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³⁴⁾. 이로 볼 때 전 품목에 걸친 특혜관세의 시행은 대상국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후생수준 상승에 더 크게 기여하며 우리나라의 물가수준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의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가 제3국에 미치는 영향은 후생면에서나 물가면에서나 미미한 것으로 전망된다.

34) 개별 경제주체의 최적화 결과로 얻어진 왈라스적인 일반균형체계에서는 어떤 가격체계 p 가 해라면 모든 가격을 k 배 한 가격체계도 역시 해가 된다. 따라서 절대적인 '물가수준'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 가격의 해를 일의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뉴머리어를 정하거나 가격체계가 충족해야 하는 임의의 선형제약을 가하게 된다. 이 모형에서는 미국의 대표적 가계 수입(revenue) 및 지출액이 기준연도와 동일한 명목가격에 머문다는 제약을 부여하였다.

<표 IV-7> 국가별 후생 및 물가수준 변동

(단위: %)

국 가	민간후생수준	소비자물가
한국	0.62	-0.87
NAFTA	0.00	0.00
EU	0.00	0.03
일본	0.00	0.01
중국	0.01	0.00
인도	0.00	0.03
브라질	0.00	0.02
산유국	0.01	0.03
최빈국(아시아)	0.06	0.37
최빈국(아프리카)	0.22	0.85
GSTP(아시아)	0.00	0.00
GSTP(아프리카)	0.00	0.03
대양주	-0.01	-0.05
기타국가들1	0.01	0.03
기타국가들2	0.00	0.00
기타국가들3	0.01	0.05

특혜관세에 따라 각국의 대(對)한국 수출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시아 최빈개도국과 아프리카 최빈개도국 모두 비곡류 농산물의 수출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아시아 최빈개도국의 경우는 음식료품의 수출증가가 높았고, 섬유, 기타 비금속제품, 전자 및 기계류 등의 순서로 이들 산업의 수출은 5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 최빈개도국의 경우는 아시아 최빈개도국과는 조금 다르게 화학제품에서의 수출증가율이 50%를 넘었고, 그 다음으로 전자

및 기계류, 음식료품, 기타 비금속제품의 수출이 4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아시아 최빈개도국으로부터는 음식료품과 섬유류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프리카 최빈개도국으로부터는 화학제품과 전자 및 기계류의 수출증가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대부분의 품목은 모두 특혜관세 시행 이전에 관세율이 높은 품목들이다. 이 두 국가군에서 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대한국 수출은 거의 모든 경우 감소하며, 그 감소비율은 국가들 사이에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로 한국의 전반적인 수입수준은 비곡물 농산물에서 28%로 크게 증가하고 곡류, 음식료품, 수산물, 섬유류 등에서 1~2% 정도 증가하며, 그 외의 품목에서는 미소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 국별, 품목별 대(對)한국 수출의 변화율

(단위:%)

국가 산업	합계	NAFTA	EU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산유국	최빈국 (아시아)	최빈국 (아프리카)	GSTP (아시아)	GSP (아프리카)
곡류	2.76	2.77	2.62	2.71	2.80	2.63	2.66	2.58	0.27	-5.26	2.81	2.57
비곡류 농산물	28.22	-95.97	-95.98	-95.97	-95.97	-95.98	-95.98	-95.98	3728.22	8081.91	-95.97	-95.98
수산물	1.42	1.39	1.33	1.36	1.38	1.34	1.34	1.31	46.28	23.86	1.38	1.31
음식료품	1.30	0.41	0.27	0.38	0.42	0.29	0.32	0.24	350.39	44.73	0.40	0.25
광산품	-0.12	-0.43	-0.85	-0.66	-0.45	-0.81	-0.76	-0.96	10.77	-4.78	-0.47	-1.00
석유	0.39	-1.33	-1.47	-1.23	-1.18	-1.31	-1.42	-1.32	39.50	36.23	-1.21	-1.38
섬유 및 가죽	1.40	-1.66	-1.84	-1.72	-1.49	-1.84	-1.74	-1.72	66.75	38.78	-1.49	-1.87
목재, 종이, 인쇄	-0.10	-0.23	-0.37	-0.29	-0.21	-0.37	-0.33	-0.42	30.24	16.04	-0.26	-0.42
화학	0.49	0.50	0.34	0.43	0.52	0.34	0.37	0.32	38.18	57.84	0.49	0.31
기타 비금속제품	-0.22	-0.24	-0.38	-0.30	-0.24	-0.37	-0.36	-0.41	50.97	40.65	-0.28	-0.42
금속제품	-0.45	-0.46	-0.63	-0.54	-0.48	-0.63	-0.60	-0.68	21.70	14.78	-0.52	-0.69
전기 및 기계	-0.60	-0.56	-0.74	-0.65	-0.56	-0.75	-0.70	-0.81	51.23	49.82	-0.64	-0.81
수송장비	-0.25	-0.21	-0.35	-0.27	-0.22	-0.36	-0.31	-0.39	-0.12	-0.44	-0.25	-0.40
서비스1	-0.23	-0.13	-0.23	-0.18	-0.14	-0.23	-0.21	-0.27	-1.70	-3.36	-0.15	-0.27
서비스2	0.20	0.28	0.19	0.24	0.28	0.19	0.22	0.15	-1.22	-3.09	0.27	0.15

주: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시나리오가 적용된 부분이다.

2) 개별 품목별 시나리오 효과 비교

국가 시나리오 A에 대해서 앞에서 제시한 품목 시나리오 5가지를 몇 가지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비교한다.

우선 후생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석유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고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경우(시나리오 3)의 후생증가율이 0.62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할 경우(시나리오 1)의 후생증가율이 0.619%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³⁵⁾. 그리고 그 다음은 석유를 무세화에서 제외하고 섬유와 농산물의 관세를 50% 낮추고 나머지 품목을 무세화하는 경우(시나리오 5)에 0.17%의 후생증가가 나타났다. 석유만을 제외하는 경우(시나리오 3)와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는 경우(시나리오 1)에 비해 후생증가가 거의 차이 없게 나타난 것은 원유에 대한 관세철폐로 대표적 가격의 수입 중 일부인 관세수입이 감소하는 효과 및 관세철폐로 인한 수요증대로 인해 수입재화의 국제가격이 상승하는 교역조건 효과가 관세인하로 인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효과 못지않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 농산물의 관세를 인하하지 않는 시나리오 2와 시나리오 4의 경우는 후생에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할 정도이고 아주 미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 역시 관세세수의 감소와 교역조건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 특히 아시아 최빈국은 어떤 시나리오하에서도 후생증가율이 0.1%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게 미미하였다. 그 중에서도 우열을 따진다면 전면 무세화(시나리오 1), 석유 제외 전면 무세화(시나리오 3), 농산물 제외 전면 무세화(시나리오 2), 석유 제외, 농산물 및 섬유 부분감세 및 기타 품목 무세화(시나리오 5), 석유, 섬유, 농산물 제외 및 기타 품목 무세화(시나리오 4)의 순으로 후생이 증가한다. 한편, 아

35) 극히 미미한 차이(0.004%포인트)이지만 숫자상으로 시나리오 3의 후생증가율이 시나리오 1보다 높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프리카 최빈국은 아시아 최빈국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효용증가율을 보여서 전면 무세화(시나리오 1)의 경우 0.22%, 석유를 제외한 무세화(시나리오 3)의 효과가 0.20%였다. 농산물을 제외한 무세화(시나리오 2)와 석유 제외, 농산물 및 섬유 부분감세 및 기타 품목 무세화(시나리오 5), 석유, 섬유, 농산물 제외 및 기타 품목 무세화(시나리오 4)의 후생증가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상 후생측면에서의 효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통한 후생증대는 우리나라, 아프리카 최빈국, 아시아 최빈국의 순으로 크게 나타난다. 둘째, 농산물을 제외할 경우의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셋째, 최빈국의 경우는 전면개방이 석유를 예외로 한 경우보다 후생이 증대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거의 차이가 없다.

<표 IV-9> 시나리오별 후생변화

(단위:%)

품목 시나리오	1	2	3	4	5
한국	0.62	-0.01	0.62	-0.00	0.17
최빈국(아시아)	0.06	0.03	0.05	0.01	0.02
최빈국(아프리카)	0.22	0.03	0.20	0.00	0.02

다음으로 물가수준의 변화를 보면 특혜 대상국의 경우는 후생증가의 순서와 대체로 일치하는 순서로 물가가 다소 상승한다. 즉, 특혜 대상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증대를 통하여 국내물가가 약간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후생증가의 순서와 대체로 일치하는 순서로 물가가 하락한다.

<표 IV-10> 시나리오별 물가변화

(단위: %)

품목 시나리오	1	2	3	4	5
한국	-0.872	-0.006	-0.872	0.001	-0.039
최빈국(아시아)	0.373	0.111	0.352	0.022	0.105
최빈국(아프리카)	0.853	0.050	0.809	0.005	0.093

다음으로 특혜대상국의 대한국 수출변화를 보면, 무세화의 예외가 되는 품목에서는 미세하게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무세화 대상이 되는 품목의 수출증가율은 다른 품목의 개방여부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시나리오 5의 경우에는 비곡류 농산물과 섬유에서 50%의 관세인하가 가정되었는데, 이 경우 수출증가의 비율은 절대적으로 여전히 높지만 완전 무세화의 경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IV-11> 아시아 최빈국의 대한민국 수출 변화

(단위: %)

품목 시나리오	1	2	3	4	5
곡류	0.27	-0.72	0.42	-0.14	-0.33
비곡류 농산물	3728.22	-0.59	3725.64	-0.12	735.61
수산물	46.28	45.09	46.37	45.40	45.46
음식료품	350.39	-0.54	350.88	-0.10	100.21
광산품	10.77	16.18	11.25	18.00	16.25
석유	39.50	40.77	-1.40	-0.12	-0.51
섬유 및 가죽	66.75	68.75	66.98	-0.14	29.15
목재, 종이, 인쇄	30.24	32.26	30.40	32.92	32.32
화학	38.18	39.54	38.35	40.22	39.59
기타 비금속제품	50.97	53.32	51.15	54.03	53.38
금속제품	21.70	24.39	21.89	25.14	24.32
전기 및 기계	51.23	55.14	51.51	56.22	55.12
수송장비	-0.12	1.65	0.01	2.18	1.71
서비스1	-1.70	-0.47	-1.60	-0.09	-0.30
서비스2	-1.22	-0.46	-1.14	-0.09	-0.28

주: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시나리오가 적용된 부분이다.

<표 IV-12> 아프리카 최빈국의 대한민국 수출 변화

(단위: %)

품목 시나리오	1	2	3	4	5
곡류	-5.26	-0.34	-4.99	-0.04	-0.54
비곡류 농산물	8081.91	-0.26	8085.82	-0.03	878.72
수산물	23.86	24.29	24.05	24.49	24.53
음식료품	44.73	-0.27	45.07	-0.03	21.61
광산품	-4.78	9.08	-3.76	10.23	8.59
석유	36.23	41.25	-3.64	-0.04	-0.44
섬유 및 가죽	38.78	46.10	39.22	-0.03	20.27
목재, 종이, 인쇄	16.04	21.61	16.37	21.96	21.36
화학	57.84	63.73	58.30	64.20	63.48
기타 비금속제품	40.65	46.75	41.08	47.21	46.56
금속제품	14.78	21.03	15.17	21.44	20.68
전기 및 기계	49.82	60.03	50.40	60.67	59.49
수송장비	-0.44	3.63	-0.22	3.86	3.45
서비스1	-3.36	-0.23	-3.17	-0.02	-0.22
서비스2	-3.09	-0.22	-2.90	-0.02	-0.23

주: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시나리오가 적용된 부분이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품목별 수입총량 변화를 보면 비곡류 농산물 무세화가 이루어지는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3에서 비곡류 농산물의 수입증가가 28% 수준으로 나타나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 밖에 해당 품목의 무세화가 있을 때 수입량이 1% 이상 증가하는 품목으로 음식료품, 수산물, 섬유를 들 수 있다. 그 외의 품목들은 수입증감의 폭이 크지 않으며 해당 품목의 무세화가 이루어지더라도 반드시 수입총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전망되었다. 요컨대, 다른 품목의 경우 특혜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미미하거나 무역대체효과만이 나타나는 반면, 비곡류 농산물에서는 상당한 무역창출효과가 나타난다.

<표 IV-13> 우리나라의 수입총량 변화

(단위: %)

품목 시나리오	1	2	3	4	5
곡류	2.76	-0.01	2.76	0.00	0.35
비곡류 농산물	28.22	0.00	28.24	0.00	2.03
수산물	1.42	0.00	1.42	0.01	0.23
음식료품	1.30	-0.01	1.30	0.00	0.23
광산품	-0.12	0.04	-0.16	0.00	-0.03
석유	0.39	0.27	0.13	0.00	0.00
섬유 및 가죽	1.40	0.97	1.40	0.00	0.50
목재, 종이, 인쇄	-0.10	0.00	-0.10	0.00	0.01
화학	0.49	0.03	0.48	0.01	0.01
기타 비금속제품	-0.22	0.00	-0.22	0.01	-0.01
금속제품	-0.45	0.01	-0.45	0.01	-0.10
전기 및 기계	-0.60	-0.01	-0.59	0.00	-0.09
수송장비	-0.25	0.00	-0.25	0.01	0.02
서비스1	-0.23	-0.01	-0.22	0.00	0.12
서비스2	0.20	0.01	0.19	0.00	0.13

주: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시나리오가 적용된 부분이다.

다. GSP 실시

1) 시나리오(시나리오 5) 적용

여기서는 앞에서 설명한 품목 시나리오 5가지 중에서 시나리오 5, 즉 농산물, 섬유의 관세를 50% 삭감하고 기타 품목을 무세화하는 시나리오에 대해 5가지의 국가 시나리오와 결합하여 얻은 결과를 제시한다. 품목 시나리오 중에서 이 다섯 번째 시나리오를 대표적으로 고려하는 까닭은 우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수상의 고려로 석유를 제외

하는 것이 현실성이 높다는 점 때문이다(이 경우 시나리오 3, 4, 5가 대상이 된다). 또한, 농산물을 완전히 제외하는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최빈국을 상대로 할 경우 우리나라의 후생증대를 가져오지 못하므로 농산물에 대해서도 관세를 인하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하되, 완전히 무세화하는 것보다는 50% 정도의 인하를 고려하는 것이 현실성이 높을 수 있다는 고려 때문이다. 섬유의 경우도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이유로 인해 완전 무세화보다는 50%가 현실성이 높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 GSP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도 일방적인 특혜관세를 부여하기 때문에 자국에 불리한 농산물 혹은 섬유에 대해서는 제외하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인하된 세율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선, 후생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후생은 최빈개도국에 대해 특혜를 부여한 경우(시나리오 A) 0.17% 증가하고, 최빈개도국에 인도, 브라질, 중국을 제외한 GSTP 국가들에 특혜관세를 부여한 경우(시나리오 B)에는 그보다 적은 0.14% 증가하며, 여기에 인도와 브라질만을 추가하고 중국을 제외한 경우(시나리오 C)에는 0.25% 증가한다. 더 국가범위를 넓혀 중국까지도 포함한 경우(시나리오 D)에 후생증가율이 가장 커서 0.33%에 이르며, 시나리오 D에 기타 비선진국(산유국 제외)을 더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시나리오 E의 경우에는 그보다 미세하게 적은 0.3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A보다 B가, 또한 시나리오 D보다 E가 특혜부여 국가의 범위가 더 넓음에도 불구하고 후생증가 폭이 미세하지만 적게 나타나는 것은 역시 관세세수의 감소효과와 교역조건 변화효과가 관세인하로 인한 후생증가보다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14> 국가 시나리오별 후생의 증가

(단위: %)

국가 시나리오	A	B	C	D	E
한국	0.17	0.14	0.25	0.33	0.32
NAFTA	0.00	0.00	0.00	0.00	0.00
EU	0.00	0.00	0.00	0.00	0.00
일본	0.00	0.00	0.00	-0.01	-0.01
중국	0.00	0.00	0.00	0.07	0.06
인도	0.00	0.00	0.01	0.01	0.01
브라질	0.00	0.00	0.01	0.01	0.01
산유국	0.00	0.00	0.00	0.00	0.00
최빈국(아시아)	0.02	0.01	0.01	0.01	0.01
최빈국(아프리카)	0.02	0.02	0.02	0.01	0.01
GSTP(아시아)	0.00	0.07	0.07	0.05	0.05
GSTP(아프리카)	0.00	0.01	0.01	0.01	0.01
대양주	0.00	-0.01	-0.01	-0.02	-0.02
기타국가들1	0.00	0.00	0.00	0.00	0.01
기타국가들2	0.00	0.00	0.00	-0.02	0.01
기타국가들3	0.00	0.00	0.00	0.00	0.00

주: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시나리오가 적용된 부분이다.

다음으로 특혜대상국의 후생증가를 살펴보면, 최빈국 그룹은 0.01~0.02% 정도의 미세한 후생증가에 그치며, 자신들 이외에 특혜가 주어지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후생증가의 폭이 감소한다³⁶⁾. 중남미 GSTP 국가, 인도, 브라질, 기타 국가군(기타국가들1, 기타국가들2, 기타국가들3)에는 우리나라의 특혜관세 부여로 인한 후생증가의 폭도 0.01%

36) 이와 같이 해당 국가 이외에 특혜가 주어지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해당 국가의 후생이 감소하는 현상은 모든 국가에서 관찰된다.

정도로 미미하다. 이에 비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GSTP 국가들과 중국은 0.05~0.07%로 상대적으로 높은 후생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었다.

다음으로 물가효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0.04~0.20%의 물가하락이 나타나며 후생증가의 순서와 거의 일치하는 순서로 물가하락률이 나타나고 있다. 특혜대상국의 경우 대부분 0.1% 내외의 물가상승효과가 있으며, 다만 중국의 경우는 약 0.2%의 물가상승효과가 나타난다.

<표 IV-15> 물가의 변화

(단위: %)

국가 시나리오	A	B	C	D	E
한국	-0.04	-0.06	-0.11	-0.21	-0.20
NAFTA	0.00	0.00	0.00	0.00	0.00
EU	0.01	0.01	0.01	0.02	0.03
일본	0.00	0.00	0.00	-0.01	-0.02
중국	0.00	0.00	-0.01	0.19	0.19
인도	0.01	0.01	0.11	0.10	0.10
브라질	0.00	0.00	0.12	0.10	0.10
산유국	0.01	0.01	0.02	0.02	0.03
최빈국(아시아)	0.10	0.11	0.10	0.09	0.09
최빈국(아프리카)	0.09	0.10	0.09	0.08	0.09
GSTP(아시아)	0.00	0.10	0.09	0.08	0.08
GSTP(아프리카)	0.00	0.05	0.05	0.05	0.06
대양주	-0.01	-0.02	-0.03	-0.05	-0.06
기타국가들1	0.00	0.01	0.01	0.02	0.05
기타국가들2	0.00	0.01	0.01	0.03	0.07
기타국가들3	0.01	0.01	0.02	0.02	0.05

주: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시나리오가 적용된 부분이다.

다음으로, 대상국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을 시나리오별로 비교해 보면³⁷⁾ 아시아와 아프리카 최빈국의 수출은 인도, 브라질 및 중국에 특혜관세를 시행하느냐 여부에 큰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섬유류 수출의 경우 아시아 최빈국과 아프리카 최빈국의 경우 중국에 대한 특혜관세가 없을 때에는 각각 30% 및 20%씩 증가하지만, 중국에 대한 특혜관세가 있을 경우 각각 12% 및 4% 증가에 그친다. 인도도 중국에 대한 특혜관세 여부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비곡류 농산물, 수산물과 섬유에서 중국에 특혜관세가 주어질 경우 수출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GSTP 국가에서 인도와 브라질을 제외하는가의 여부는 나머지 GSTP 국가의 수출에 그 정도의 강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끝으로 한국의 산업별 수입총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상국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수입량이 증가한다. 최빈국에만 특혜관세를 부여하거나 최빈국과 GSTP 대상국 중 인도, 브라질,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만 특혜관세를 부여할 때에는 비곡류 농산물의 수입이 2% 정도 증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량의 증가가 미미하다. 인도와 브라질을 대상국에 추가하면 비곡류 농산물의 수입량 증가율은 3.7%에 이르며, 섬유의 수입량 증가율이 1.85%에 이른다. 여기에 중국을 추가하게 되면 비곡류 농산물의 수입량 증가율은 6.26%, 섬유의 수입량 증가가 7.42%에 달하며, 곡류, 음식료품, 수산물, 화학제품의 수입량 증가율도 1%를 넘게 된다. 마지막으로 기타국가들을 추가하면 화학제품, 기타 비금속제품, 수송장비의 수입증가율도 1%를 넘게 된다.

37) 자세한 표는 부록에 수록함.

<표 IV-16> 우리나라의 수입총량 변화

(단위: %)

국가 시나리오	A	B	C	D	E
곡류	0.35	0.40	0.69	1.10	1.11
비곡류 농산물	2.03	2.13	3.71	6.26	6.27
수산물	0.23	0.35	0.53	3.70	3.99
음식료품	0.23	0.64	1.09	2.01	2.16
광산품	-0.03	0.01	-0.01	-0.02	-0.01
석유	0.00	0.01	0.02	0.02	0.01
섬유 및 가죽	0.50	1.38	1.85	7.42	7.98
목재, 종이, 인쇄	0.01	0.19	0.20	0.23	0.24
화학	0.01	0.39	0.50	1.05	1.32
기타 비금속제품	-0.01	0.27	0.29	0.92	1.12
금속제품	-0.10	0.19	0.18	0.56	0.91
전기 및 기계	-0.09	0.01	-0.05	0.08	0.18
수송장비	0.02	0.10	0.15	0.87	1.01
서비스1	0.12	0.14	0.20	0.32	0.36
서비스2	0.13	0.20	0.29	0.53	0.61

주: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시나리오가 적용된 부분이다.

2) 기타 시나리오

5가지 국가 시나리오와 5가지 품목 시나리오를 조합하면 총 25개의 시나리오를 얻을 수 있다. 이 중 앞서 분석하지 않은 나머지 시나리오들의 계산결과를 우리나라의 후생 및 물가변화 그리고 비곡류 농산물 및 섬유의 수입량 증가에 대하여 비교한다. 비곡물 농산물 및 섬유의 수입량에 대한 비교를 제시하는 것은 이 두 품목이 앞선 비교들을 통해서 특혜관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선, 후생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자.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

듯이 최빈국에 국한된 개방 시나리오(시나리오 A)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각 특혜부여 국가별 시나리오(시나리오 B, C, D, E)에서 특혜부여의 범위가 넓을수록 후생증가의 폭이 크며, 석유를 제외한 시나리오 3의 경우 후생증가가 석유를 포함한 시나리오 1에 비해 후생증가율이 더 높다. 또한 농업부문을 제외한 개방에서는 후생증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품목 개방 시나리오 5를 기준으로 한 비교에서 보았듯이, 농산물을 포함한 품목 개방 시나리오 1, 3, 5에서도 최빈국과 GSTP 국가 그리고 인도, 브라질, 중국 등이 포함된 경우(시나리오 D)에서 후생증가의 폭이 가장 컸다. 반면, 농산물을 포함하지 않은 개방 시나리오 2와 시나리오 4에서는 후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혜부여의 국가 폭이 커질수록 그 감소 정도도 더 커지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물가의 변화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후생증대의 방향과 역방향으로 나타났다. 즉, 후생이 증가하는 경우 물가가 감소하며 후생증가율이 클수록 물가수준은 더 낮아지고, 후생이 감소하는 경우 물가가 상승하고 후생감소율이 클수록 물가수준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IV-17> 시나리오별 우리나라의 후생변화율

(단위: %)

	1	2	3	4	5
A	0.619	-0.006	0.623	-0.001	0.168
B	0.583	-0.039	0.591	-0.027	0.137
C	0.793	-0.043	0.801	-0.029	0.252
D	0.880	-0.068	0.888	-0.064	0.334
E	0.869	-0.084	0.879	-0.081	0.317

<표 IV-18> 시나리오별 우리나라의 물가변화율

(단위: %)

	1	2	3	4	5
A	-0.872	-0.006	-0.872	0.001	-0.039
B	-0.937	0.006	-0.936	0.027	-0.057
C	-1.088	0.003	-1.088	0.031	-0.107
D	-1.236	-0.010	-1.236	0.083	-0.213
E	-1.231	0.013	-1.230	0.112	-0.201

다음으로 비곡류 농산물의 수입증가율을 비교해보면, 농산물이 특혜품목으로 주어지는 시나리오(시나리오 1, 3, 5)에서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대상국의 범위가 넓을수록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STP 국가에 대한 특혜부여에 있어서 인도와 브라질을 포함시키는가 여부(시나리오 B와 시나리오 C)에 따른 변화정도가 크고, 여기에 중국을 포함시키는가 여부(시나리오 C와 시나리오 D)는 그보다 약간 작지만, 역시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섬유수입의 경우는 중국 포함 여부가 결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특혜품목에 섬유가 포함된 시나리오(시나리오 1, 2, 3, 5)에서 국가 시나리오가 C에서 D로 바뀔 때 즉, 중국이 포함됨으로써 섬유수입의 증가율이 현저하게 증가한다. 예컨대 전면 특혜부여의 시나리오 1의 경우를 보면, 중국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시나리오 C)에는 수입증가율이 4.5%인 데 비해 중국이 포함되는 경우(시나리오 D)에는 수입증가율이 그보다 12.5%포인트 증가한 17%로 나타났다.

<표 IV-19> 시나리오별 우리나라의 비곡물 농산물 수입증가율

(단위: %)

	1	2	3	4	5
A	28.219	0.000	28.238	0.000	2.027
B	28.271	-0.019	28.287	-0.025	2.126
C	34.865	-0.019	34.875	-0.025	3.713
D	37.421	0.000	37.429	-0.055	6.259
E	37.429	-0.009	37.436	-0.070	6.272

<표 IV-20> 시나리오별 우리나라의 섬유 수입증가율

(단위: %)

	1	2	3	4	5
A	1.402	0.973	1.403	0.000	0.502
B	3.492	3.054	3.496	-0.002	1.385
C	4.503	3.961	4.507	0.000	1.846
D	17.000	16.245	17.006	-0.064	7.418
E	18.115	17.339	18.120	-0.055	7.977

3. 소결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확대에서 예측한 대로 농산물을 전면 개방할 경우(곡류는 제외) 전체적인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분석에서는 쌀이 포함된 곡류는 특혜관세 공여품목에서 제외 하였지만, 특혜관세가 공여되는 비곡류 농산물의 수입증가율이 약 28%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 수입총량이 증가하는 품목으로 수산물, 음식료품, 그리고 섬유 및 가죽 등이 있었는데 이들의 수입증가율은 약 1% 수준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즉,

해당 품목의 무세화가 이루어지더라도 반드시 수입총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다시 말해, 다른 품목의 경우 특혜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미미하거나 무역대체효과만이 나타나는 반면, 비곡류 농산물에서 상당한 무역창출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공산품에 대해 무세의 특혜관세를 공여할 경우에도 우리나라 수입총량 증가율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시장개방에서는 일부 농산물에 대한 특혜관세 제공 여부만 심사숙고한다면 우리나라 수입에 별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는 앞서 제시하였듯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positive 방식에 의해 특혜관세 제공품목을 지정하고, 공산품에 대해서는 negative 방식을 사용하여 특혜관세 제외품목을 명시한다면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확대는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덧붙여 최빈개도국에 대해 일반적으로 특혜부여 품목의 범위가 넓을수록 우리나라 후생증가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산물을 완전히 제외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후생증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최빈국의 입장에서 농산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후생증가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현재 농산물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는 것도 한 번쯤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혜관세에 따라 각국의 대(對)한국 수출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시아 최빈개도국으로부터는 음식료품과 섬유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프리카 최빈개도국으로부터는 화학제품과 전자 및 기계류의 수출증가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공여품목으로 석유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경제적 모형에서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최빈국의 입장에서는 석유에 특혜가 부여되는 경우가 석유를 제외한 경우보다 후생이 더 높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석유는 경제적 분석의 결과보다는 앞서 언급한 일부 특정국가에 한정된 특혜제공, 관세수입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최빈개도국을 포함하여 여타 개도국에 대해서도 특혜관세를 제공하는 GSP를 전면 실시할 경우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였다. 예상대로 대상국의 대한국 수출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특혜관세의 부여로 대상국의 수출선 전환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품목별로는 현재 대상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높은 비곡류 농산물, 섬유 및 가죽 등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곡류 농산물의 경우는 인도와 브라질을 특혜대상국에 포함하는가의 여부, 섬유류의 경우는 중국을 특혜대상국에 포함하는가 여부에 따라 수입증가율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섬유류 수입의 경우 중국 포함 여부가 결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류에 대해 전면 특혜를 부여할 경우 중국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수입증가율이 4.5%인 데 비해 중국이 포함될 경우 수입증가율이 그보다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한 17%로 나타나고 있다. 비곡류 농산물에서도 인도와 브라질의 포함 여부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중국의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빈개도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도 인도, 브라질 및 중국에 특혜관세를 시행하느냐 여부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예컨대 섬유류 수출의 경우 아시아 최빈국과 아프리카 최빈국의 경우 중국에 대한 특혜관세가 없을 때에는 각각 30% 및 20%씩 증가하지만, 중국에 대한 특혜관세가 있을 경우 각각 12% 및 4% 증가에 그친다. 인도도 중국에 대한 특혜관세 여부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비곡류 농산물, 수산물과 섬유에서 중국에 특혜관세가 주어질 경우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이 포함된 상황에서 다른 대부분의 개도국에 GSP를 제공할 경우에도 우리나라 수입총량은 약간 증가하였을 뿐 큰 변화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이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의미하며, 중국에 대한 GSP 공여는 다른 여타 개도국들에 GSP를 공여하는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의 수입총량 변화를 가져옴을 의미하고 있다.

이런 경제적 분석 결과에 의해 중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FTA를 추진하거나 혹은 현재 중국과 이루어지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방콕협정)을 통해 상호간 관세인하 폭을 넓히면서 양국 간 경제적 혜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GSP 전면 도입도 이런 경과를 보면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의 시나리오에는 포함될 수 없지만 본고의 모형을 이용해 우리나라와 중국이 FTA를 체결할 경우³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경제적 분석 결과는 예상대로 우리나라의 민간 후생증가는 중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GSP를 제공할 때와는 달리 1.46%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중국으로의 수출도 수송장비, 전기 및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의 분석은 공산품 관련 품목이 무세화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관세율이 인하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여 민간 후생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을 본 결과가 뒷받침해주고 있다.

GSP를 도입할 경우 비곡류 농산물, 음식료품, 섬유류 등에서의 수입총량 증가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이들 농산물 분야와 섬유류를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에 주는 후생효과는 약간의 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공산품에 대해서만 특혜관세를 부여할 경우 관세율 하락에 따른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보다는 관세 세수 감소와 교역조건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농산물과 섬유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관세를 인하해 줌

38) 우리나라와 중국 간 FTA 체결에서 관세철폐 정도는 기존의 품목 시나리오 5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제공하는 GSP 우대 시나리오처럼 석유는 관세인하에서 제외하고, 섬유와 농산물은 50%의 관세를 인하하며,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무세를 적용한다고 가정하였다.

으로써 이왕 GSP를 공여한다면 우리나라의 후생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최빈개도국과 개도국들에 대해 우리나라가 특혜관세를 부여할 때 특혜수혜국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후생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았다. 또한 인도, 브라질, 중국에 특혜관세를 부여하는가 여부가 우리나라의 후생증가 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곡물과 석유를 제외하고 기타의 농산물과 섬유류의 관세를 50% 인하하고 그 밖의 품목에 대하여 무세화하는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볼 때, 최빈국에 국한하거나 혹은 인도, 브라질, 중국의 3국을 제외한 경우 우리나라의 후생증대는 0.1% 내외인 반면, 인도, 브라질, 중국을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후생증대가 0.3%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관세인하에 따른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거대 경제권과의 교역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효용증가를 위해 우리나라의 일방적인 GSP 제공보다는 상호간의 교역장벽을 낮추는 FTA를 체결할 경우 그 효용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GSP 전면 도입에 앞서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FTA를 통해 혜택을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V. 결 론

본고에서는 특혜관세제도와 관련하여 크게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 관세 확대문제와 개발도상국의 일반특혜관세(GSP)제도 전면 실시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두 분야에 대해 앞서 분석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이번 DDA 협상은 최빈개도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입장차이가 존재하지만 협상의제 및 분야별 협상목표에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크게 반영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등 발언권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들의 불만해소 등 우리나라 경제적 수준에 맞는 개도국 우대를 준비해야 한다. 설령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 개도국에 대한 혜택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협상 마지막에 이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1.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확대 검토

국제적으로 최빈개도국의 절대빈곤 문제는 1990년대 말 UN, WTO, OECD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EU, 일본, 미국 등은 특혜관세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WTO 회원이고 또한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이런 흐름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World Bank는 우리나라를 고소득 국가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최빈개도국에 대해 어느 정도 혜택을 제공한 후에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선진국과 비슷한 우대조

치를 시행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2005년 12월에 개최된 WTO 제6차 각료회의 결과 선진국과 이에 동참하는 개도국은 2008년까지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모든 수출품에 무관세 및 무쿼터를 적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이런 국제적인 분위기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함께 현재 우리나라의 교역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로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확대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2004년 기준으로 최빈개도국에 약 34억달러를 수출하였고 약 13억달러를 수입하여 약 21억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즉, 최빈개도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한 액수보다도 더 큰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이런 무역수지 흑자는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원유수입을 제외할 경우 그 수입액은 2004년에 약 5억달러에 불과하다. 5억달러도 가장 큰 액수로, 2004년 이전 10여년간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약 1억달러를 좀 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원유를 제외한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액에 거의 20배에 가까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³⁹⁾.

그러므로 국제적인 흐름, 최빈개도국의 경제적인 상황 및 규모,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교역비중 및 무역수지 흑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에서 민감하게 여기는 일부 농산물 등을 제외하면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확대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DDA 협상중에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지위가 선진국과 개도국 중간에 위치하여, 비농산물 협상에서는 선진국으로, 농산물 협상에서는 개도국으로 전략적으로 그 지위를 양분

39) 최빈개도국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0.7% 수준이고 원유를 제외할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낮은 약 0.1% 수준이다.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확대는 전략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특혜관세를 공여할 품목 선정방식은 다른 나라의 예를 활용하여 농산물에 대해서는 positive 방식을 이용하고 공산품에 대해서는 negative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우리나라는 농산물에 대해 국민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positive 방식을 선택하여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고 또한 품목별로 상이한 특혜관세를 줄 수 있다는 장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산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쟁력에 비추어 positive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negative 방식을 활용하여 일부 품목에 대해 특혜범위와 특혜관세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모형을 통한 경제적 분석에서도 농산물의 수입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쌀을 포함한 곡류에 대해서는 특혜품목에서 제외하였지만, 특혜가 공여되는 비곡류 농산물의 수입이 전체적으로 2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수산물, 음식료품, 섬유제품 등의 수입이 증가하였는데, 그 증가율이 약 1% 수준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방식대로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해 적절하게 특혜관세를 적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농산물과 섬유제품은 최빈개도국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품목으로 이들을 제외할 경우 최빈개도국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다. 또한 모형을 통한 경제분석에서도 농산물을 완전히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의 후생증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최빈국의 입장에서도 농산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후생증가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는 것도 한 번쯤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공여품목으로 석유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경제적 모형에서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석

유는 경제적 분석의 결과보다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가 크면서 세번수가 적어 일부 산유국인 최빈개도국에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후순위에 놓아야 한다. 향후 원유에 대해 최빈개도국에 특혜관세를 부여한다면 이는 원유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 후에 고려해야 하는 것이 순서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특혜관세를 공여하면 이를 다시 폐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당장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를 공여할 수 있다고 해도 우선 그 대상을 다소 보수적으로 설정한 이후 차차 그 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GSP 실시 검토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은 OECD 회원국이면서 World Bank에 의해 고소득으로 분류된 국가들 중 인구규모가 크면서도 GSP를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이다. 따라서 개도국에 대해 특혜관세를 확대할 경우 제일 먼저 거론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개도국에 대해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전 세계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데 모든 국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앞서도 여러 번 언급하였듯이 WTO에서도 개도국 우대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GSP제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다. GSP 도입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 및 대외적인 압력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 자발적으로 GSP를 도입할 이유는 없다. 다만, 연구를 통해 이에 대비할 필요성은 시기적으로 매우 높은 상황이며,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출발점이 될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GSP와 관련해서는 우선 실시시기를 논의할 수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GSP를 전면 실시하는 데 적절한 시기는 이번 DDA 협상으로 우리나라 관세율이 낮아지고 이를 우리나라 경제에

서 소화하는 한편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FTA 체결이 확산된 후에 GSP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DDA 협상에 의해 우리나라 관세율이 낮아진 이후 GSP제도를 실시할 경우 GSP 특혜관세율과 일반실행세율의 차이가 줄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FTA 체결이 확대된 이후 GSP를 실시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적 지위도 증가시키면서 GSP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FTA 체결 확대 이후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앞서 GSP를 이미 도입한 국가들의 경험을 보아도 알 수 있었으며, 경제적 효과분석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GSP를 실시할 경우 수혜 대상국과 수혜 품목 등은 어느 정도 자율권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예상대로 대상국의 대한국 수출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무역전환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수혜 품목별로는 현재 대상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높은 비곡류 농산물, 섬유제품 등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비곡류 농산물의 경우는 인도와 브라질을 특혜대상국에 포함하는가의 여부, 섬유류의 경우는 중국을 특혜대상국에 포함하는가 여부에 따라 수입증가율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섬유류에 대해 전면 특혜를 부여할 경우 중국의 포함여부에 의해 수입증가율이 4.5%에서 17%로 거의 4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비곡류 농산물에서도 인도와 브라질의 포함여부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중국의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빈개도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도 인도, 브라질 및 중국에 특혜관세를 시행하느냐 여부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예컨대 아시아 및 아프리카 최빈국의 섬유류 수출의 경우 중국에 특혜관세가 제공되지 않을 때에는 각각 30% 및 20%씩 증가하지만, 중국에도 특혜관세를 제공할 때에는 각각 12% 및 4% 증가에 그쳤다.

한편,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이 포함된 상황에서 추가로 더 많은 개도국에 GSP를 제공할 경우에도 우리나라 수입총량은 약간 증가하였을 뿐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제적 분석결과에 따라 중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FTA를 추진하거나 혹은 현재 중국과 이루어지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방콕협정)을 통해 상호간 관세인하 폭을 넓히면서 양국 간 경제적 혜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GSP 전면 도입도 이런 경과를 보면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 한·중 FTA 체결을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방적인 GSP 제공과 달리 FTA로 중국도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 때문에 수송장비, 전기 및 기계 등을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민간 후생증가도 일방적인 GSP 공여 때에 비해 훨씬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GSP를 도입할 경우 비곡류 농산물, 음식료품, 섬유류 등에서의 수입총량 증가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이들 농산물 분야와 섬유류를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에 주는 후생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과 섬유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관세를 인하해 줌으로써 이왕 GSP를 공여한다면 우리나라의 후생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런 효용증가를 위해 우리나라의 일방적인 GSP 제공보다는 상호간의 교역장벽을 낮추는 FTA 체결이 경제적으로 더 효과가 클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GSP 제공에 앞서 이들 국가와의 FTA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빈개도국을 비롯해 개도국에 대해 특혜관세를 확대하는 것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번 DDA 협상에서 농산물 분야와 비농산물 분야가 분리되어 협상이 진행되듯이 개도국에 대한 특별우대도 다른 분야와 분리되어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다고 해서 다른 분야에

서 우리의 협상력이 커지지 않는 것이며, 오히려 농산물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얻으려는 우리나라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특혜관세를 확대할 경우 보다 많은 특혜를 요구할 수 있어 작은 것들이 모여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개방보다는 최빈개도국과 개도국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 예를 들어,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교육훈련 강화, 기술지도 등을 통해 해당 개도국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장개방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특혜관세 제공과 직접적인 원조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현재의 국제적 흐름으로는 이 둘을 모두 소홀하게 다룰 수 없음은 분명한 것 같다.

본고는 우리나라가 최빈개도국 혹은 개도국에 대해 특혜관세를 확대할 경우에 대비한 기초 연구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 특혜관세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한 기존 연구 자료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한다. 향후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가시화될 때 여러 가지 대안들과 보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더 발전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관세청, www.customs.go.kr.
- 김남두,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96-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12.
- 김중근,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도입과 최빈개도국의 수혜조건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지』, 제1권 제2호, pp. 31~54, 2000.
- 대한무역진흥공사, 『90년도 일본의 대개도국 특혜관세제도(GSP) 해설』, 무공자료 90-57, 1990.
- _____, 『EU의 신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해설』, 1995.
- _____, 『UNCTAD/일반특혜관세제도 해설』, 1991.
- 문석웅, 『산업별 국내재/수입재 간 대체탄력성에 관한 연구-CGE모형에 의한 업데이트 시뮬레이션 기법의 응용』, 한국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1998.
- 상공회의소, 『세계 각국의 일반특혜관세(GSP)제도와 아세안 특혜관세프로그램(CEPT)의 원산지규칙』, 1998. 8.
- 유관영·김학기, 『대일수출의 GSP 활용실태와 효과분석』, KIET 정책자료 제123호, 산업연구원, 1999. 9.
- 에너지경제연구원, 『자유화시대의 국내 석유산업 관련제도 합리화 방향』, 2002.
-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 이명헌·성명재, 『조세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모형개발: 외부불경제 유발 재화의 소비세율 인상 효과분석』, 연구보고서 02-06, 한국조세연구원, 2002.

재정경제부, www.mofe.go.kr

정재호 · 성명재 · 이명현, 『관세율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국제비교 및 일반균형모형의 응용』, 정책보고서 03-03, 한국조세연구원, 2003.

최낙균 · 정재호,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의 논의동향과 국제 관세율 구조분석』, 정책연구 02-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12.

한홍렬, 『선진국의 무역보장 연구 2 - 원산지규정』, 정책연구 92-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3.

한국관세무역연구원, 『수출입통관편람』, 각 연호.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www.kita.net

한국석유공사, www.petronet.org

Baldwin, R. E. and T. Murray, "MFN Tariff Reductions and Developing Country Trade Benefits Under the GSP," *The Economic Journal*, Vol. 87, No. 345, Mar., 1977, pp. 30~46.

E.U., "Applying a scheme of generalised tariff preferences," COUNCIL REGULATION (EC) No 980/2005, 2005. 6. 30

_____,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function of the Community's 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 (GSP) for the ten-year period from 2006 to 2015," COM(2004) 461 final, 2005.

_____, www.europa.eu.int

Hertel, T. and Tsigas, Structure of GTAP in Hertel, T. (ed.) *Global Trade Analysis: Modeling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Lederman, Daniel and Caglar Özden, "U.S. Trade Preferences: All are not Created Equal," World Bank, Working Paper,

- January, 2004.
- McDonald, S. and Thierfelder, K., "Deriving a Global Social Accounting Matrix from GTAP Versions 5 and 6 Data," GTAP Technical Paper No. 22, 2004.
- Merlinda D. Ingco, "Has Agricultural Trade Liberalization Improved Welfare in the Least-Developed Countries? Yes," Th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1997.
- Murray, Tracy, "How Helpful is the 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 to Developing Countries?," *The Economic Journal*, Vol. 83, No. 330, Jun., 1973, pp. 449~455.
- Özden, Caglar and Eric Reinhardt, "The Perversity of Preferences: GSP and Developing Country Trade Policies 1976~2000,"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78, pp. 1~21, 2005.
- Rutherford, T., GTAP in GAMS: The Dataset and Static Model, mimeo, 1998.
- UNCTAD, "Digest of GSP Rules of Origin," 1999.
- _____, "Digest of GSP Rules of Origin," UNCTAD/TAPI33/Rev.7, 1999. 2.
- _____, "Duty and Quota Free Market Access for LDCs: An Analysis of Quad Initiatives," 2001.
- _____, "Erosion of preferences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ssessment of effects and mitigating options," TD/B/52/4, 2005. 8.
- _____, "Handbook on the Scheme of Bulgaria," UNCTAD/ITCD /TSB/Misc.67, 2001. 5.
- _____, "Handbook on the Scheme of Bulgaria," UNCTAD/ITCD /TSB/Misc.67, 2002. 4.

- _____, “Handbook on the Scheme of Canada,” UNCTAD/ITCD /TSB/Misc.67, 2001. 12.
- _____, “Handbook on the Scheme of Hungary,” 2001.
- _____, “Handbook on the Scheme of Hungary,” UNCTAD/ITCD /TSB/Misc.64, 2001. 8.
- _____, “Handbook on the Scheme of Japan 2002/2003,” UNCTAD/ITCD/TSB/Misc.42/Rev.2, 2002.
- _____, “Handbook on the Scheme of the European Community,” UNCTAD/ITCD/TSB/Misc.25/Rev.2, 2002.
- _____, “Improving Market Access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UNCTAD/DITC/TNCD/4, 2001. 5.
- _____, “Negotiating Anti-Dumping and Setting Priorities Among Outstanding Implementation Issues in the Post-Doha Scenario: A First Examination in the Light of Recent Practice and DSU Jurisprudence,” UNCTAD/ ITCD/TSB/Misc.72, 2001. 5.
- _____, “Programme of Action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CONF. 191/11, 2001. 6. 8.
- _____, “Review of developments and issues in the post-Doha work programme of particular concern to developing countries,” TD/B/52/8, 2005. 10.
- _____,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Report 2002,” ‘Escaping the Poverty Trap’, 2002.
- _____,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Report 2004,” ‘Linking International Trade with Poverty Reduction’, 2004.
- _____, “Trade preferences for LDCs : An early assessment of benefits and possible improvements”, UNCTAD/ITCD/T SB/2003/8, 2004. 1. 30.
- _____, “GSP - Handbook on the scheme of Canada 2002,”

- UNCTAD/ITCD/TSB/Misc.66, 2002. 12. 1.
- _____, www.unctad.org
- USTR, "U.S.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uidebook, 1999. 3.
- _____, "Addendum to GSP Handbook - Updates since March 1999," 2004.
- _____, www.ustr.gov
- World bank, www.worldbank.org
- WTO,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WT/COMTD/N/4/Add. 2, 2001. 10. 5.
- _____, "High-level Meeting on Integrated Initiatives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Trade Development Note on the Meeting," www.wto.org
- _____, "Market Access Issues Related to Products of Export Interest Originating from Least Developed Countries," WT/COMTD/LDC/W/28/TN/MA/S/7, 2002. 10. 30.
- _____, "Market access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in the textiles and clothing sector after the expiry of ATC," WT/COMTD/LDC/W/36, 2004. 10.
- _____,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Provisions," TN/CTD/W/4/, 2002. 5. 24.
- _____, "The WTO Work Programme on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TN/CTD/W/26/, 2002. 12. 11.
- _____, www.wto.org

부 록

<부표 1> 최빈개도국 판정에 필요한 각종 지수들

국가	인구(2002) (백만명)	1인당 GNI (달러)	HAI ^{a)}	EVI ^{b)}	수정 EVI ^{c)}
아프가니스탄	23.3	523	11.6	50.1	49
앙골라	13.9	447	25.6	48.5	46.8
방글라데시	143.4	363	45.3	22.9	29.5
베냉	6.6	367	40.2	57	56.4
부탄	2.2	600	40.4	40.6	41
부르키나파소	12.2	217	26.5	49.3	47
부룬디	6.7	110	19.7	53.8	49.6
캄보디아	13.8	263	44.5	49.7	48.1
카보베르데	0.4	1,323	72.0	55.5	56.7
중앙아프리카공화국	3.8	277	29.9	43.1	42
차드	8.4	203	26.1	59.2	56.6
코모로	0.7	387	38.1	59.1	58.7
콩고민주공화국	54.3	100	34.3	40.8	42.3
지부티	0.7	873	30.2	48.6	49.5
적도기니	0.5	743	47.2	64.4	55.8
에리트리아	4	190	32.8	51.7	50.2
이디오피아	66	100	25.2	42	40.7
감비아	1.4	340	34	60.8	56.5
기니	8.4	447	30.3	42.1	40
기니비사우	1.3	170	31.2	64.6	60.7
아이티	8.4	493	35.3	41.7	43.5
키리바시	0.1	923	67.5	64.8	60.4
라오스	5.5	297	46.4	43.9	43.4
레소토	2.1	573	45.4	44.2	44.5
라이베리아	3.3	285	38.7	63.1	58.3
마다가스카르	16.9	253	37.9	21.6	27
말라위	11.8	177	39	49	49.4
몰디브	0.3	1,983	65.2	33.6	37.5

<부표 1>의 계속

국가	인구(2002) (백만명)	1인당 GNI (달러)	HAI ^{a)}	EVI ^{b)}	수정 EVI ^{c)}
말리	12	230	19.9	47.5	45.4
모리타니아	2.8	377	38.2	38.9	37.7
모잠비크	19	220	20	35.6	39.2
미얀마	49	282	60	45.4	45.6
네팔	24.2	240	47.1	29.5	31.0
니제르	11.6	180	14.2	54.1	53.1
르완다	8.1	230	34.1	63.3	59.6
사모아	0.2	1,447	88.8	40.9	50.8
상토메프린시페	0.1	280	55.8	41.8	37
세네갈	9.9	490	38.1	38.4	38.8
시에라리온	4.8	130	21.7	45.7	43.3
솔로몬제도	0.5	657	47.3	46.7	49.1
소말리아	9.6	177	8.5	55.4	53.1
수단	32.6	333	46.4	45.2	46.5
토고	4.8	293	48.6	41.5	42.8
투발루	0.01	1,383	63.7	70.3	67.3
우간다	24.8	297	39.8	43.2	41.6
탄자니아	36.8	263	41.1	28.3	30.2
바누아투	0.2	1,083	57.4	44.5	46.4
예멘	19.9	423	46.8	49.1	49
잠비아	10.9	317	43.4	49.3	47.6

주: 1. 굵은 글씨는 최빈국 졸업기준을 초과하는 수치.

- a) 인간자산지수(HAI: The Human Asset Index)는 (i) 1인당 평균 최소칼로리요구량으로 계산된 영양지수, (ii)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로 측정된 건강지수, (iii) 성인 문맹률과 중등교육기관 등록률로 측정된 교육지수의 평균임.
- b) 경제적민감성지수(EVI: The Economic Vulnerability Index)는 다음 다섯 가지 지표의 평균임.
(i) 수출상품집중도(merchandise export concentration), (ii) 수출수익의 불안정성(instability of export earnings), (iii) 농업생산의 불안정성(instability of agricultural production), (iv) GDP 대비 제조업 및 현대적서비스업의 비중(share of manufacturing and modern services in GDP), (v) 인구규모(population size)
- c) 자연재해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인구의 비중 등, 농업생산의 불안정성과 관련한 추가적 자료를 고려한 EVI 지수.

자료: UNCTAD(2004).

<부표 2> 최빈개도국의 1인당 GDP 추이

(단위 : 달러)

국가	1980	1990	2002
방글라데시	220	246	329
부탄	279	466	698
캄보디아	..	204	266
라오스	..	199	304
네팔	137	173	223
예멘	..	482	538
앙골라	987	934	863
베냉	339	329	410
부르키나파소	172	182	225
부룬디	125	143	109
카보베르데	..	956	1,390
중앙아프리카공화국	338	293	282
차드	168	216	232
콩고민주공화국	330	269	111
지부티	..	1,209	861
적도기니	..	973	4,517
에리트리아	..	..	146
이디오피아	..	76	87
감비아	282	281	280
기니	..	328	380
기니비사우	151	191	149
레소토	233	295	405
라이베리아	712	194	174
말라위	173	141	158
말리	255	210	251
모리타니아	317	296	350

<부표 2>의 계속

(단위 : 달러)

국가	1980	1990	2002
모잠비크	149	135	211
니제르	298	216	188
르완다	232	216	210
상토메프린시페	..	340	321
세네갈	434	444	501
시에라리온	318	277	166
수단	265	264	410
토고	418	338	288
우간다	..	161	235
탄자니아	..	241	259
잠비아	481	389	344
키리바시	513	457	512
사모아	..	..	1,482
솔로몬제도	561	766	517
바누아투	1,113	1,231	1,133
아이티	751	568	437
코모로	434	425	343
마다가스카르	427	341	267
몰디브	..	..	2,000
최빈 개도국 전체	..	253	281
개도국 전체	761	901	1,195
선진시장 경제	18,813	23,832	28,388
동유럽 국가	..	3,160	2,781

주: 1992년 이전 이디오피아 자료에는 에리트리아 포함.

자료: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03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nline data.

<부표 3> OECD 회원국 등의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액 비교

(단위: 백만달러, %)

국가	수입액			원유 제외 수입액		
	전체	최빈 개도국	비율	전체	최빈 개도국	비율
한국	152,120	989	0.65	128,032	178	0.14
미국	1,102,069	8,924	0.81	1,025,578	5,208	0.51
일본	330,856	1,580	0.48	288,095	765	0.27
캐나다	215,658	402	0.19	206,691	215	0.10
EU	813,400	12,448	1.53	717,248	10,102	1.41
호주	60,485	113	0.19	55,557	113	0.20
싱가포르	114,594	737	0.64	100,057	355	0.36
대만	108,715	872	0.80	100,344	163	0.16
멕시코	170,118	63	0.04	166,835	63	0.04
브라질	57,725	293	0.51	51,241	100	0.19
아르헨티나	20,245	7	0.04	19,712	7	0.04
터키	40,179	68	0.17	36,741	67	0.18

주: 1. 2002년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되었으며, 자료의 한계로 호주(2001), 싱가포르(2001), 멕시코(2000), 브라질(2001), 아르헨티나(2001), 터키(1999)의 경우 괄호안 연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2. 원유 제외 수입액의 경우 총수입액에서 원유와 석유조제품의 수입액을 차감하여 계산.

자료: WTO IDB.

<부표 4> 산업별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액

(단위: 천달러, %)

대분류	2002 수입액			2003 수입액			2004 수입액		
	전체	최빈 개도국	비율	전체	최빈 개도국	비율	전체	최빈 개도국	비율
농수산물	5,050,829	39,807	0.79	5,226,251	65,598	1.26	6,311,883	92,366	1.46
광산물	28,301,160	862,491	3.05	33,662,476	681,311	2.02	44,719,745	621,740	1.39
음식료업	6,068,101	11,814	0.19	7,074,363	12,954	0.18	7,330,108	18,730	0.26
섬유 및 가죽	7,287,647	35,223	0.48	7,204,448	34,747	0.48	7,733,624	47,393	0.61
목재 및 종이	3,234,961	15,687	0.48	3,354,749	11,132	0.33	3,580,180	11,643	0.33
인쇄 및 출판	877,450	5	0.00	574,635	88	0.02	586,726	134	0.02
석유 및 석탄	6,452,534	659	0.01	7,739,587	3,929	0.05	8,995,053	5,561	0.06
화학	16,505,229	434	0.00	19,098,101	924	0.00	24,252,319	462	0.00
비금속광물	2,078,740	232	0.01	2,371,373	177	0.01	2,882,168	110	0.00
제1차 금속	13,334,260	8,748	0.07	17,524,555	50,570	0.29	27,159,595	153,860	0.57
금속	1,448,416	74	0.01	1,744,671	12,795	0.73	2,127,341	249	0.01
일반기계	11,750,335	419	0.00	15,321,774	595	0.00	18,403,164	61,257	0.33
전기 및 전자	35,912,507	2,606	0.01	42,986,624	1,998	0.00	50,174,299	2,618	0.01
정밀기기	6,967,242	376	0.01	7,376,257	349	0.00	9,136,202	656	0.01
수송장비	4,895,894	9,247	0.19	5,098,463	22,915	0.45	6,630,501	28,230	0.43
가구 및 기타 제조업	1,792,611	736	0.04	2,007,297	837	0.04	2,115,541	2,108	0.10
합계	151,957,916	988,558	0.65	178,355,624	900,919	0.51	222,138,447	1,047,116	0.47

자료: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www.kita.net

<부표 5> 산업별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세번수

(단위: 개, %)

대분류	2002 세번수			2003 세번수			2004 세번수		
	전체	최빈 개도국	비율	전체	최빈 개도국	비율	전체	최빈 개도국	비율
농수산물	579	74	12.78	584	91	15.58	590	98	16.61
광산물	169	13	7.69	170	20	11.76	180	22	12.22
음식료업	893	54	6.05	980	120	12.24	978	132	13.50
섬유 및 가죽	1,463	231	15.79	1,480	406	27.43	1,479	425	28.74
목재 및 종이	364	31	8.52	353	55	15.58	357	48	13.45
인쇄 및 출판	62	15	24.19	64	25	39.06	64	27	42.19
석유 및 석탄	107	6	5.61	98	12	12.24	100	8	8.00
화학	2,234	42	1.88	2,260	65	2.88	2,295	61	2.66
비금속광물	299	13	4.35	298	12	4.03	299	14	4.68
제1차 금속	569	22	3.87	587	33	5.62	586	30	5.12
금속	349	15	4.30	355	31	8.73	357	19	5.32
일반기계	1,035	30	2.90	1,047	38	3.63	1,046	47	4.49
전기 및 전자	754	64	8.49	772	86	11.14	773	90	11.64
정밀기기	572	27	4.72	529	38	7.18	529	34	6.43
수송장비	292	12	4.11	325	13	4.00	310	13	4.19
가구 및 기타제조업	410	52	12.68	418	81	19.38	420	76	18.10
합계	10,151	701	6.91	10,320	1,126	10.91	10,363	1,144	11.04

주: 세번수는 HS 10단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수입한 실적이 있는 품목들의 수를 의미한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www.kita.net

<부표 6> 산업별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실행세율과 실적세율

(단위: %)

대분류	2002		2003		2004	
	실행 세율	실적 세율	실행 세율	실적 세율	실행 세율	실적 세율
농수산물	14.07	20.55	13.74	25.86	13.65	21.65
광산물	2.72	2.77	2.72	2.61	2.72	2.52
음식료업	18.61	23.06	18.47	24.36	18.35	23.17
섬유 및 가죽	9.84	9.52	9.97	9.39	9.94	9.70
목재 및 종이	5.70	5.85	4.55	4.62	3.30	3.50
인쇄 및 출판	2.63	2.45	2.66	2.50	2.54	2.33
석유 및 석탄	6.12	6.42	6.37	6.26	6.13	6.01
화학	7.35	7.13	7.11	6.78	6.20	6.01
비금속광물	7.78	7.52	7.78	7.46	7.74	7.49
제1차 금속	4.73	4.64	4.10	3.84	3.40	3.25
금속	7.53	7.02	7.31	6.85	7.08	6.64
일반기계	6.40	5.71	6.34	5.48	6.26	5.52
전기 및 전자	5.09	4.57	5.09	4.62	5.06	4.55
정밀기기	6.56	5.60	6.49	5.44	6.41	5.48
수송장비	6.00	5.02	6.04	4.65	6.04	5.44
가구 및 기타제조업	7.35	7.14	6.97	6.75	6.58	6.59

자료: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www.kita.net

<부표 7> 우리나라 석유 수입비중

(단위: 천달러, %)

		원유		석유제품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2002	World	19,200,267	100.0	4,887,613	100.0
	LDC	810,184	4.2	619	0.0
	Unspecif	0	0	6,216	0.1
2001	World	21,367,827	100.0	4,650,346	100.0
	LDC	829,462	3.9	29,796	0.6
	Unspecif	0	0.0	9,950	0.2
2000	World	25,215,629	100.0	4,863,173	100.0
	LDC	1,660,654	6.6	23,487	0.5
	Unspecif	0	0.0	2,537	0.1
1999	World	14,782,697	100.0	2,732,806	100.0
	LDC	1,225,553	8.3	71	0.0
	Unspecif	-	0.0	1,569	0.1
1998	World	11,240,588	100.0	2,306,276	100.0
	LDC	433,881	3.9	5,188	0.2
	Unspecif	-	0.0	236	0.0
1997	World	17,771,754	100.0	3,304,759	100.0
	LDC	890,819	5.0	6,203	0.2
	Unspecif	-	0.0	-	0.0
1996	World	14,431,518	100.0	4,320,247	100.0
	LDC	503,032	3.5	8,263	0.2
	Unspecif	-	0.0	-	0.0

자료: WTO-IDB.

<부표 8> 우리나라의 주요 석유 수입국

(단위: 천달러, %)

연도	원유				석유제품			
	국가	순위	비중	수입액	국가	순위	비중	수입액
2002	World			19,200,267	World			4,887,613
	예멘	1	52.8	428,111	라이베리아	1	100.0	619
	앙골라	2	21.9	177,709				
	가니	3	12.9	104,406				
	수단	4	8.8	71,077				
	미얀마	5	3.6	28,881				
2001	World			21,367,827	World			4,650,346
	예멘	1	48.9	405,512	예멘	1	93.1	27,749
	앙골라	2	26.5	219,698	방글라데시	2	6.8	2,040
	수단	3	11.1	91,956	캄보디아	3	0.0	6
	니제르	4	6.1	50,547				
	가니	5	3.9	31,941				
	미얀마	6	3.6	29,807				
2000	World			25,215,628	World			4,863,173
	앙골라	1	39.4	653,789	예멘	1	100.0	23,487
	예멘	2	34.9	579,657				
	니제르	3	15.6	259,110				
	수단	4	6.7	111,877				
	가니	5	3.4	56,220				
1999	World			14,782,696	World			2,732,805
	앙골라	1	42.7	646,179	라이베리아	1	100.0	71
	예멘	2	20.4	308,185				
	콩고	3	19.0	287,361				
	니제르	4	10.0	151,880				
	수단	5	3.1	46,640				
	가니	6	2.6	39,130				
	적도기니	7	2.2	33,539				

<부표 8>의 계속

(단위: 천달러, %)

연도	원유				석유제품			
	국가	순위	비중	수입액	국가	순위	비중	수입액
1998	World			11,240,587	World			2,306,275
	콩고	1	42.0	314,668	예멘	1	100.0	5,188
	예멘	2	27.6	206,410				
	앙골라	3	14.2	106,176				
	니제르	4	13.3	99,314				
	기니	5	2.2	16,657				
	라이베리아	6	0.7	5,324				
1997	World			17,771,754	World			3,304,758
	예멘	1	36.2	464,542	예멘	1	99.9	6,199
	콩고	2	30.6	392,333	캄보디아	2	0.1	4
	앙골라	3	13.7	175,922				
	니제르	4	12.6	161,174				
	적도기니	5	5.4	69,453				
	기니	6	1.5	19,728				
1996	World			14,431,518	World			4,320,246
	예멘	1	71.3	371,662	예멘	1	96.7	7,988
	앙골라	2	14.8	77,170	바누아투	2	3.3	275
	니제르	3	8.1	42,011	방글라데시	3	0.0	0
	콩고	4	3.5	18,345				
	세네갈	5	2.3	12,190				

자료: WTO-IDB.

<부표 9> GSTP 회원국 명단

Algeria	알제리	Mexico	멕시코
Argentina	아르헨티나	Morocco	모로코
Bangladesh	방글라데시	Mozambique	모잠비크
Benin	베닌	Myanmar	미얀마
Bolivia	볼리비아	Nicaragua	니카라과
Brazil	브라질	Nigeria	나이지리아
Cameroon	카메룬	Pakistan	파키스탄
Chile	칠레	Peru	페루
Colombia	콜롬비아	Philippines	필리핀
Cuba	쿠바	Republic of Korea	한국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북한	Romania	루마니아
Ecuador	에콰도르	Singapore	싱가포르
Egypt	이집트	Srilanka	스리랑카
Ghana	가나	Sudan	수단
Guinea	기니	Thailand	태국
Guyana	가이아나	Trinidad and Tobago	트리니다드 토바고
India	인도	Tunisia	튀니지
Indonesia	인도네시아	Tanzania	탄자니아
Iran	이란	Venezuela	베네수엘라
Iraq	이라크	Viet Nam	베트남
Libya	리비아	Zimbabwe	짐바브웨
Malaysia	말레이시아		

<부표 10> 시나리오 A-5하에서의 각국의 대한민국 수출증가율

(단위: %)

국가 산업	합계	NAFTA	EU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산유국	최빈국 (아시아)	최빈국 (아프리카)	GSTP (아시아)	GSTP (아프리카)
곡류	0.35	0.35	0.32	0.33	0.35	0.32	0.33	0.30	-0.33	-0.54	0.36	0.32
비곡류 농산물	2.03	-22.07	-22.10	-22.09	-22.07	-22.10	-22.08	-22.10	735.61	878.72	-22.07	-22.09
수산물	0.23	0.19	0.18	0.18	0.19	0.18	0.18	0.17	45.46	24.53	0.19	0.18
음식료품	0.23	-0.08	-0.11	-0.09	-0.08	-0.11	-0.09	-0.12	100.21	21.61	-0.08	-0.10
광산물	-0.03	-0.55	-0.63	-0.61	-0.56	-0.64	-0.60	-0.67	16.25	8.59	-0.55	-0.63
석유	0.00	0.04	0.01	0.03	0.05	0.03	0.03	0.02	-0.51	-0.44	0.05	0.03
섬유 및 가죽	0.50	-0.85	-0.88	-0.87	-0.83	-0.88	-0.86	-0.88	29.15	20.27	-0.83	-0.87
목재, 종이, 인쇄	0.01	-0.17	-0.20	-0.19	-0.17	-0.20	-0.18	-0.21	32.32	21.36	-0.18	-0.20
화학	0.01	-0.03	-0.06	-0.05	-0.04	-0.06	-0.05	-0.07	39.59	63.48	-0.04	-0.06
기타 비금속제품	-0.01	-0.07	-0.10	-0.09	-0.08	-0.10	-0.09	-0.11	53.38	46.56	-0.08	-0.10
금속제품	-0.10	-0.16	-0.20	-0.19	-0.17	-0.20	-0.18	-0.21	24.32	20.68	-0.18	-0.19
전기 및 기계	-0.09	-0.11	-0.15	-0.14	-0.12	-0.15	-0.13	-0.17	55.12	59.49	-0.13	-0.14
수송장비	0.02	0.02	-0.01	0.00	0.01	-0.02	0.00	-0.02	1.71	3.45	0.01	-0.01
서비스1	0.12	0.14	0.12	0.13	0.14	0.12	0.13	0.11	-0.30	-0.22	0.14	0.12
서비스2	0.13	0.15	0.13	0.13	0.14	0.13	0.14	0.12	-0.28	-0.23	0.15	0.13

주: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시나리오가 적용된 부분이다.

<부표 11> 시나리오 B-5하에서의 각국의 대한민국 수출증가율

(단위: %)

국가 산업	합계	NAFTA	EU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산유국	최빈국 (아시아)	최빈국 (아프리카)	GSTP (아시아)	GSTP (아프리카)
곡류	0.40	0.42	0.37	0.45	0.46	0.37	0.40	0.34	-0.29	-0.50	-0.32	0.14
비곡류 농산물	2.13	-23.13	-23.16	-23.11	-23.10	-23.15	-23.14	-23.18	724.14	865.25	-3.63	20.82
수산물	0.35	-0.47	-0.48	-0.46	-0.46	-0.48	-0.48	-0.50	44.49	23.70	50.80	23.35
음식료품	0.64	-6.49	-6.53	-6.48	-6.47	-6.53	-6.51	-6.55	87.32	13.78	42.40	13.96
광산품	0.01	-4.25	-4.37	-4.25	-4.19	-4.38	-4.32	-4.45	11.84	4.45	12.88	13.49
석유	0.01	0.10	0.07	0.12	0.15	-0.03	0.10	0.06	-0.49	-0.40	-0.52	-0.20
섬유 및 가죽	1.38	-2.80	-2.85	-2.76	-2.73	-2.85	-2.81	-2.87	26.56	17.86	33.67	20.27
목재, 종이, 인쇄	0.19	-9.68	-9.73	-9.67	-9.66	-9.73	-9.70	-9.76	19.67	9.75	22.15	4.52
화학	0.39	-2.76	-2.81	-2.74	-2.74	-2.83	-2.79	-2.84	35.72	58.96	35.03	31.03
기타 비금속제품	0.27	-3.03	-3.08	-3.02	-3.02	-3.09	-3.06	-3.10	48.78	42.16	50.38	46.84
금속제품	0.19	-2.12	-2.17	-2.09	-2.09	-2.18	-2.15	-2.20	21.84	18.27	27.99	32.79
전기 및 기계	0.01	-1.73	-1.79	-1.70	-1.70	-1.80	-1.76	-1.83	52.53	56.82	10.87	62.28
수송장비	0.10	-0.32	-0.37	-0.29	-0.30	-0.37	-0.34	-0.38	1.34	3.08	30.06	56.43
서비스1	0.14	0.18	0.15	0.20	0.20	0.14	0.17	0.13	-0.28	-0.20	-0.26	-0.01
서비스2	0.20	0.25	0.22	0.27	0.27	0.22	0.24	0.19	-0.20	-0.15	-0.19	0.05

주: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시나리오가 적용된 부분이다.

<부표 12> 시나리오 C-5하에서의 각국의 대한민국 수출증가율

(단위: %)

국가 산업	합계	NAFTA	EU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산유국	최빈국 (아시아)	최빈국 (아프리카)	GSTP (아시아)	GSTP (아프리카)
곡류	0.69	0.81	0.74	0.83	0.86	0.13	0.08	0.72	0.15	0.01	0.11	0.49
비곡류 농산물	3.71	-36.50	-36.53	-36.48	-36.47	722.83	529.46	-36.54	581.14	608.18	-20.37	-0.22
수산물	0.53	-0.31	-0.33	-0.31	-0.30	39.82	26.22	-0.34	44.75	23.93	51.06	23.53
음식료품	1.09	-10.58	-10.63	-10.57	-10.55	31.35	93.02	-10.65	79.20	8.87	36.20	8.95
광산품	-0.01	-5.36	-5.53	-5.38	-5.27	14.82	11.88	-5.59	10.72	3.44	11.68	12.08
석유	0.02	0.11	0.06	0.13	0.18	-0.39	-0.66	0.06	-0.43	-0.34	-0.49	-0.22
섬유 및 가죽	1.85	-3.62	-3.70	-3.58	-3.53	26.27	15.72	-3.71	25.57	16.95	32.59	19.20
목재, 종이, 인쇄	0.20	-9.95	-10.01	-9.94	-9.92	19.66	2.73	-10.03	19.36	9.49	21.82	4.17
화학	0.50	-3.45	-3.52	-3.44	-3.42	62.85	53.13	-3.55	34.81	57.90	34.09	30.04
기타 비금속제품	0.29	-3.43	-3.49	-3.42	-3.41	49.43	47.65	-3.51	48.23	41.65	49.79	46.19
금속제품	0.18	-2.68	-2.75	-2.66	-2.65	27.15	13.77	-2.78	21.20	17.66	27.28	31.97
전기 및 기계	-0.05	-1.86	-1.94	-1.83	-1.82	53.30	57.81	-1.98	52.42	56.74	10.74	61.98
수송장비	0.15	-0.46	-0.53	-0.44	-0.43	61.21	58.02	-0.54	1.24	2.97	29.90	56.14
서비스1	0.20	0.26	0.21	0.27	0.28	-0.17	-0.22	0.20	-0.17	-0.09	-0.16	0.04
서비스2	0.29	0.35	0.31	0.37	0.38	-0.07	-0.12	0.29	-0.06	0.00	-0.07	0.14

주: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시나리오가 적용된 부분이다.

<부표 13> 시나리오 D-5하에서의 각국의 대한민국 수출증가율

(단위: %)

국가 산업	합계	NAFTA	EU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산유국	최빈국 (아시아)	최빈국 (아프리카)	GSTP (아시아)	GSTP (아프리카)
곡류	1.10	1.64	1.54	1.72	0.41	1.05	1.03	1.53	1.11	1.01	1.05	1.34
비곡류 농산물	6.26	-53.23	-53.27	-53.21	194.89	506.48	364.07	-53.27	402.18	488.56	-41.31	-26.51
수산물	3.70	-16.72	-16.74	-16.71	18.71	16.86	5.48	-16.75	20.97	3.56	26.24	3.20
음식료품	2.01	-20.40	-20.46	-20.36	46.46	17.00	71.97	-20.48	59.66	-3.01	21.32	-3.01
광산품	-0.02	-8.03	-8.28	-7.98	9.86	11.83	8.99	-8.31	7.98	0.77	8.84	8.95
석유	0.02	0.16	0.08	0.20	-1.05	-0.30	-0.48	0.08	-0.29	-0.24	-0.39	-0.16
섬유 및 가죽	7.42	-14.38	-14.47	-14.32	23.02	12.31	2.96	-14.46	11.72	3.98	17.95	5.92
목재, 종이, 인쇄	0.23	-12.68	-12.77	-12.63	21.99	16.13	-0.28	-12.78	15.86	6.25	18.21	1.02
화학	1.05	-6.56	-6.66	-6.50	45.74	57.72	48.36	-6.68	30.59	52.91	29.85	25.86
기타 비금속제품	0.92	-10.00	-10.08	-9.95	34.88	39.37	37.74	-10.09	38.28	32.12	39.70	36.27
금속제품	0.56	-5.52	-5.62	-5.44	29.43	23.55	10.58	-5.65	17.81	14.31	23.64	28.14
전기 및 기계	0.08	-5.22	-5.33	-5.12	33.16	48.22	52.63	-5.35	47.42	51.54	6.99	56.46
수송장비	0.87	-3.24	-3.33	-3.17	46.83	56.85	53.77	-3.33	-1.48	0.16	26.33	51.80
서비스1	0.32	0.39	0.33	0.44	-0.38	0.02	-0.01	0.32	0.05	0.10	0.03	0.19
서비스2	0.53	0.61	0.55	0.66	-0.15	0.24	0.21	0.54	0.27	0.31	0.24	0.40

주: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시나리오가 적용된 부분이다.

<부표 14> 시나리오 E-5하에서의 각국의 대한민국 수출증가율

(단위: %)

국가 산업	합계	NAFTA	EU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산유국	최빈국 (아시아)	최빈국 (아프리카)	GSTP (아시아)	GSTP (아프리카)
곡류	1.11	1.65	1.52	1.78	0.45	1.06	1.02	1.51	1.11	0.97	1.09	1.32
비곡류 농산물	6.27	-53.36	-53.41	-53.31	194.19	504.84	362.78	-53.41	400.81	486.75	-41.45	-26.72
수산물	3.99	-18.11	-18.15	-18.09	16.74	14.91	3.71	-18.15	18.95	1.81	24.14	1.46
음식료품	2.16	-22.42	-22.50	-22.35	42.78	14.03	67.59	-22.51	55.61	-5.50	18.27	-5.49
광산품	-0.01	-8.78	-9.10	-8.63	9.06	10.91	8.07	-9.11	7.09	-0.19	8.05	8.01
석유	0.01	0.16	0.01	0.25	-1.00	-0.30	-0.48	0.06	-0.28	-0.28	-0.35	-0.17
섬유 및 가죽	7.98	-15.39	-15.51	-15.27	21.61	10.98	1.73	-15.50	10.39	2.71	16.58	4.64
목재, 종이, 인쇄	0.24	-13.35	-13.46	-13.25	21.09	15.24	-1.06	-13.47	14.96	5.39	17.33	0.23
화학	1.32	-8.52	-8.65	-8.41	42.73	54.41	45.23	-8.66	27.85	49.63	27.15	23.20
기타 비금속제품	1.12	-11.82	-11.93	-11.73	32.17	36.53	34.93	-11.94	35.47	29.38	36.89	33.48
금속제품	0.91	-7.92	-8.05	-7.78	26.19	20.41	7.76	-8.07	14.83	11.35	20.54	24.87
전기 및 기계	0.18	-6.67	-6.83	-6.52	31.16	45.92	50.26	-6.84	45.14	49.11	5.37	54.01
수송장비	1.01	-3.69	-3.81	-3.56	46.19	56.11	53.04	-3.79	-1.94	-0.33	25.77	51.07
서비스1	0.36	0.47	0.39	0.56	-0.28	0.10	0.06	0.38	0.12	0.15	0.12	0.25
서비스2	0.61	0.72	0.63	0.81	-0.02	0.34	0.31	0.62	0.37	0.38	0.36	0.49

주: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시나리오가 적용된 부분이다.

<국문요약>

특혜관세제도 확대와 경제적 효과 연구

정재호 · 이명헌

본고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확대문제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실시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번 DDA 협상에서 개도국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은 OECD 회원국이면서 World Bank에 의해 고소득으로 분류된 국가들 중 인구규모가 크면서도 GSP를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로,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확대 요구에 사전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적 흐름, 최빈개도국의 경제적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교역비중 및 무역수지 흑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감한 일부 농산물 등을 제외하면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확대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가 GSP를 전면 실시할 시기는 DDA 협상으로 관세율 수준이 낮아지고 FTA 체결이 확대된 이후가 적절하다. 인도, 브라질, 중국의 특혜대상국 포함여부에 의해 경제적 효과가 달라지는데, 특히 중국의 영향이 커서 중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FTA를 추진하거나 혹은 현재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방콕협정)을 통해 상호간 관세인하 폭을 넓히면서 양국 간 경제적 혜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A Study on the Preferential Trade System and its Economic Effect

Jaeho Cheung, Myungheon Lee

Some developed countries maintain special tariff preferences, namely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for imports from developing countries. Korea is granting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on imports of 87 products originating i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This paper examines the economic effects of introduction of GSP program on Korea economy. The results suggest that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trade and poverty reduction in the LDCs, the poverty situation of the LDCs, total volume of import from LDCs to Korea, Korea may grant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on all imports from LDCs except some agricultural products and oil. Korea may start GSP scheme to developing countries after conclusion of WTO DDA negotiation and a number of FTA, especially the FTA with China.

〈著 者 略 歷〉

鄭 在 皓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Wisconsin-Madison대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李 明 憲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독일 Göttingen대 농업경제학 박사
현, 인천대학교 교수

政策報告書 05-06

특혜관세제도 확대에 대한 연구

2005년 12월 22일 인쇄
2005년 12월 29일 발행

저 자 정재호 · 이명헌
발행인 최용선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전화 :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상 일 인 쇄

© 한국조세연구원 2005

ISBN 89-8191-316-1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8,000원